


申浩錫

전주 MBC
창사 28주년
특별기획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

- 日時: 1993년 5월 26일 (水) ~ 5월 27일 (木)
- 場所: 전주 코아호텔


- 主催: 전주문화방송 (주)
- 後援: 동학농민혁명백주년기념사업회
- 協贊:  쌍용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는
우리 것을 계승, 발전시키고
관련 학문의 연구, 진작에 관심을 기울이는
쌍용그룹이 협찬하였습니다.

협찬 :  쌍용

전주 MBC 창사 28주년 특별기획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

- 日時: 1993년 5월 26일 (水) ~ 5월 27일 (木)
- 場所: 전주 코아호텔

- 主催: 전주문화방송 (주)
- 後援: 동학농민혁명백주년기념사업회
- 協贊:  **쌍용**

學術大會 日程

第1主題：東學農民革命의 性格
第2主題：東學農民革命과 社會 變動

○ 제1일 (1993年5月26日 水요일)

- 13:30-13:50 開會式
14:00-17:30 第1部發題 및 討論
司會：申淳鐵(원광대)
14:00-14:40 1894年 農民戰爭과 反封建 近代化
發表：高錫珪(한신대)
13:40-15:20 東學農民革命에 있어서 東學의 役割
發表：朴孟洙(영산대)
15:20-16:00 東學農民革命은 과연 反帝國主義的이었는가?
發表：金正起(서원대)
16:10-17:30 第1部 討論
討論：柳永益(한림대) / 朴贊勝(목포대) / 鄭昌烈(한양대)
18:30-20:30 저녁만찬 (코아호텔 2층, 무궁화실)

○ 제2일 (1993年5月27日 木요일)

- 09:30-13:00 第2部 發題 및 討論
司會：金度亨(계명대)
09:30-10:10 執綱所의 成立과 改革의 性格
發表：愼鏞廈(서울대)
10:10-10:50 弊政改革과 甲午改革
發表：李離和(역사문제연구소)
10:50-11:30 農民革命 以後 東學農民의 民族運動
發表：李榮昊(과학기술원)
11:40-13:00 第2部 討論
討論：禹 潤(역사문제연구소) / 鄭珍相(경상대) / 申榮祐(충북대)
13:00-14:00 점심식사 (코아호텔 2층, 백합실)
14:00-17:00 綜合討論
司會：朴明圭(전북대)
討論：高錫珪, 朴孟洙, 金正起, 柳永益, 朴贊勝, 鄭昌烈, 申淳鐵, 愼鏞廈, 李離和, 李榮昊, 禹 潤, 鄭珍相, 申榮祐, 金度亨
그밖의 大會 參席....

目 次

- | | | |
|---------------------------|--------------------|----|
| ■ 1894년 農民戰爭과 反封建 近代化 | 高 錫 珪
(한신대) | 6 |
| ■ 東學農民革命에 있어서 東學의 役割 | 朴 孟 洙
(영산대) | 14 |
| ■ 東學農民革命은 과연 反帝國主義的이었는가? | 金 正 起
(서원대) | 27 |
| ■ 執綱所의 成立과 改革의 性格 | 慎 鏞 廈
(서울대) | 34 |
| ■ 弊政改革과 甲午改革 - 그 聯關性的의 糾明 | 李 離 和
(역사문제연구소) | 50 |
| ■ 農民革命 이후 東學農民의 民族運動 | 李 榮 昊
(과학기술원) | 54 |

1894년 농민전쟁과 '반봉건 근대화'

高 錫 珪
(한신대)

1. 머리말
2. 1894년 농민전쟁에 나타난 '반봉건 근대화'
 - 1) '반봉건' = 부정의 대상
 - 2) '근대화' = 지향의 목표
3. '반봉건 근대화'의 측면에서 본 농민전쟁의 성격
 - 1) '아래로부터의 길'과 '농민적 노선'
 - 2) 비교사적 관점에서 본 농민전쟁의 역사적 성격
4. 맺음말

1. 머리말

우리는 지금 견잡을 수 없는 종속적 국제화의 추세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경제발전, 민족 주체성의 확립, 민주주의의 확고한 실현 등이다. 그것은 바로 진보의 실현이다. 위대한 역사시기에는 승리(=진보)와 더불어 희생이 있는 법이라고 한다.¹⁾ 지금 우리 사회는 진보의 대가 = 국민대중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그 대가는 진보가 결머져야할 도덕적 책임이 아닐 수 없다. 여기서 진보와 도덕의 관계라는 풀기 어려운 방정식을 대하게 된다. 그 답을 얻기 위해 우리는 1세기 전의 역사경험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지금으로부터 1세기 전, 대내외적 억압 속에서 보다 나은 사회를 이루어보고자 했던 농민들의 삶의 역정은 비슷한 처지에

1) E. H. 카 저/ 吉玄謨 역, 『역사란 무엇인가』, 1966, 탐구신서, 103쪽.

처한 오늘의 우리들에게 소중한 경험이 아닐 수 없다. 비록 실패한 경험이지만, 그 속에서 농민들이 이루고자 했던 사회의 도덕적 가치는 지금도 결코 외면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그 가치의 실현을 전제로 한 진보만이 대가를 받을 자격이 있을 것이다.

농민들이 이루고자 했던 사회의 도덕적 가치는 무엇인가? 그 가치가 역사발전에서 지니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 답을 찾는 데서 바로 1894년 농민전쟁 연구의 의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종래 농민전쟁은 '아래로부터의 변혁운동'이란 틀에서 논의되어 왔다. 한편 갑오개혁은 '위로부터의 개혁'이라는데 이론의 여지는 없었다. 그러한 전제 위에 1894년은 양자의 대결국면이었고, 그 대결에서 농민군이 패배함으로써 그후의 근현대사는 '위로부터의 길' 안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고 보아 왔다.

발표자 역시 이러한 통설의 유용성에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몇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즉 하나는 농민전쟁이 과연 '아래로부터의 길'이었는가에 대한 의문이고, 다른 하나는 같은 시기에 있었던 갑오개혁과의 관계를 왜 대립적, 단절적으로만 보려하는가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그리하여 농민전쟁이 지니는 농민운동으로서의 독자성을 통해서 그들이 희망한 사회의 실체에 접근해 보고, 아울러 대립 단절의 시각을 뛰어넘어 1894년이란 시간대를 통틀어 규정할 수 있는 분석틀을 꾸려 보고자 한다.

거치른 시론에 지나지 않는 이 글은 구체적인 사실들을 통해 검증되어야 할 숙제들을 많이 안고 있다. 질정을 바란다.

2. 1894년 농민전쟁에 나타난 '반봉건 근대화'

1) '반봉건' = 부정의 대상

농민전쟁에 대해서는 그 명칭부터 시작해서 원인, 이념, 주체, 조직, 전개과정, 지향 등 여러가지 점에서 적지 않은 의견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1894년 농민전쟁은 조선후기 농민항쟁을 통해 성장한 농민대중이 동학의 조직을 이용하여 봉건사회를 변혁하고 자본주의 열강의 침략을 물리치려 한 대규모의 반봉건 반침략투쟁이었다"²⁾ 라고 규정하는 데에는 거의 이론이 없으리라 믿는다. 따라서 굳이 농민전쟁이 반봉건적이었는가 아니었는가를 따진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어떤 점에서 반봉건적이었는가를 짚어보고 그와 관련된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보고자 한다.

19세기 사회를 '지배와 저항'이란 관점에서 살펴볼 때 저항의 측면은 마땅히 농민들의 항쟁이 점하고 있으며 그 상대인 지배의 측면은 이른바 수령과 이서·향임, 그리고 양반토호가 주도하는 향촌지배체제였다. 기존의 사족지배체제는 사족들이 보편적 지배력을 상실해 감에 따라 변질되어 양반토호의 지배로 이어지나, 사회에 대한 규정력은 약화하였다. 반면에 수령과 이서·향임을 중심으로 한 관주도 세력들이 향권을 주도하게 되었다. 이것이 봉건사회의 모순을 규정하는 지배틀이었다.³⁾ 그 속에서 각종 부세수탈과 지주제, 고리대, 기타 불법적인 지배에 의한 사회 모순이 심화되었다. 결국 이에 대한 부정이면 곧 반봉건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농민들은 지주제나 봉건적 수취에 대해서뿐 아니라 새로운 수탈적 지배자로 등장하는 신향층 일부의 성장을 촉발했던 사회적 요인 즉 자본주의적 요소로서의 상품화폐경제에 의한 침탈에도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토지의 상품화, 부세의 금납화 등에 대한 저항과 순응의 과정이었다. 농민의 주요목표는 생계 유지와 좁은 범위의 사회관계 내에서 획득한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봉건적 억압의 심화와 시장체계의 침투는 이를 그대로 유지하지 못하도록 강요하였다.

2) 한국역사연구회, 1992, 『한국역사』, 255쪽.

3) 고석규, 1991, 『19세기 鄕村支配勢力의 변동과 農民抗爭의 양상』 중장 〈19세기초 중반 鄕村支配勢力의 구성과 賦稅制度의 운영〉 참조

농민들의 저항역량은 기본적으로 반봉건운동에 집중되면서도 반자본주의적 속성을 지니므로써 자본주의적 침탈의 강도를 높였던 외세에 대한 저항운동 즉 반침략 투쟁의 기초가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반봉건항쟁은 민족성립의 토대였으며, 1894년까지 전체적인 농민운동을 주도해 나갔다.

2) '근대화' = 지향의 목표

모든 운동에는 지향, 즉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공격의 목표가 같아도 거기서 얻고자 하는 것은 운동주체의 성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 질 수 있다. 따라서 운동의 성격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부정의 대상뿐만 아니라 지향의 목표까지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농민전쟁의 성격을 반봉건이라 할 때 그 완전한 성격은 봉건의 내용만으로 판단될 수 없다.

농민전쟁에는 두 차례의 봉기가 있었다. 그 타도대상이 1차 봉기에는 민씨정권이었던 반면, 2차 봉기에는 내적으로는 갑오정권이었고, 외적으로는 일본이었다. 민씨정권은 봉건적 속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지만, 갑오정권은 개화파 관료라는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아울러 근대적 개혁인 갑오개혁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때 1차 봉기를 반봉건이라 한다면 별로 문제는 없지만, 2차 봉기를 반봉건이라 한다면, 그 반봉건성은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가? 갑오정권 속에서 굳이 봉건성을 찾아야 할 것인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2차봉기는 반봉건성은 없고 반침략의 측면만 있었다고 할 것인가? 물론 어느 것도 옳은 해결책이 아닐 것이다.

여기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반봉건이란 봉건을 반대한다는 것만으로 그 내포가 완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지향의 문제까지도 포괄하는 내용성을 지닐 때 비로소 완결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반봉건의 성격이란 '반봉건 근대화'의 성격을 묻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2차 봉기에서 갑오정권과 대립적이었던 것은 반봉건보다는 근대화의 지향점의 차이 때문이었다. 즉 봉건을 부정하는 점은 양자가 같으나, 지향 = 근대화의 내용이 달랐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논의되어야 할 것은 근대화 지향의 내용이다. 지향하는 바는 당시의 객관적 경제사정과 주체의 성격에서 파악할 수 있다.

프랑스혁명의 원인을 말할 때 미술데처럼 민중의 빈곤을 혁명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보는 경우와 토코빌이 지적했듯이 빈곤 때문이 아니라 국가의 경제발전과 정치적 자유의 확장 때문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해 라부르쓰는 "확실히 경제발전은 18세기 전반에 걸친 특징이었다. 그러나 혁명 직전의 기간은 경제위기에서 비롯되는 빈곤으로 특징지어져 있다. 따라서 혁명의 원인이 경제발전과 부르주아지계급의 지위강화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들과, 직접 혁명을 자극한 것은 빈곤이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모두가 옳다." 라고 하였다.⁴⁾ 이 또한 시사하는 바가 많다.

우리의 경우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객관적 경제사정은 조선후기 생산력의 발전과 상품화폐경제의 발전, 부세제도의 개편 등의 영향을 받아 농민층분해가 급속도로 진전하고 있었고, 개항 이후에는 곡물수출을 계기로 침체되었던 지주 경영이 활기를 띠게 되면서 부농의 성장이 제약되고 농민층의 몰락이 가속화되었다.

농민전쟁의 주체로는 빈농층을 중심으로 하여 임노동층, 빈민층, 영세수공업자층, 영세상인층 그리고 일부의 부농층 등 농민전쟁의 광범한 참가층 가운데서 찾아져야 하고 이러한 세력을 민중세력으로 묶어 볼 수 있다.⁵⁾

이들은 亂民이라 불리던 집단으로 "백성 가운데 농업이나 상업에 근면히 힘써 朝夕을 이을 수 있는 자들"으로서 소농민적 성장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지만, 수탈과 변화하는 주변정세로 인하여 소외되고 성장이 가로막히자 농민군에 가담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농민전쟁의 원인은, 전반적 추세는 경제발전이 있지만, 그 속에서 농

4) A. 사프/金澤賢 역, 1982, 『歷史와 眞實』, 청사, 30-63쪽.

5) 이영호, 1991, "총론: 1894년 농민전쟁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변혁주체의성장" 『1894년 농민전쟁연구』, 1, 16쪽, 28쪽.

6) 『樞下記聞』 1필, 90쪽.

민층이 소외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888년의 흉년과 연이은 탐학, 자본주의적 억압 구조 등이 한편으로 농민층의 빈곤을 초래하였다. 결국 발전과 빈곤의 양자가 결합하여 농민전쟁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농민전쟁의 객관적 정세와 주체, 그리고 원인에 대해 위와같이 보았을 때 농민군이 지향하는 바는 어떻게 정리될 수 있을까?

우선, 반침략과 반봉건을 전제로 하고 소농민으로서의 자립과 농민적 토지소유의 발전을 지향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농민전쟁에는 반봉건뿐만 아니라 반개화, 반자본 등이 중첩되어 나타났다. 서구의 경우 농민운동에서 보이는 반자본의 성격은 자본가적 정신이 귀족계급에까지 조금씩 침투하여 봉건제를 더욱더 혐오스러운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라 한다.⁷⁾ 개항 이후 미곡수출에 따라 양반토호에 의한 지주제가 강화되는데 양반토호에 대한 저항은 곧 그 이면에 자리잡고 있는 자본주의적 상품경제의 침투에 대한 저항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각종 독점행위에 대한 저항도 그러한 점을 지닌다.

결국 농민군의 지향은 '농민적 길'에 의한 '근대화'의 추구였다. 전봉준의 경우 그것은 반봉건주의와 반자본주의 반식민지화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근대를 모색하는 형태로 나타났다.⁸⁾

7) 다다미 지즈카, 1991, "프랑스 혁명기의 농민운동과 농업상의 평등주의" 『프랑스혁명과 한국』, 일월서각, 144쪽.

8) 趙景達, 1983, "甲午農民戰爭指導者=全瑛準の研究" 『朝鮮史叢』7, 72쪽; 박찬승, 1985, "동학농민전쟁의 사회 경제적 지향" 『韓國民族主義論』, 창작파비평사, 75쪽; 鄭昌烈, 1991, "동학농민전쟁과 프랑스혁명의 한 비교" 『프랑스혁명과 한국』, 일월서각, 253-254쪽.

3. '반봉건 근대화'의 측면에서 본 농민전쟁의 성격

1) '아래로부터의 길'과 농민적 노선'

농민전쟁이 근대이행기의 변혁운동이란 점에서 흔히 프랑스혁명과 비교하여 왔다. 프랑스혁명에 대해 우리나라는 자코뱅적으로 이해하는 지역의 하나로 분류된다고 한다.⁹⁾ 이는 프랑스혁명을 구체제를 타파하고 새로운 근대시민사회를 빚어낸 아래로부터의 부르주아 혁명으로 이해하는 정통해석의 계열에 속해 있다는 뜻이다.

그런 점에서 농민전쟁을 프랑스혁명과 비교하여 '아래로부터의 변혁운동'이었다고 보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농민혁명에 의해 추동된 프랑스혁명을 자본주의화의 '아래로부터의 길'의 전형으로 이해하는 데서 크게 영향 받은 결과이다. 그러나 농민전쟁 그 자체를 프랑스혁명과 같이 '아래로부터의 길'로 이해하는 방식은 농민혁명을 다만 부르주아혁명의 추동력으로서 의미부여하는 정통해석과는 분명히 다르다.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까닭은 농민전쟁은 농민운동이지 그 자체가 부르주아혁명의 모든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지 못한 때문으로 보인다.

이해를 돕기 위해 서구에서는 농민들의 저항운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평등주의적이고 반자본주의적 성격이 농민운동의 특성으로 강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농민층의 소박한 저항운동은 계급사회적인 현실보다 더욱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체계에 관한 신화를 바탕으로 한다. 하나는 상고적인것, 다른 하나는 현실을 완전히 혁명적으로 변화시켜 이 땅위에 새로운 질서를 이룩하자는 미래지향적인 것도 있다. 전자는 천년왕국운동이고, 후자는 무정부주의 봉기와 같은 것이다. 따라서 운동의 초기단계에서의 요구는 거의 예외없이 토지의 분할이었다. 이러한 농업상의 평등주의는 부르주아혁명을 추동하여 사회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이념을 탄생시켰다고 본다.¹⁰⁾

한편, 부르주아지의 발전은 농촌 내의 여러 관계와 농민의 계급적 저항운동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농민의 항쟁은 단지 봉건영주나 봉건제를 향해서뿐만 아니라 농촌에 침입해온 가지각색의 자본주의적 관계에 대해서도 행해진다.¹¹⁾ 농민운동이 반자본주의 운동이 되는 까닭은 여기에 있다.

결국 그들의 지향은 반자본주의적 유형의 경제적 자유주의였다고 할 수 있다. 독점과 단결의 자유까지도 허용하는 독점적 유형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의 자유를 보장하

9) 『프랑스혁명과 한국』(1991, 일월서각) 머리말 참조.

10) 에릭 R. 울프/朴賢洙 역, 1978, 『農民』, 청년사, 192-193쪽.

11) 코스민스키, "봉건시대의 계급투쟁문제 -포르시네프의 논문에 대하여" (1987, 『봉건사회의 기본법칙』, 山岡亮一 木原正雄 편/김석민 옮김, 80쪽)

기 위하여 독점과 단결의 자유를 허용치 않는 이른바 반독점적 유형의 경제적 자유주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곡물의 공정가격제를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살기 위해 토지의 재분배와 농촌공동체의 회복을 요구하였다. 이것이 바로 프랑스혁명 과정에 나타난 농업상의 평등주의의 기초였다.

농민운동이란 이처럼 나름대로의 자율성을 지닌 채, 반봉건·반자본주의적이며 평등주의적 이상사회의 건설을 그 목표로 한다고 이해하고 있다. 농민전쟁의 목표도 이 점에 있었음을 이미 앞에서 살펴 보았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농민전쟁이 과연 '아래로부터의 길'이었는가를 살펴볼 차례이다. 먼저 '위로부터의 길'과 '아래로부터의 길'이란 각각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를 원론적으로 검토해 보고, 이어서 '아래로부터의 길'과 농민혁명의 관계를 살펴면서 이른바 '농민전쟁 = 농민적 노선'이란 정식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해 보고자 한다.

부르주아적 진화의 두가지 길이란 레닌이 1907년 당시 러시아의 경제적 토대분석에 입각하여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았던 러시아혁명의 발전과 결과의 두가지 기본 노선에서 유래한다.¹²⁾ 이는 농업에서 봉건적 관계를 청산하고 부르주아적 관계를 성립시키는 과정 = 자본주의적 농업발전의 두가지 전형적인 길로 흔히 알려져 있다. 하나는 프리시아적 혹은 지주적 발전형태로 이는 봉건제에 전형적인 장원경영에서 제한적인 농업개혁을 통해 점진적으로 자본주의적 농업경영으로 전화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 형태에서는 농업에서 자본주의적 관계의 발전과 더불어 봉건제도 역시 오랜 기간 동안 잔존한다(프랑스, 러시아, 일본 등). 다른 하나는 아메리카적 혹은 농적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는 지주층이 존재하지 않거나 부르주아혁명에 의해 파괴된 경우에 나타난다. 이 경우, 몇가지 조건으로 토지가 소농들에게 분배되고 그 후에는 자유스럽게 빠른 속도로 자본주의적 농업경영의 길을 걷게 된다. 그것은 상품생산의 발전과 함께 많은 소규모 농민들이 급속히 쇠퇴하여 임노동자로 전락하고 일부의 상층농민들만이 부를 축적하여 고용노동을 사용하기 시작함으로써 이루어진다(미국과 프랑스).¹³⁾

12) V. I. 레닌, 『러시아에 있어서 자본주의의 발전』 제2판 서문(태백, 1988, 19-20쪽) 참조.

13) 『정치경제학원론』 중 "농업에서의 자본주의 발전"(녹두, 1986, 196쪽)

이상이 부르주아적 진화의 두가지 길에 대한 원론적 정의이다. 두가지 길은 부르주아적 진화라 전제했듯이 둘다 부르주아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민중혁명적인 요소, 특히 반자본주의적 지향을 포괄하여 설명하지 못한다.

'아래로부터의 길'은 소농집단의 소상품생산자화를 전제로 한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전제일 뿐이다. '아래로부터의 길'이라 할 때는 토지가 소농에게 분배된 이후에 나타나는 자유스럽고 빠른 속도로 자본주의적 농업경영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점에 더 큰 비중이 있다. 따라서 소농집단의 출현, 소상품생산자의 성립만으로 그 길 이 완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우리가 농민전쟁을 이해할 때 이 점을 놓쳐서는 안될 것이다. 농민전쟁은 '아래로부터의 길'의 전제를 목표로 하였다는 점에서 '아래로부터의 길'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나, 그 전제의 달성, 그것이 곧 목표의 완성이 된다는 점에서 '아래로부터의 길'과는 애당초 차원이 다른 운동이었다.

한편 우리가 '지주적 노선'과 '농민적 노선'이라 구분할 때는 부르주아적 진화의 두가지 길과는 달리 그 목표가 다름을 전제로 한다. 예를 들면, 개항 이후 민란과 농민전쟁의 개혁정신을 계승한 농민적 노선의 농민운동은 "지주제가 일본자본주의 기구 속에 흡수되어 점차 자본가적 경영으로 전환한 사실을 반영하여 점차 반자본주의적 지향을 지닌, 요컨대 사회주의의 노농운동의 이념과 조직하에 사회주의 농업건설을 지향하는 운동으로 전환해 갔다"¹⁴⁾ 라고 하듯이 자본주의 사회를 지향하는 운동이 아니었다. 농민적 노선의 목표는 농민에게 토지에 대한 경영권 또는 소유권을 주는 것이었다. 그것에,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는데 바로 목표가 있었다. 이렇게 볼 때 '아래로부터의 길'은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농민적 노선'과는 분명히 다르다. 농민들의 운동이란 본질적으로 보수적이고 반자본주의적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애당초 자본주의사회를 목표로 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농민적 노선'이라고 함이 적합성을 갖는 것으로 생각한다.

14) 홍성찬, 1992, 『韓國近代 農村社會의變動과地主層』, 지식산업사, 8쪽.

2) 비교사적 관점에서 본 농민전쟁의 역사적 성격

그렇다면 근대 이행기에서 접하는 농민전쟁의 역사적 위치는 무엇일까? 그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프랑스혁명은 이중혁명이라고도 한다. 하나는 성공한 혁명으로서 부르주아혁명이고 다른 하나는 실패한 혁명으로서 민주주의 혁명 또는 민중의 혁명이다. 이중혁명으로 인식하는 까닭은 비록 실패했지만 농민운동은 부르주아혁명과 구별되는 자율적 운동이었다는 점이 주목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발표자는 이와 같은 농민운동의 자율성을 전제로 설정된 프랑스혁명에 대한 고전적인 논의에 주목하고 싶다. 정통해석에 따르면, 1789년의 혁명이 기본적으로 부르주아혁명이면서도 그것과는 사뭇 다른 자율적인 리듬을 갖는 농민혁명과 민중혁명을 동시에 포괄하는 것으로 본다.

한편, 소블에 따르면, 1789년에서 1793년까지의 농민운동은 두 갈래의 흐름이 있는데, 하나는 농민대중 전체가 봉건적 착취로부터 스스로를 해방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보다 정확히 빈농층 즉 조그만 땅피기를 소유하거나 토지가 전혀없는 농민들의 자본주의적 농업의 발달에 직면하여 자신의 생존권을 지켜내는 것이었다고 한다.¹⁵⁾ 전자는 반봉건이고, 후자는 지향의 문제로서 반자본이다.

이와같이 프랑스혁명은 자본주의 사회를 지향하는 부르주아혁명이면서도 그 안에 반자본주의적 성향을 갖는 농민운동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소블은 이처럼 단순화할 수 없는 프랑스혁명의 성격을 보다 뚜렷이 강조하기 위해 “농민-부르주아혁명”이란 틀을 제기하였다.¹⁶⁾

매우 의미있는 문제제기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경우도 농민전쟁만을 따로 떼어서 보기보다는 갑오개혁과 함께 해석할 수 있는 논리의 개발이 시급하다. 그런 점에서 양자의 연결성과 단절성이란 관점에서 서서 종합적·총체적으로 재구성하는 문제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갑오정권과 농민군, 양자의 입장에서 연결·단절의 관계를 각각 살펴보자. 먼저 갑오정권 측에 나타난 연결·단절의 조건들은 다음과 같다.

군국기무처의 초기 개혁단계에서 연결성의 단초를 확인할 수 있다. 군국기무처는 처음에 농민군의 폐정개혁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개혁의안을 채택함으로써 민심을 수습코자 하였다.

즉, 갑오정권은 일련의 평등주의적인 사회제도개혁을 선언함으로써 민심을 수습하려 하였으며,¹⁷⁾ 또 농민군이 전주화약 전에 원정 형식으로 제시한 폐정개혁요구에 대응하는 경제적 개혁을 단행함으로써 민심을 무마하고 민요의 재발을 방지하려 했다.

갑오개혁을 입안 추진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였던 유길준이 “우리들은 장차 이 일로부터 國人의 마음을 따라 개혁의 일을 행하려 합니다. 만약 이에 통하지 못하여 다만 勸勉을 행할 뿐이라면 아마도 일이 이루어질 날이 없고 亂이 먼저 일어날 것입니다.”¹⁸⁾ 라 함에서 농민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 개혁 성공의 관건임을 잘 인식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9월초에 이르러 삼남에서 반일 민중운동이 재연하자 이를 진압할 대책을 강구하게 되면서 군국기무처 의원들이 농민군과 적대적인 긴장관계에 들어갔던 것이다.¹⁹⁾

다음, 단절의 계기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갑오정권의 개화와 관료들은 비록 실무경험은 부족하였지만, 자신들의 이상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개략적인 복안과 전문가적 소양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독자적인 군사적·경제적 기반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일본에 계속 의존함으로써 민중세력의 지지를 얻어내는데 끝내 실패하고 말았다. 위로부터의 혁명을 이루기 위하여는 국가 관료가 주도하여 대중을 동원하지 않은채 국가기구를 탈법적으로 접수하여 지배집단의 경제적·정치적 권력을 파괴시킬 수 있어야 했다.²⁰⁾ 그러나 갑오개화와 관료들은 그럴 수 있는 주체적 역량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15) 알베르 소블, 1973, “아나톨리 아도의 논문에 대하여” 『역사비평』 1992년 여름호, 310쪽.

16) 위와 같음, 323쪽.

17) 『議定存案』(규, 17236) 6월 28일의 의안에 “劈破門閭班常等級不拘賤 選人材事”, “公私奴婢之典 一切革罷 禁販買人口事” 등 신분제 폐지와 관련된 혁명적 개혁안이 실려 있다.

18) 『俞吉濬全書』 4, 376-377쪽.

19) 柳永益, 1990, 『甲午更張研究』, 일조각, 147-153쪽, 199쪽.

20) 강희경, 1987, “트림버거의 '위로부터의 혁명'” 『서구 사회사 이론의 조류』, 한국사회사연구회 논문집 6, 74-75쪽.

더구나 개화파들은 프랑스혁명에서 농민대중의 봉기와 항쟁을 평등사상에 의해 발단한 것으로 보아 사회적 대혼란의 징조로 인식하여 크게 경계하고 있었다. 사회적 평등과 경제적 평등의 달성을 목표로 하는 사회주의 정당이 치성하고 또 폭력혁명을 기도함으로써 백성은 害毒되고 사회는 혼란해 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의 기관지를 통해 계몽시키고 있었다.²¹⁾ 윤치호도 "동학당들이 양반들을 다름에 있어 보여준 잔인성은 (프랑스)혁명 당시 프랑스크족들이 겪었던 유혈적 폭력사태를 연상시킨다"²²⁾ 고 하여 역시 농민군과는 상이한 현실관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농민군의 입장에서도 갑오정권에 대해 지지와 대립의 단계를 겪고 있었다. 평양전투에서 크게 승리한 일본군은 9월 18일에 농민군을 진압하겠다고 한국정부에 통고하였고, 21일 개화파정권은 이를 수락하였다. 농민군 토벌을 위한 일본과 개화파정권의 결탁이 성립되었던 것이다. 이에 농민군도 9월말부터 재결집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은 9월 21일의 결탁 이전까지는 전봉준의 농민군 진영에서 개화당정권을 적대적 세력으로 파악·인식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또 갑오 십일월십이일 동도창의소에서 발한 고시 경군여영병이교시민(告示 京軍與營兵而教示民)이란 글에서도 "금년십월의 기화간당이 왜국을 쳐결함여 승야입경함야 군부를 꺾박함고 국권을 천조함여" 라 하여 농민군이 재봉기하게 된 계기의 시점을 10월로 특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여기서도 일단은 6월부터 9월에 걸쳐 있었던 군국기무처 단계의 개혁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동조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²³⁾

한편 농민군은 비록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그들 스스로의 힘에 의해 자신들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동학당은 사망으로부터 서울에 투입하여 서울은 난마와 같은 처지에 빠질 것이다. 이러한 처지에 도달하면 그들은 스스로 무릎을 꿇고 우리(일본)의 도움을 애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씨건 민씨건 간에 비도에게 유린되어 자멸함에 이를 것이다."²⁴⁾ 라는 기록은 농민군의 힘이 적어도 민씨정권을 축출할 수 있는 객관적 능력이 있었음을 가늠케 해주는 자료로 보인다. 이는 농민군 측에서 그들의 판단에 따라 언제라도 개화파정권과 단절할 수 있는 조건이었다. 이렇게 보면, 농민군은 자신들의 정세판단에 따라 갑오개혁의 추이를 지켜보다가 그것이 그들의 기대에서 벗어나게 되자 본격적인 재봉기에 나서게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농민군은 자신의 힘을 통일적으로 결집시킬 수 없었고, 아울러 새로운 국가 구상의 구체적 프로그램과 새로운 생산력 구상을 가질 수 없었던 자체 취약성을 드러내게 되었던 것이다.

이상, 갑오개화파정권과 농민군의 입장에서 연결·단절의 계기들을 찾아보았다. 이와 같은 연결·단절의 상관성 위에서 본다면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농민전쟁은 갑오개혁의 조건으로서 봉건제 척결의 배경을 조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갑오개혁이 타율적 진행에 따라 변질되고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내지 못하게 되자 농민군은 민중혁명의 실현을 목표로 재봉기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1894년의 정세는 농민혁명이 주도하고 갑오개혁이 부수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농민전쟁이 실패로 끝나자 불완전한 형태의 개혁만이 잔재로 남게 되었다.

4. 맺음말

프랑스혁명은 전형적인 부르주아 혁명으로서도 큰 의의를 지니고 있지만 민중혁명을 그 안에 가짐으로써 더욱 빛나고 오늘날까지 생명을 유지하면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²⁵⁾ 특히 농민혁명과 그것의 평등주의는 프랑스혁명을 부르주아적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적인 혁명으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다만 서구의 부르주아혁명에서 농민혁명은 추동력으로서의 제한된 의미만을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왜냐하면 프랑스혁명에서 농민이 자신들의 지향을 갖는 독자적인

21) 金容燮, 1975, 『韓國近代農業史研究』, 일조각, 321쪽.

22) 『尹致昊日記』4, 29쪽.

23) 鄭昌烈, 1991, 앞 논문, 250-251쪽.

24) 『日本外交文書』 X X VII:2, #478, 73쪽. 柳永益, 앞 책, 40쪽 재인용.

25) 민석홍, 1991, "양시암 레짐과 프랑스 혁명의 性格" 『프랑스혁명과 한국』, 일월서각, 58쪽.

세력으로 싸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혁명 직전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농민봉기가 없었다. 농민봉기는 1789년 7월 14일 이후, 특히 농민들에게 부과되었던 봉건제적 부역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던 8월 4일 이후에 일어났을 뿐이었다.²⁶⁾

그런데 우리의 사정은 많이 달랐다. 우리는 아래로부터 개혁의 전제조건으로서 농민혁명은 있었으나 혁명적 부르주아지가 하나의 세력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더구나 신·구세력인 개화파 관료와 민씨척족세력 간에 경계가 불분명하였던 것도 우리의 특징이다. 개화파도 기본적으로 매편적 지주적인 부르주아지였지 상업 또는 산업부르주아는 아니었다. 그 점에서 유생층이나 기존의 정부관료와 차이가 없었다. 지배층 간에 정치적인 대립은 있어도 계급대립은 없었다.

반면에 농민층은 상대적으로 성숙한 세력집단을 이루고 있었다. 19세기말 조선사회의 농민층은 중세 말기 서부유럽사회의 농민층과는 달리 정치적·사회적으로 훨씬 더 성숙한 계층이었다.²⁷⁾ 우리는 그 전에 많은 농민항쟁의 경험이 있어 독자적인 세력집단으로 성장하였다. 우리나라는 1850년대부터 발발하기 시작, 1862년을 하나의 고비로 지속적인 전개를 거쳐 1894년에 이르는 농민운동사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농민들이 계급으로 결집할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²⁸⁾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오히려 농민들의 독자적인 혁명운동이 객관적으로 가능하였다고 할 수 있다. 부르주아혁명에 포함된 농민혁명이라기 보다는 독자성을 지니는 농민혁명이었다. 더구나 극복의 대상이었던 봉건의 내용이 국가규정성을 많이 지니기 때문에 반봉건이 반국가적 성격을 띠게 됨으로써 정치혁명의 성격까지 지니는 독자성이 강한 운동이 될 수 있었다. 이 점에서 우리 농민전쟁이 독특한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특수성을 발견할 수 있다.

농민운동은 그 역사적 소명을 다하였다. 바로 평등주의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사회건설에 그 부여된 역할을 충분히 다해 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농민전쟁을 민주주의 혁명을 완결시킬 변혁주체세력이 형성·발전하는 단계의 시점이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따라서 농민전쟁은 그 前史나 전쟁 자체의 성격을 구명함으로써 그 성격해명이 완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민족해방운동사, 나아가 민족민주운동으로 이어지는 근현대사 전반의 민주주의 실천의 흐름속에서 조명될 때 그 가치가 제대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26) A. 샤프, 앞 책, 50쪽.

27) 慎繡廈, 1991, "프랑스 혁명에 비추어 본 1894년 동학농민혁명 운동" 『프랑스혁명과 한국』, 271쪽.

28) 고석규, 1992, "18·19세기 농민항쟁의 추이" 『1894년 농민전쟁 연구』2, 역사비평사 참조.

東學農民革命에 있어서 東學의 役割

朴 孟 洙
(靈山圓佛敎大學)

1. 머리말
2. 東學思想의 本質과 農民革命에서의 역할
3. 東學 布敎의 推移 및 東學組織의 特徵과 그 役割
4. 1892·3年 大先生伸冤運動의 展開와 그 役割

1. 머리말

주지하다시피 1894년의 동학농민혁명(1860년 水雲 崔濟愚(1824 ~ 1864)¹⁾에 의해 창도된 東學 思想 및 敎團 組織, 1892·3년에 동학교단 지도부에 의해 전개된 大先生伸冤運動, 1894년 1월 전라도 고부 일원의 동학 하층 지도자들과 일반 교도들이 주축이 되었던 古阜民亂 등과 긴밀한 연관관계 아래 전개되었다.

1860년 수운에 의해 제시된 동학사상은 19세기 부패한 조선왕조를 총체적으로 부정하는 하나의 現實否定의 사상, 즉 낡은 체제를 부정하고 새 체제 건설을 지향하는 革世思想으로 기능했던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며, 동학사상은 특히 '侍天主'를 근간으로 한 平等思想의 측면에서 당시 민중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공감하고 있다.

1880년대에 들어와 호서·호남의 평야지대를 중심으로 급속히 조직화되었던 동학교단조직은 1890년대 초에 접어들어 동학교도와 일반 농민들을 결합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하기 시작하여, 1894년에 이르러서는 각 지역단위 농민들의 조직적인 봉기의 기반

1)이하 水雲이라 칭함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하여 각 지역별로 농민들을 이끌고 起包한 농민군 지도자 대다수는 동학 교단의 接主 출신들이었다.

1892·3년에 걸쳐 동학교단 지도부에 의해 '敎祖 수운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신원과 敎徒들에 대한 가림주구의 금지'를 기본적인 요구조항으로 하여 줄기차게 전개된 大先生伸冤運動²⁾은 결국 1894년 동학농민혁명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농민혁명 지도부의 성장을 가져 온다는 점에서, 또한 1894년 농민혁명 前단계 투쟁으로서 당시 민중들의 反封建·反侵略 의지를 일정하게 고양시킨다는 점에서 충분히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또한 갑오년에 농민군이 봉기하여 치열한 항쟁을 했던 지역 대부분은 동학이 널리 포교된 지역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1894년 동학농민혁명은 동학의 발상지인 嶺南 지방이나, 70년대 동학 포교지역인 嶺西지방이 아니라, 영남·영서 지방에 비해 비교적 후대인 80년대부터 동학이 본격적으로 포교되기 시작했던 湖西·湖南 지방이 그 진원지가 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全臻準을 비롯한 농민혁명의 주도세력들이 60년대 이래 오래도록 교단을 이끌어왔던 동학 교단지도자들이 아니라 80년대말 또는 90년대초에 부상한 하층 지도자 출신이라는 면에서 1894년 농민혁명에 있어 동학의 역할은 여러 각도에서 고찰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이 글은 1894년 농민혁명에 끼친 동학의 역할을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1894년 당시 동학이 그 사상이나 조직면에서 농민혁명에 대하여 가지는 일정한 역사적 제한성의 측면에도 주의하면서 논지를 펴 나가고자 한다.

글의 내용은 먼저 ①동학사상의 본질을 재검토하여 그것이 1894년의 농민혁명에 끼친 역할을 살피기로 하겠다. 물론 동학사상이 지닌 진보적 측면과 제한성을 동시에 검토할 것이다. ②다음은 동학 포교의 시대별 추이와 함께 그에 따른 동학 교단 조직의 조직화과정을 검토함으로써 그것이 1894년 농민혁명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또 각 지방의 동학조직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1894년 농민봉기의 조직으로 轉化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③그 다음으로는 1892·3년에 전개된 동학 교단이 주체가 된 일련의 대선생신원운동 전개과정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농민혁명 지도부가 성장하게 되는 과정을 밝혀냄으로써 대선생신원운동이야말로 1894년 농민혁명의 전단계 투쟁으로서 농민혁명 지도부의 성장 배경을 이룬다는 사실을 밝혀보고자 한다.

2) 동학의 창시자 수운 최제우는 그의 재세시 제자들로부터 '先生'으로 불리웠다. 그가 처형당한 뒤에는 해월에 대한 호칭을 '先生'이라 하게 되어 자연 수운에 대한 호칭과 구분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수운은 사후 '大先生'이란 이름으로 불리우게 된다. 이렇듯 초기의 사실적이고 소박했던 호칭은 1892·3년 집단사위운동 과정과 갑오년 당시에도 '大先生伸冤一事' '大先生伸冤族'라는 표현에서 보이듯이 널리 쓰였던 호칭이었다. 敎祖라는 말은 갑오년의 봉기가 좌절된 이후 동학이 여러 파로 나뉘어지면서 급격히 종교화되는 과정에서 侍天敎 天道敎에서 처음으로 사용하였던 표현이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동학교도들이 원래 썼던 '大先生'이라는 표현을 살려 대선생신원운동이라 쓰기로 한다.

2 동학사상의 본질과 농민혁명에서의 역할

1) 동학사상의 본질

1860년 4월 5일 무극대도를 깨달은 수운에 의해 확립된 동학사상의 특징으로는 대체로 '다시 開闢'과 '無爲而化'로 대변되는 現實否定사상, '侍天主'와 '修心正氣'에서 발견되는 平等사상, '靈符'와 '呪文'수행에서 드러나는 治病사상, '有無相資'에서 보이는 共同體사상, 斥倭洋에 나타나는 民族主體사상, 정감록적 요소 수용에서 확인되는 避亂사상 및 豫言사상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① '다시 개벽'과 '無爲而化'에 나타난 現實否定思想

수운은 그의 한글경전 『용담유사』에서 자신이 득도하기 직전까지의 시대를 '개벽후 오만년' '하원갑' '전만고'라는 다양한 표현을 통하여 비판하면서 그러한 시대는 이른바 '各自爲心'의 시대, 즉 온갖 모순으로 가득찬 시대로서 극복되어야 할 시대임을 역설하고 있다. 그는 또한 자신이 득도한 1860년을 기점으로 '다시 개벽' '상원갑' '후만고' '오만년지운수'의 시대 일컬어지는 새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 말하고 새 시대는 同歸一體의 호시절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 그는 모순에 가득찬 지금까지의 혼란한 시대는 반드시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終末 사상을 주창하는 동시에, 다가오는 새 시대야말로 理想的인 새 시대가 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함께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그는 한문경전 『東經大全』 「布德文」에서 인류 역사의 변천을 愚夫愚民의

시대, 五帝 이후 聖人の 시대, 各自爲心の 시대, 다시 開闢의 시대³⁾로 구분하고 이제 각자위심의 시대는 끝나고 '다시 개벽'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수운은 자신이 覺得한 '無極大道'야말로 각자위심의 낡은 시대를 종식시키고 동귀일체의 새 시대로 만들며, 개벽후 오만년이 지난 지금까지의 낡은 시대를 다시 개벽하는 가르침이라고 역설한다. 다시 말하면 수운 자신이 확립한 동학사상이야말로 최초 개벽후 오만년동안 지속되어온 기존의 낡은 문명사회를 해체시키고 다시 오만년 동안 지속될 새로운 문명사회를 열기 위한 그 '무엇에 비길 수 없이 큰 도(무극대도)'라고 천명하고 있다.

그런데 수운은 그 '무엇에 비길 수 없이 큰 도'의 근본원리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無爲而化'라고 말하고 있다.⁴⁾ 원래 有爲 또는 人爲에 대한 강력한 비판 극복의 의미를 가진 無爲의 개념이 문제된 것은 道家의 老子에 의해서였다. 한 마디로 노자의 무위가 道인 自然으로부터 일탈하여 많은 문제를 낳는 인간의 有爲⁵⁾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수운이 제시하고 있는 '무위이화'의 개념 역시 노자의 무위가 지니고 있는 의미를 기본적으로 계승하면서도 노자의 그것과는 구분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공간적 현실의 면에서 노자의 무위가 동양문명권에 한정된다면, 수운의 무위는 東·西 양대문명권을 포괄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자면 노자가 말했던 무위는 노자가 생존하던 당시 中國 中心의 '천하대란의 현실'인 유위를 비판하고자 제기되었다면, 수운이 말한 무위는 서구문명의 동점현상에서 초래된 조선반도의 위기현상, 즉 '동서문명의 충돌에서 초래된 조선반도 위의 천하대란의 현실'을 비판하기 위해 제기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수운이 주창한 '무위이화'의 속뜻은 당시 東漸해오는 서구 제국주의 열강의 조선침략에서 비롯된 모순을 無爲化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운이 제시한 무위이화를 '하는 일없이 저절로 이룬다'는 식으로 해석하여 인간의 적극적인 실천을 배제하는 운명론적 견해라고 이해한다면 그것은 분명 잘못된 해석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수운이 강조한 '무위이화'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른바 道 또는 自然한 경지⁶⁾로부터 일탈한 제국주의 열강의 조선 침략행위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民惟邦本이라는 王政의 이상에서 벗어나 가렴주구와 수탈을 일삼고 있던 조선왕조의 지배층에 대한 비판의식을 발견할 수 있을 않을까? 결론적으로 수운이 제시한 '다시 개벽'과 '무위이화'는 天道로부터 일탈함으로써 빛어진 모순으로 가득한 낡은 시대와 낡은 문명을 극복하고, 천도에 일치함으로써,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문명을 열고자 하는 현실 부정, 현실 비판 사상이자 천도를 회복하는 새 시대 새 문명사회 건설을 지향하는 進歩 思想의 일면이 들어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즉 수운이 제시한 '다시 개벽'과 '무위이화'를 통하여 1894년 농민혁명에서 드러나고 있는 반봉건 반침략사상의 東學의 淵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그러나 이같은 수운의 현실부정사상은 "현실의 사회체제 총체를 근원적으로, 총체적으로, 그리고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⁷⁾이었지만 "현실변혁 방법 구상은 지극히 관념적이었고 환상적"⁸⁾이었다. 따라서 수운의 동학사상이 농민혁명의 혁명이념이 되기 위하여는 보다 실천적이며 구체적으로, 또는 보다 사회 정치적 측면에서 새롭게 해석되고 발전되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었다.

② '侍天主'와 '修心正氣'에 나타난 平等思想

수운은 『동경대전』 「論學文(東學論)에서 '吾心即汝心' '天心即人心'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그리고 『용담유사』 「교훈가」에서 "나는 도시 믿지 말고 한울님만 믿었어라 네 몸이 모셨으니 사근취원 하단말가"라는 표현을 통하여 종래 우리 민족이 경건하게 모셔오던 '하늘님'과 인간이 둘이 아님을 천명하였다. 즉 수운은 오랜 수련 끝에 1860년 4월 5일 '하늘님'과 내면적 일체화를 이루는 극적인 체험을 함으로써 '侍天主'를 體現해 내었다. 이 때 수운이 체험한 '하늘님'은 어떤 초월성을 가지고 천상에 존재하는 인격적 존재로서의 '하늘님'이 아니라 바로 자기 안에 모셔져 있는 '하늘님'

3) 「布德文」, 『東經大全(戊子版)』 참조

4) 吾道 無爲而化矣(「論學文」, 『東經大全』)

5) 이것을 '人爲' 또는 '作爲'라고도 한다. 인간은 유위를 통하여 문명을 이룩하여 왔으므로, 廣義의 유위는 인간이 이룩한 일체의 문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6) 최제우는 『동경대전』 「용담유사」 곳곳에서 道 또는 自然한 境地를 일러 '天道'라고 표현하고 있다.

7) 鄭昌烈, "동학운동: 반란인가 혁명인가", 『歷史에서의 革命』, 제 32회 전국 역사학대회 발표요지, 1989), p. 42.

8) 삼계서, p. 42.

을 의미하였다. 그리하여 수운은 사람이면 그 누구나 동학에서 제시한 방법대로 수련을 행하면 시천주를 이룰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자신의 가르침을 진실하게 따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하늘님'과 내면적 일체화를 이룰 수 있으며, 자기안에 모셔져 있는 '하늘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신분과 남녀의 차별, 노소의 구별이 엄격했던 당시 사회에서 신분의 고하나 남녀 노소에 관계없이 그 어떤 사람이라 할 지라도 동학의 가르침을 통하여 수련하게 되면 '시천주' 즉 '하늘님'과 일체화가 될 수 있고, 자기 안에 모셔진 '하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시천주 사상이야말로 조선왕조 신분제를 타파하고 근대적 평등사상을 확립하게 하는 논리적 근거가 된다는 점에 역사적 의의가 크다 할 것이다.

수운이 천명한 '시천주'를 근거로 하여 확립된 동학의 평등사상은 수운의 사후 海月 崔時亨(1827~1898)⁹⁾을 통해 '배짜는 며느리가 바로 하늘님이며' '어린이를 때리는 것은 하늘님을 때리는 것이다'라는 汎天論的¹⁰⁾ 동학사상으로 확대되어 민중들 속에서 실천됨으로써 1894년 동학농민봉기 당시 동학 조직이 민중들을 광범위하게 결속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면 사람이 '하늘님'과 일체화를 이루는 구체적 방법은 무엇인가. 사람은 어떻게 자기 안에 모셔진 '하늘님'을 체험할 수 있는가. 수운은 시천주를 이루는 구체적 수행 방법론으로 '修心正氣'라는 수행법을 제시하였다. 마음을 닦고 기운을 바르게 함으로써 侍天主 즉 '하늘님'과의 일체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또한 수운은 수심정기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루어가는 방법로서 '至氣今至 願爲大降 侍天主造化定 永世不忘萬事知'라는 21자 주문을 열심히 독송하는 방법과 함께 誠敬信으로 닦아가는 수행법을 제시하고 있다.

③斥倭洋의 民族主體思想

수운은 자신이 제정했던 동학의 주요 儀禮인 劍舞와 劍歌를 통하여 당시 조선을 향해 밀려들고 있던 서양 오랑캐(洋夷)를 제압하고자 하였다.¹¹⁾ 검가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전투적 의지를 고양시키는 한편, 평소 검무를 통한 수련을 한 다음 유사시 일제히 일어나 오랑캐를 물리치도록 하자고 강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르침을 東學이라 명명한 것은 東國(朝鮮을 가리킨다)의 이름을 딴 것으로 바로 西學을 제압하고자 한 것¹²⁾이라고 밝힘으로써 동학사상이 지니고 있는 반침략적 민족주체적 성격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임진왜란 당시 倭의 침략을 상기하는 내용이 담긴 가사를 남기면서 동학은 바로 '개같은 왜적놈'¹³⁾들을 소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같은 수운의 척왜양사상은 그후 줄곧 동학의 기본사상으로 계승되어 개항이후 공공연하게 전파되고 있던 西學 교도와의 충돌을 가져오기도 하고, 倭洋의 침략이 갈수록 노골화되던 1892·3년에 전개된 大先生伸冤運動에서는 척왜양의 요구가 일관된 주장으로 나타났으며, 대선생신원운동 과정에서 일관되게 나타난 척왜양사상은 1893년 3월 報恩聚會의 '斥倭洋唱義'의 반침략사상으로 발전하게 되고, 그것은 다시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반봉건 반침략 사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④治病思想과 有無相資思想

수운은 동학의 가르침을 전파하면서 조선후기 이래 널리 유행하던 콜레라와 같은 치명적인 전염병에 대한 새로운 약방문도 함께 제시한다. 즉 자신의 가르침을 성심으로 믿고 따르게 되면 병도 자연 치유된다고 주장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수운은 그같은 증거로서 자신이 '하늘님'과 일체화되는 체험을 하는 과정에서 터득한 신령스런 부적(靈符 또는 弓乙符)를 그려 태워 맑은 물에 타서 마심으로써 자신의 병을 치유하였고,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영부를 그려 나누어 주면서 동학의 가르침을 전파하였다. 여기에는 물론 주술적인 믿음의 요소라든지, 당시 전승되어 오던 민간요법을 수용하였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나, 죽음의 병이라 할 수 있는 콜레라 앞에서 예방과 치

가르침
Panen-therism
汎天論

9) 이하 해월이라 칭함.

10) 수운의 侍天主의 개념을 실천적으로 해석하여 사람뿐만 아니라 천지만물에게까지 확대하여 적용했던 海月思想의 특징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申一澈 교수가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申一澈 「東學思想의 展開-侍天主 事人如天을 거쳐 人乃天에로-」, 『韓國思想』 17, 1980, p. 101.)

11) 洋寇出 卽呪文舞劍以禦敵(『徐憲淳狀啓』, 『日省錄』 高宗 元年 甲子 2月 29日 條)

12) 名之曰東學 取東國之義 洋學陰也 東學陽也 欲以陽制陰(上揭資料)

13) 「안심가」, 『용담유사(계미판)」

료의 수단을 거의 얻지 못하고 있던 당시 조선민중의 처지에서는 수운 자신의 치유의 경험과 그가 그려 나누어 주던 영부의 효능에 대하여 폭발적인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수운이 보여준 치병의 능력에 대해 당시의 민중들이 깊은 관심을 가졌던 배경에는 조선 후기에 1만명 이상 10만명이하의 사망자를 낸 전염병이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200여년 동안 9회에 걸쳐 유행하고, 10만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경우도 6회에 달했다¹⁴⁾는 역사적 사실이 전제되어 있다. 당시 조정에서도 속수무책이었던 무서운 전염병에 대한 대비책을 得道體驗을 통하여 독특한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는 수운의 가르침은 그가 당시 일반 민중들의 처지에 대해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치병사상은 동학사상의 주목할만한 특징이라 간주해도 좋을 것이다.

한편 수운은 초기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 경제적 여력이 있는 자들로 하여금 가난한 자를 위하여 적극 돕도록 가르쳤다. '有無相資'라 하여 즉 경제력 여력이 있는 교도들로 하여금 공동체적 정신을 발휘하여 가난한 교도들을 돕도록 한 것이다. 이같은 초기 동학의 공동체적 분위기가 '貧窮者'들로 하여금 다투어 동학에 입교하도록 하였음은 물론이다.¹⁵⁾ 그리하여 동학 조직은 수운 당시부터 매우 끈끈한 공동체로서 자리잡기 시작하여 그가 처형당한 후에도 수십년간 지하 조직으로 존립을 가능하게 하였다. 동학 교단은 특히 교조 당대부터 봉건 지배층과 재야 유생들의 탄압으로부터 교도들을 보호하며 구명을 위한 빈번한 모금지시의 통문과 주초어육을 금함으로써 저축된 돈을 석방자금으로 사용하는 술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¹⁶⁾ 참고로 1863년 12월 피체된 교조 수운을 위해 동학교도들이 보여준 '유무상자'의 실천사례를 다음 <표-1>로 제시해본다.

14) 趙珩, 「19世紀 民亂의 社會的 背景」, 《19世紀 韓國 傳統社會의 變貌와 民衆意識》, 高麗大 民族文化研究所, 1982), pp. 197-199.

15) 崔承熙, 「書院(儒林)勢力의 東學排斥運動小考」, 《韓學博士 停年紀念史學論叢》, 지식 산업사, 1981), p. 559.

16) 김지하, 「은적암기행」, 《남녘땅 뱃노래》, 두레, 1985), p. 184.

<표-1> 수운의 옥바라지와 석방에 힘쓴 교도의 출신지 및 역할

地方名	教徒名	역할
慶州	崔慶翔(북도중주인)	석방 각양주선
	崔世貞(수운의 長子)	시신 斂襲 運柩
	崔孟倫(수운의 長侄)	水雲 在營時 留連守御 대구 감영에 머물며 北接일 주선
固城	成漢瑞(집주)	유련수어
丹陽	閔士葉(집주)	三百金誠出 수운유족 돌봄
	金敬叔	수운 遺族 돌봄
	金敬弼	수운 유족 돌봄
大丘·清道	金周瑞(집주)	유련수어
	尙州 黃文奎(집주)	비용염출
	金德元	시신 염습
新寧	河致旭(집주)	유련수어
	河處一	유련수어
安東	李武中(집주)	영양점과 같이 오백금염출 논을 팔아 최경상의 피신주선
	延日 金而瑞(집주)	홍해점과 같이 삼백금 염출
盈德	吳明哲(집주)	영해점과 같이 육백금 염출 유련수어
	劉尙浩	백여금 염출
	具正元	대구감영에 머물며 북접일 주선
	全聖(碩)文	유련수어
	英陽 黃在民(집주)	안동점과 같이 오백금 염출
寧海 朴夏善(집주)	영덕점과 같이 육백금 염출	

蔚山	徐君孝(접주)	유린수어 시신염습운구
蔚珍		유린수어
宜寧	姜先達	평해집과 같이 삼백오십금 염출
清河	李敬汝	유린수어
	鄭用瑞	유린수어
平海		시신염습
玄風	郭德元	울진집과 같이 삼백오십금 염출
		종이 되어 수운의 밥상거행
興海		시신염습
기타	崔奎彦	연일집과 같이 삼백금 염출
	朴汝仁	유린수어
	林益瑞	유린수어
	林根祚	유린수어 시신염습
		유린수어

이같은 초기 동학 교단의 '유무상자'의 전통은 갑오년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대선생신원운동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¹⁷⁾

동학의 '유무상자'의 사상은 동학교단의 오랜 전통이었다. 이러한 공동체적 전통은 대선생신원운동기에도 줄곧 실천되고, 1894년 1월의 교부민란의 단계와 3월의 무장기포단계에서도 그대로 계승 실천됨으로써 동학교도와 일반농민들을 동학조직으로 결속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요약하자면 동학의 치병사상과 유무상자의 사상은 당시 조선 민중들에게서 동학의 대중성을 확보하도록 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동학사상의 특징적 요소라 할 만하다.

⑤鄭鑑錄의 避亂思想과 豫言思想

수운이 남긴 한글가사인 「몽중노소문답가」에는 조선후기 민중들로부터 폭발적인 지지와 신봉을 받고 있던 『정감록』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되는 내용들이 여기 저기에 수용되어 있다. 이른바 피지배 민중층의 경전이라 할 『정감록』이 보여주는 핵심적인 사상적 특징은 위기의 시대 兵禍의 위협으로부터 목숨을 보전할 수 있는 十勝地思想 즉 避亂思想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위기의 시대상황을 초월적 능력을 통하여 일거에 해결해줄만한 위대한 인물의 출현을 고대하는 眞人사상과, 왕조가 교체되어 새로운 왕조가 등장할 것이라는 왕조교체사상이 핵심이다. 수운은 『정감록』에 나타난 피란사상과 진인사상, 왕조교체사상 등을 자연스럽게 흡수하여 兵禍가 없는 새로운 시대즉, 다시 개벽되는 새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빈하고 천한 사람 오는 시절 부귀로세" 라고 하여 다가오는 새 시대에는 '빈천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이 되리라고 예언하고 있다. 이러한 예언적 요소 역시 『정감록』의 내용과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정감록』적 요소를 풍부하게 수용한 동학사상은 당시대 조선 민중의 절대적인 지지 속에서 민중들의 정치사상적 견해를 대변하는 사상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즉 동학사상 안에 수용된 정감록적 요소는 조선 후기 민중들의 願望을 수용·반영함으로써 동학사상으로 하여금 당시의 민중들과 강하게 결합할 수 있도록 매개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2) 농민혁명에서의 역할

1860년대 성립된 동학사상은 수운의 제자 해월에 의해 매우 실천적으로 확대 발전된다. 해월에 의해 발전된 동학사상의 특징은 한 마디로 '天地萬物 莫非待天主'라는 汎天論的 사상이다. 사람만이 '하늘님'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 모두가 바로 '하늘님'

17)60년대 이래 '유무상자'를 강조했던 동학교단의 일련의 조치들은 다음과 같은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① 好財貨而有無相資 卽貧窮者悅焉 (1863. 12 「東學排斥通文」)

② 或有貧窮之友 隨宜救急事 (1889. 3 「己丑三月初十日 新定節目」, 筆者所藏)

③ 先赴大義 數旬之間 至於傾蕩者 有之 歸家之日 專育無策 諸益出義周急事 (1892. 11. 12 「敬通」, 「韓國民族運動史資料大系」)

④ 有無相資 不使流離 遠近合心 無致異論 (1892. 11. 19 「敬通」, 上揭書)

⑤ 守宰之貪虐滋甚 故平民不能聊生 投入於其黨 卽輒與錢穀 物我無間云 (《前司諫 權鳳 熙疏》, 「聚語」, 「東學亂記錄」上, p. 107.)

이라는 사상이다. 어린이도 하늘님이요, 며느리요 하늘님이요, 날아가는 새도 하늘님이요, 들에 핀 한송이 꽃도 하늘님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확대 발전된 동학사상은 신분제에 의해 억압받고 있던 모든 계층들 즉, 양반중의 庶孽들과 中人·平民·賤民들의 지지를 받으며 강력한 신분해방사상으로 기능하게 된다. 특히 해월은 일생동안 그 자신 머슴출신이라는 신분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事人如天을 유일한 話題로 삼아 사람과 사람 사이의 富貴貧賤과 老少男女와 嫡庶奴主의 별을 가리지 말라고 역설하였다.¹⁸⁾ 1860년대 후반 경상도 寧海 盈德 일대의 새로운 신분상승세력, 이른바 新鄕들¹⁹⁾이 대거 동학에 가담하였다가 舊鄕들로부터 대대적인 탄압을 받고 1871년 3월 이필제와 함께 兵亂을 주도하였던 역사적 사실이라든지²⁰⁾, 1891년 해월이 백정 출신으로 알려진 南啓天을 湖南左右道 便義長이라는 중책에 임명하였을 때 호남지방 16包 교도대표들이 불복하자 그 대표자격인 金洛三을 불러 준절히 꾸짖으며 '비록 출신이 낮고 미미할 지라도 두령의 자격이 있으면 그 지휘를 따라 도를 실천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옳다'라고 역설한 사실²¹⁾ 등은 동학의 평등사상이 수운에 의해 제시된 이래 줄기차게 기능을 하며 계승 실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할 것이다. 이러한 동학의 평등사상은 義庵 孫養熙 선생의 동학입교동기²²⁾와 白凡 金九 선생의 입교동기²³⁾에서도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당시 일반 민중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생각된다. 즉 동학이 당시 민중들에게 널리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주된 요인중의 하나는 바로 시천주 사상을 근간으로 한 동학의 평등사상이었던 것이다.

평등사상을 강조하며 민중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던 동학은 1864년 교조의 순교와 1871년 '영해신원운동'으로 인하여 초래된 미증유의 위기를 해월 중심의 지도체제 정비를 통해 극복해내고, 70년대 말에는 영서지방을 근거지로 삼아 조직과 체제를 정비한 다음, 1880년대 들어와 호서·호남으로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는 동학 교단을 둘러싼 정세가 유리하게 조성되고 있었으며, 동학지도부는 유리해지는 외부 정세를 교단 조직화와 발전의 계기로 삼을 만한 주체적 역량이 어느 정도 확보된 시기였다. 즉 신사척사운동(1881) 임오군란(1882) 갑신정변(1884) 등 지배층 내부의 開化와 守舊세력간의 갈등은 상대적으로 동학에 대한 지배층의 탄압을 느슨해지게 하였고, 급진적인 개화정책의 추진을 둘러싼 재야 유생들의 반발은 민중들에게 배외의식과 함께 위기의식을 불러와 척왜양을 강조하고 병화로부터의 피란을 강조하는 동학사상에 대해 주목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건 위에서 80년대 후반에 들어와 동학은 호서·호남 평야지대를 중심으로 급속하게 전파되었다.

바로 이 무렵, 80년대 후반 호서·호남 평야지대를 중심으로 동학이 급속하게 전파되던 시기에 장차 농민혁명을 주도할 전봉준 손화중 김개남 김덕명 최경선 등이 동학에 입교하게 된다. 이 중에서 전봉준이 언제 동학에 입도하였는가 하는 문제는 농민혁명 지도부 문제와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이나 현존 사료에 의해 정확한 입교시기를 밝히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다.²⁴⁾ 그런데 전봉준이 이해하고 수용했던 동학사상은 해월에 의해 발전된 범천론적 동학사상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사회 정치사상적 측면으로까지 확대하여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전봉준은 供草에서 "동학은 수심정천하는 도이기 때문에 대단히 좋아하였다"²⁵⁾고 하면서도, 또 동학이란 어떠한 주의인가를 묻자 "守心하여 충효를 본을 삼아 輔國安民하자는 것"²⁶⁾이라고 답을 하고 있다. 또 "동학당의 소위 '敬天守心'이라는 주의에서 생각할 때에는 正心외에 '協同一致'의 뜻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結黨하는 것의 중요함을 본다. 마음을 바로한 자의 일치는 간악한 관리를 없애고 보국안민의 업을 이룰 수 있기 때문"²⁷⁾에 입교하였다고 함으로써, 동학의 가르침을 보다 현실지향적 입장에서 수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같은 전봉준의 동학사상 수용 태도는 이른바 해월 문화에서 오래도록 생활을 같이 해왔던 장로급 지도자들의 동학사상 이해와는 일정한 거리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한편 전봉준의 경우는 세 두락을 경영하는 빈농의 처지로서 생활감정이 당시 전라도 일대의 일반 농민들과 하나도 다를 게 없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생활감정은 자연 일반 농민들의 고난을 자신의 것으로 쉽게 동일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즉 관의 부당한 수탈에 의해 희생당하는 당시 전라도 고부 일대

18) 오지영, 「동학사」, (『동학사상자료집』이, 아세아문화사, 1979), p. 397.

19) 이들 신항세력들 중에는 서얼 출신들이 많았다.

20) 장영민, 「1871년 영해 동학란」, (『한국학보』47, 1987) 참조

21) 吳尙俊, 「本教歷史」, (『天道教會月報』23, 1912. 6), p. 18.

22) 의암 선생은 청주 향리 집안의 庶子였다. (一記者, 「民衆의 巨人 孫養菴先生의 一代記」, 『開闢』24, 1922. 6, p. 75-77)

23) 『백범일지』 참조

24) 80년대 후반 호서 호남 일대 동학 포교과정을 추적해온 필자의 입장을 밝힌다면 전봉준의 동학 입교는 현존 사료에 나타난 시 기보다 상당히 이른 시기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25) 「全瘳準 供草」 再招問目

26) 上揭資料

27) 강창일, 「갑오농민전쟁 자료발굴: 전봉준 화건기 및 취조기록」, (『사회학사상』1, 1988), p. 262.

농민들의 현실은 전봉준 자신의 처지와 그다지 동떨어진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供草에 나타난 "일신의 해로 말미암아 기포함이 어찌 남자의 일이 되리요. 衆民이 억울해하고 한탄하는 고로 백성을 위하여 해를 제거코자 한 것이라"²⁸⁾ 는 답변을 통해 우리는 전봉준의 의식이 당시 고통받던 민중들의 일반적 현실과 하나로 결합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28) 「전봉준공초」 초초문목

필자 생각으로는, 관념적 수준이긴 하지만 당시 조선왕조의 현실을 총체적으로 부정하는 현실부정사상으로 제시된 수운의 동학사상이, 제자 해월의 汎天論的 동학사상에 의해 보다 실천적으로 해석되고 일반 민중들 속에 널리 전파됨으로써, 80년대말 혹은 90년대 초에 이르면 조선말의 사회경제적 현실위에서 수운·해월의 동학사상을 새롭게 해석하고 확대발전시킨 전봉준과 같은 동학 하층 지도자들이 성장함으로써 초기 동학사상이 질적 변화를 거쳐 동학농민혁명의 이념으로 자리잡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3. 동학 포교의 추이 및 동학조직의 특징과 그 역할

1) 동학포교의 시대별 추이와 조직화과정

① 수운 재세기(1860~1864)

1860년 4월 5일 無極大道를 깨달은 수운은 조선 후기 민중들에게 모순에 가득찬 현실을 일거에 해소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真人 또는 異人(理人)으로 인식되었다. 또한 靈符를 불살라 병을 치료하던 그의 포교 행각과 '새 시대가 온다'는 그의 외침은 전염병이나 기근, 봉건적 수탈 등에 시달리던 당대 민중의 주목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였다.

수운은 매월 초하루와 보름을 기해 入山 行祭(設壇 祭天)하면서 劍歌와 劍舞로 교도들을 훈련시키고, 교도가 많은 지방에는 직접 순회하거나 '結幕(일종의 포교소)'을 하여 집회를 가졌으며, 開接(정기적 수련 과정의 설치)을 통해 교도들의 수련을 직접 지도하는 방식으로 그의 가르침을 퍼나갔다. 그 결과 1862년 12월말 경상도 15개 고을에 接을 두고 16명의 접주를 임명할 정도로(接主制) 조직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화는 동학을 서학의 아류 또는 잡술로 간주하던 보수 유생들의 배척과 탄압에 부딪쳐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중들의 폭발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3년여만에 "조령에서 경주에 이르기까지 4백여리가 되는 고을고을에 동학 주문되는 소리가 그치지 아니할 정도로"²⁹⁾ 널리 전파되었다.

29) 「鄭雲龜書啓」, 「備邊司牒錄」 哲宗14 癸亥 12月 20日條

그런데 이 시기 동학 교단은 어디까지나 수운 중심의 체제로 경주 일대가 주된 기반을 이뤘고, 장차 2대 교주가 될 해월 최시형(初名 慶翔)은 다만 여러 弟子 중의 한 사람으로 주로 경주 이북 지방에서 활동하였다. 그는 경주 이북 지방 포교활동의 공으로 1863년 7월경 '北道中主人'으로 임명되어 일정한 지위를 인정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② 지하포교와 지도체제 정비기(1864~880)

동학의 급속한 전파는 추로지향을 자부하는 경상도 보수 유생들로부터 배척과 탄압을 받기에 이르고, 급기야 1863년 12월 선전관 정운구에게 체포된 수운은 이듬해 3월 10일 '平世思亂 暗地聚黨'의 혐의를 쓰고 처형됨으로써 동학은 불법화되었다. 그리하여 수운 재세기 半公開的으로 이루어지던 포교활동이 사라지고 地下布教時代가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교세의 기반과 지도체제에 변화가 왔다. 즉 수운의 피체 처형으로 인해 해월이 유력한 지도자로 부상하였으며, 경주 인근의 수제자 대부분이 체포되고 그의 교도 역시 관의 지속적인 탄압을 피해 산악지대로 은신해버리자 교세의 기

반이 경주로부터 경상도 북부의 산악 지대로 바뀌어 북부 출신 인물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기 시작하였다. 해월은 관의 지목을 피하여 日月山 龍化洞에 은신하여 북부 출신 인물들과 밀접히 교류하면서 흔들리는 교단 재건에 진력하였다. 1866년 봄 해월이 교단 재건을 위해 '수운을 위한' 契를 조직하자 수운의 옥바라지에 적극 협력한 바 있던 경주 이복의 교도 다수가 참여하였다. 계를 통해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매년 두번의 제사를 정례화하여 교단 재건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60년대 후반 계를 통해 경주 이복을 중심으로 재건된 동학 교단은 1870년 변란 조직의 귀재 이필제의 참여로 중대한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수운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伸冤을 명분으로 접근해온 이필제를 중심으로 대다수의 교도들이 결속함으로써 이른바 '영해 교조신원운동'이 일어나 해월을 비롯한 교단 지도부 전체가 참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1871년 3월 10일 경상도 일대 18개 지방 5백여명의 교도가 참여한 '영해 교조신원운동'은 3백여명이 체포되어 죽거나 귀양가는 참담한 실패로 끝났으며, 이필제와 해월 등 소수의 지도자만이 간신히 도망하여 강원도 남부 산악지대로 은신하였다. 그 해 8월 이필제가 또다시 주도한 聞慶作變으로 명맥만 유지되던 교단 조직은 결정적으로 붕괴되었다. 그 결과 60년대 후반 경주 이복 지방을 중심으로 재건되려던 교세는 일거에 상실되고 말았다.

70년대에 들면, 동학 조직 속에 이필제와 같은 변혁지향적 인물이나 지역적 기반을 가진 지도자가 부재한 가운데 해월에 의해 교단 재건이 주도되었다. 1871년 내내 은신 생활로 관의 지목을 피한 그는 파괴돼버린 교단 재건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이듬해 10월 강원도 정선 寂照庵에 입산 49일 수련을 행하였다. '太白山工'이라 불리는 적조암 수련은 강원도 지방의 인물들이 최시형을 정점으로 결집하는 계기가 되었다. 해월은 특히 1875년 1월 수운의 차남 世淸이 죽자 수운의 기제 및 탄신제 봉행을 자신이 직접 맡아 제사문제로 이원화되었던 교단체제를 일원화하고, 새로운 致祭의식을 제정하여 그 해 10월 說法祭를 최초로 행하였다. 설법제는 九星祭(1877.10) 引燈祭(1879.4) 등으로 계승 발전되어 해월 중심의 지도체제 확립에 기여하였다. 그리하여 70년대는 해월 중심의 지도체제 확립과 함께 수운문집의 편찬(최선생문집도원기서), 정기적인 수련활동의 재개, 동학 경전의 집성(동경대전) 등으로 조직적인 포교활동의 기반이 조성되었다. 교세는 양양 정선 영월 양구 인제 단양 등 영서지방이 중심이었으며, 정선의 유시현(유인상, 유도원) 인제의 김용진(김연국) 등이 새로운 지도자로 부상하였다.

③호서·호남과 신원운동의 기반형성기(1881 ~ 1890)

80년대 초반 동학은 70년대 후반에 이룩한 지도체제 확립, 정기 수련의 실시, 경전의 집성 등을 기반으로 강원도 嶺西 지방의 산악지대를 벗어나 청주, 충주, 보은, 공주, 목천, 익산, 부안 등 호서·호남의 평야 지대로 진출하였다. 청주의 손병희 손천민 임규호 권병덕, 충주의 서병학, 보은의 황하일, 공주의 윤상오, 목천의 김은경 익산의 박치경 등 장차 보은취회와 1894년 농민혁명에서 활약할 인물들이 대거 입교하였으며, 승려 출신 徐仁周(장옥, 호 일해)를 비롯한 호서·호남출신 인물들이 부상하기 시작하였다.

84년 10월경에는 늘어나는 교도 관리를 위해 六任制가 시행되었고 공주의 가섭암 익산사자암 등이 포교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편 수운 당시 남원 등지에 동학이 포교되었던 호남 지방에도 80년대에 들어와 교세가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해월의 地下布教地가 80년대 후기 들어와 호서 호남의 평야지대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이 단적인 증거이다. 호서·호남 지방에 동학이 급속히 전파될 수 있었던 요인은 첫째 동학 교단 자체의 성숙된 역량 즉 지도체제 확립, 경전 집성, 종교 의식의 확립, 교도의 조직화 능력의 제고 등에 있었고, 둘째는 시대의 객관적 상황에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즉 70년대 중반이래 연속된 흉년과 질병, 정치적 무패와 무능, 조세 수탈의 가중과 계급적 모순의 심화, 개항이래 급증하는 외국 상품의 유입과 미곡의 유출, 洋夷가

곧 침공할 것이라는 위기의식과 함께 민족 자주성에 대한 상실감 고조 등으로 말미암아 체제위기와 민중들의 고난이 심각하였던 것이다. 이같은 시대의 객관적 조건은 동학과 같은 신종교의 유행에 더없이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2) 호서·호남 동학교세 증가 및 조직화가 농민혁명에 끼친 영향

80년대 후반부터 호서·호남의 평야지대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포교되기 시작한 동학은 90년대 초기에 이르면 비약적인 교세 증가를 이룬다. 한편 교세의 비약적 증가는 기존의 동학 교단조직과 지도부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그 변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80년대 전반까지 嶺南·嶺西 지방이 근간이 되었던 교세의 지역적 기반이 湖西·湖南지방으로 바뀌고 이 지역의 교세가 영남 영서의 교세를 능가하는 수준에 이르며,

둘째 최시형을 정점으로 한 교단 지도부가 정비되는 가운데 신앙경력이 비교적 짧은 소장 지도자들이 부상하여 교도들을 직접 지도하게 되며,

셋째 동학의 교리 해석에 일정한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졌다. 즉 80년대 이전 영서의 산악지대에 머물러 있던 동학의 사상적 기반에는 道·佛敎사상이 자리하고 있었으나, 80년대 호서·호남출신 인물들의 입교를 계기로 동학 교리를 유교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게 대두되었다. 특히 80년대초에 들어온 승려 출신 徐仁周의 역할이 90년대초에 들어와 퇴조하고 유교적 소양이 강한 孫天民의 역할이 두드러지는 현상은 주목할만한 변화였다. 동학 교리의 유교적 해석은 동학을 배척하는 봉건왕조와 보수 유생들에게 동학이야말로 조선왕조의 지배 이데올로기인 주자학과 하등 다름없을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자학의 한계를 보완해주는 사상이라고 주장하게 함으로써 90년대초 대선생신원운동 전개에 사상적 근거를 구축하였다.

넷째 교도의 비약적 증가로 그간의 인적 결합조직인 接制가 지역적 결합조직의 성격이 강한 包制로 변화되었으며, 包와 包, 接과 接간에 교세 확장을 위한 경쟁 현상이 일고 기존 동학 조직내의 분화 현상마저 노정되었다. 이같은 현상은 동학지도부로 하여금 지도체제와 조직정비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만들었으나³⁰⁾, 이같은 동학지도부의 조치는 여러 조건들에 의해 그다지 순조롭게 행해지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직간의 분화 경쟁 현상은 갑오년 당시 이른바 '南·北接 갈등문제'와도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長老급 지도자를 淵源으로 하여 비교적 늦게 입도한 인물들이 90년대 초기에 소장 지도자로 성장하고, 이들을 淵源으로 한 聯臂³¹⁾들이 증가함으로써 교단 지도부와 달리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접이나 포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장로급 지도자에 비해 신앙경력이 짧고, 특히 교단 지도부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활동하는 호남의 소장 지도자들은 聯臂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그들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교단 지도부의 지시보다는 자신의 포나 접에 속해 있는 다수의 하급 접주나 연비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쉬운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삼례취회후 최시형을 法軒으로 추대하고 그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단결하기로 결의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동학지도부의 분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중의 하나였다.

이상과 같이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기 교세의 비약적 증가와 함께 대두된 동학 조직을 둘러싸고 일어났던 현상들은 교단 지도부로 하여금 일반 교도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포교방식을 채택하도록 강제하였다. 즉 봉건지배층과 지방 수령들의 탄압과 수탈을 피해 그간 수동적으로 전개해온 지하포교방식을 청산하고 포교의 공인 획득을 위한 '스승의 신원'과 동학도에 대한 '가렴주구의 금지'를 요구하는 공개적이며 조직적인 운동을 전개하도록 만든 것이다. 이러한 배경 위에서 1892·3년에 이른바 '大先生伸冤運動'이 조직적으로 전개된다.

30) 1891년 5월 해월이 전라도 扶安 泰仁 등지를 순회하면서 湖南左右道 便義長을 임명하고 六任을 임명하는 조치를 내린 것이라든지, 전라도 순회를 마친후 '通諭 10條'를 내리면서 '연원을 바르게 할 것(正淵源)'과 '난잡한 행위를 말 것(禁濇糺)'이라 강조한 것은 모두 동학지도부에 의한 지도체제 및 조직정비 조치의 일환이었다. 성봉덕, 『해월신사의 통유 10조』, 『신인간』 97, 1991.8, p. 46 60)

31) 東學에서는 나에게 동학의 가르침을 전해준 이를 淵源이라 하고 내게서 전해받은 이를 聯臂라고 부른다. 이같은 동학 조직의 특성은 철저한 人的 系譜 중심이라는 점이다.

4. 1892·3년 대선생신원운동의 전개와 그 역할 -삼례취회를 중심으로-

1892년 10월 公州聚會부터 1893년 3월 報恩聚會에 이르기까지 동학교단이 전개한 일련의 집단시위운동을 통해 동학 조직과 일반 농민들과의 결합의 계기가 조성되었고, 농민혁명을 이끌 지도부가 성장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에 걸쳐 호서·호남 지방 교세를 기반으로 등장하는 동학의 하층 지도자들은 교단 지도부로 하여금 당시 봉건적 수탈과 외세의 침략이라는 이중의 질곡 속에서 신음하던 농민들의 고통에 동참하여 그들의 요구를 대변하도록 견인역할을 해냄으로써 동학 조직과 일반농민이 굳게 결합하도록 만들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1893년 3월 보은취회에서 '동학 포교의 공인'이나 '동학도에 대한 가렴주구의 금지'와 같은 교단적 요구조항 대신 당시 민중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형성되고 있던 排外意識을 대변한 '斥倭洋倡義'의 旗幟를 내건 것은 좋은 예라 할 것이다. 그리하여 1894년의 농민혁명은 동학조직이 처한 객관적 현실에 대한 동학 교단 지도부의 현실인식과 대응책의 변화와 그것이 있게 한 호남지방 하층 지도자의 의지를 배경으로 일어나게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장에서는 동학교단의 집단시위운동중 아직까지 그 전모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는 1892년 11월의 삼례취회를 중심으로 1894년 농민혁명과의 관련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周知하듯이 호남 땅에 동학이 포교되는 계기는 1861년 11월경 교조 수운의 남원지방으로의 피신에서부터 비롯된다. 그러나 교조 자신에 의한 호남지방 동학포교는 그 뒤로 별로 뚜렷한 자취가 남아 있지 않다. 오히려 본격적으로 동학이 호남에 퍼지기 시작하는 것은 해월을 중심으로한 단일지도체제가 정비되고 난 뒤인 1880년대 중반부터이다. 그런데 이 80년대는 전술한 바와 같이 급속한 개화정책을 둘러싸고 개화파와 수구파의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辛巳斥邪運動(1881) 壬午軍亂(1882) 甲申政變(1884) 등 나라안이 온통 뒤흔들리는 분위기가 연속되고 있던 상황이었다. 가히 위기의식이 최고로 고조되는 시대였던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조건으로 인하여 그간 강경했던 동학에 대한 금압정책이 느슨해졌으며, 민중들은 오히려 시대적 불안과 위기의식의 해소를 위해 동학과 같은 새로운 가르침에 다투어 귀의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객관적 상황에 고무된 동학지도부는 70년대까지 주로 영서지방 북부 산악지대에 머물러 있던 동학 교세의 기반을 평야지대인 호서·호남 특히 전라도 扶安 益山을 중심으로 널리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당시의 동학지도부는 시대적 조건이 동학의 가르침을 널리 퍼기에 매우 유리해진 상황과, 70년대말까지 지도체제의 정비, 교조 수운의 문집편찬, 경전의 집대성, 조직정비 및 의례의 제정 등을 달성한 자체내의 준비된 역량에 힘입어 호남지방을 무대로 활발한 포교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호남지방의 동학교세는 동학지도부조차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급격히 신장되었다. 특히 1890~3년간에는 가히 폭발적으로 교세가 신장되었다.³²⁾ 이러한 추세 속에서 동학 조직체도의 근간인 六任制가 80년대 이후 호서·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급격히 이루어지는 교세 신장에 대처하기 위하여 1884년 10월에 제정되어 시행되었으며, 1891년 5월경에는 해월이 직접 호남지방의 扶安·泰仁등을 순방하고 六任을 임명하기도 하였다. 또한 급격히 신장되어 가던 동학교세는 동학지도부로 하여금 교세의 조직화를 위한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함으로써 종래의 인맥중심의 조직제도인 淵源制를 지역단위 조직의 성격이 강한 包制로 전환하게 하였으며, 각 지역의 동학조직을 통괄하는 便義長制를 시행하게 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은 모두 늘어나는 교세를 일사불란한 조직 체계하에 관리하려는 조치라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한편 호서·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동학교도들이 급격히 늘어나자 새로운 사태가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바로 각 고을 守令 吏胥 土豪들이 다투어 조정에서 금하

32) 「都所 朝家回通」, 『韓國民衆運動史資料大系』東學書, (麗江出版社, 1985), p. 90.

「天道教會史草稿」, 『東學思想資料集』(亞細亞文化社, 1979), p. 448.

는 동학 禁斷을 빙자하여 동학교도들의 錢財를 수탈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 동학교도들의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된 것이다. 그런데 동학금단을 빙자한 수령 이서 토호배들의 수탈행위는 이미 교조 재세시부터 비롯된 것으로서 90년대 접어들면서 전라도 지방에서 특히 가혹하게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90년대 이전까지 동학지도부와 교도들은 동학도로 지목되어 체포되면 贖錢(일종의 석방금)을 바치고 풀려나거나 체포를 피해 다른 고을로 피신해버리는 등 소극적 방법으로 대처하곤 했지만, 90년대 들어 교세가 급격히 늘어나고 조직화되면서 수령 이서 토호배들의 탄압과 수탈행위가 날로 가혹해지자 종전의 수동적 자세를 버리고 강경한 맞대응의 방식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부당한 방법으로 토색질을 하는 해당 고을 수령을 향하여 직접 호소하거나 대규모의 인원을 동원한 시위운동을 통하여 "동학도에 대한 부당한 수탈행위를 중지할 것"과 "억울하게 처형된 스승 수운의 신원"을 해줄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 동학도들은 수령이나 감사의 부당한 행위를 과감하게 지적하고 나섰다. 지면상 1892년 11월 전라도 삼례취회 당시 전라감사 李耕植에게 제출된 "各道東學儒生 議送單子"의 일부 내용을 통해 동학교도의 집단시위운동의 배경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동학방식
부세추진

"지목하기를 서학의 여파라 하여 얼음 수령들이 빗질하듯 잡아두고 매질로 전재를 토색하여 계속 쓰러져 죽어가는 사태에 이르렀다. 시골 세력 있는 백성들도 소문에 따라 침해하고 업신여기며 집에서 내쫓고 재산도 약탈하여 때때로 산업을 탕패하고 고향을 떠나 돌아다니게 되니(중략) 어찌하여 얼음 관리들이 동학을 재물로 보고 정처없이 떠돌아다니게 하며 살길을 없게 하는가(目之以西學餘派 列邑守令 查櫛促囚 杖索錢財 致斃相續 鄉曲豪民 隨聞侵侮 毀家奪財 往往流離滿散 (中略) 黍之如何 列邑之官 視以貨泉 流離漂泊 生活無路)"³³⁾

33) 「各道東學儒生 議送單子」, 『韓國民衆運動史資料大系』, p. 73.

위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90년대 초반 전라도 지방을 중심으로한 동학도들의 의식의 일단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세가 약하여 대응 방책이 없던 지난 시대의 나약함을 떨치고 당당하게 동학의 정당성과 수령들의 不當誅求를 금하여 주기를 요구하고 나서는 모습에서 동학도들의 의식이 일정하게 발전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위의 인용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전라도 지방의 동학 교도들의 움직임에는 종전의 동학도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특징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 요체는 첫째 동학도들의 의식에 일정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며, 둘째는 그 의식의 변화가 동학도에 집중되는 봉건 지배층과 지방수령들의 부당한 가렴주구에 대한 저항운동, 즉 집단적인 시위운동의 형태로 구체화되어 나타났다. 바로 이러한 요소들은 60년대 이래로 동학지도부를 이끌어왔던 장로급지 도자들이 일찌기 경험하지 못했던 교단내의 새로운 양상이었으며, 이러한 새로운 양상의 주무대는 주로 호서·호남지방이 중심이 되었다. 이같은 호서·호남지방으로부터 비롯된 동학 교단내의 새로운 변화현상들이 그후 계속된 집단시위운동의 과정 속에서 급격한 질적 변화를 거쳐 보은취회 금구취회 등으로 발전하고, 그것이 바로 갑오년 전라도 땅에서의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게 된 한 요인으로 연결되기에 이른다 생각된다.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른바 대선생신원운동 단계에서의 1892년 11월의 삼례취회의 성격문제이다. 삼례취회의 성격과 의의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삼례취회의 경과를 요약하여 살펴보겠다.

1892. 10. 27 동학지도부 전라도 삼례에 都會所설치하고 각 포의 점장들은 일제히 모일 것을 지시하는 敬通(동학 교단내의 일종의 공문) 발송
 11. 1 각지로부터 온 동학점장 및 교도 천여명 삼례역에 집결
 11. 2 동학교조의 신원과 동학도에 대한 수탈중지를 요구하는 "각도 동학유생 의송단자"를 전라감사에게 제출
 11. 7 6일간이나 무소식인 전라감사에게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는 독촉 "議送狀"을 다시 제출
 11. 9 '물러가서 새사람되라'는 내용없는 전라감사의 題膏이 내려오자

- 동학교도들 흥분, 별도의 집회가 金灣에서도 이루어지기 시작함(이 시기 금구취회에 대하여는 별도의 상세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11. 11 '동학금단을 빙자한 전재 수탈을 금하라'는 전라감사의 甘結이 각 고을로 하달됨
11. 12 동학지도부 교조의 신원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과 각 포 소속 교인들의 준칙 항을 담은 敬通을 발하고 해산함
11. 19 동학지도부 중앙에 올라가 伏閣할 구체적 계획 하달시까지 교인들이 지켜야 할 사항 담은 敬通을 각 포에 발함
11. 21 전라감사 재차 '동학금단을 빙자한 토색을 금하라'는 감결하달

위의 삼례취회 경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동학지도부 및 동학교도들의 취회가 매우 조직적으로 전개되었음을 금방 알 수 있을뿐 아니라, 취회 후에 동학 지도부 스스로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삼례취회에서는 적어도 '교조의 신원'을 통한 동학의 공인과 포교의 자유를 얻지는 못했어도, 각 고을 수령들의 동학도에 대한 부당주구를 금지하라는 감영의 조치를 얻어냄으로서 상당한 성과를 얻었던 것이다. 동학지도부의 다음과 같은 평가는 삼례취회의 의의를 평가하는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 모인 것으로 사방에 좋은 평판이 퍼졌을 뿐만 아니라 충청 전라 양 감영에서 또한 관문을 하달하였으니 이제부터 지목이 없을 것이다(今番會事 非但聲聞 四方 且有兩關飭 自無指目---11월 12일 동학지도부의 敬通)"³⁴⁾

34) 上揭書, p. 80.

35) 梅泉 黃玟은 『梧下記聞』에서 東學과 亂民 즉 一般農民과의 결합은 고부민란단계부터 라고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마땅히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梧下記聞』第 1筆, 24張 참조)

위의 내용에서 보듯 삼례취회에서의 일정한 성과(동학교도들의 집단시위운동에 의하여 전라감사부터 부당주구금지 조치를 얻어낸 것)는 동학지도부와 동학교도들에게 일정한 자신감을 갖게 하였음은 물론, 일반 민중들에게도 동학에 대한 긍정적인 평판, 즉 민중들 자신의 요구를 대변해줄 수 있는 조직으로서의 동학, 또는 수령 이서 토호로부터의 부당한 수탈을 막아줄 수 있는 조직으로서의 동학의 실체를 일정하게 인정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더우기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동학지도부는 시위운동에 참여하여 가산을 탕진한 교도들과 민중들을 '유무상자'의 정신을 발휘하여 보살핌으로써 당시의 일반 민중들이 다투어 동학에 입교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필자는 바로 이 삼례취회에서부터 동학조직이 당시의 일반 민중(농민)들과 굳게 결합하기 시작함으로써³⁵⁾ 광화문 복소, 보은취회, 금구취회 등이 조직적으로 전개되기에 이르며, 이러한 일련의 대선생신원운동이 결국 전봉준을 위시한 농민혁명 지도부의 형성과 성장의 배경이 되게 하는 동시에, 삼례취회이후부터 급속히 이루어지는 동학조직과 일반 농민과의 결합 현상은 갑오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전라도에서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또 가장 치열하게 전개되는 진원지가 되게 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東學農民革命은 과연 反帝國主義的이었는가?

金正起
(서원대학교)

1. 머리말
2. 제국주의 개념의 혼란
3. 불평등조약의 총체적 침략성
4. 농민전쟁당시 反外勢 폐정개혁안
5. 맺음말

1. 머리말

1876년 강화도불평등조약 “개항”에서 1905년 ‘보호국’으로 이어지는 조선사의 궤적은 한민족이 경험했던 어느 시대보다도 격심했던 변동의 시대였음을 드러내주고 있다. 이 기간에 전개되었던 민족사는 다방면의 외세침투와 다양한 내정개혁간의 긴장된 함수관계로 점철되어 갔으나, 결국 외세의 압도적인 풍압이 미약한 개혁의 자생력을 쓸어버려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되고 말았다. 이러한 와중에서 1894년 농민전쟁이 터졌다. 이 전쟁 역시, 청세가 갑신개혁을 좌절시켰듯이 일본세가 패배시켰다. 따라서 당시 위로부터 변혁운동(갑신정변)이나 아래로부터의 변혁운동(농민전쟁) 모두 외세때문에 저지당하는 비운을 맞보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볼 때, 농민전쟁의 패배는 조선의 일본식민지화를 예견하는 불길한 척도였다.

외국세력의 침투차원에서 1894년 농민전쟁의 성격을 규명할 때, 우리는 흔히 ‘反帝(반제국주의·반제국주의 침략)투쟁’이란 용어를 서슴없이 사용해왔고 지금도 널리 사용하고 있다. 때문에 주취측이 이글의 필자에게 제시한 ‘동학농민혁명은 과연 反帝國主義的이었는가?’(필자가 방점을 침)라는 제목은 ‘... 反帝國主義였는가?’로 바뀌

어야 옳을 것 같다. 그러나 문제는 이 '반제국주의'라는 용어가 개념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검증과정을 여과하여 결정된 것인가 하는 점이다. 또한 당대 역사적 사실과 부합되는 용어인가 하는 점이다.

이 글은 우선 제국주의 개념의 혼란상을 점검해 보고 이어 불평등조약의 내용분석을 통해서 자본주의의 침탈상을 조명하고 마지막으로 1894년 농민항쟁 당시 농민들의 反外勢에 따른 弊政改革요구안을 분석하는 차례로 진행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反帝國主義'의 적합성이 밝혀질 것이다.

2. 제국주의 개념의 혼란

제국주의라는 용어만큼 찬양과 저주가 공존하는 예도 드문 것 같다. 찬양하는 쪽에서는 힘의 논리와 그 팽창을 합리화하는데, 그리고 저주하는 쪽에서는 그것들을 부정하는데 제국주의의 명칭을 서슴없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찬양하거나 저주하거나 또는 그 중간에 서서 제국주의에 대한 해석을 기도할 때 다양한 논리들이 드러나는데, 그 논리의 중심축을 경제적인 요인에 두느냐 아니면 비경제적인 요인에 두느냐에 따라 다양성이 양분된다. 나는 전자에 손을 든다. 제국주의 해석을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경제적인 요인이 유일하지는 않더라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 동인이었음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중요한 비경제적인 요인으로 흔히 제시되는 사례로 격화된 민족주의 기운이나 지정학적 또는 전략적 배려가 '왜 하필이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이른바 제국주의 국가들에서 팽배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하지 않고는 큰 의미가 없다. 또한 '왜 하필이면' 이 시기에 자본주의 국가들의 세계적인 팽창이 병렬적으로 전개되었는지가 규명되어야 한다.

개항기간(1876~1905)의 조선역사에 적용한 '제국주의 개념'에 대해서 현재까지 한국학계에서는 너무나 소홀히 취급하여 그것을 연구의 사각지대에 방치한 느낌이 든다. 다시말하면, 제국주의 개념에 대한 아무런 검증과정 없이 제국주의라는 명칭을 무책임하게 사용하여 그 개념이 혼란의 늪에 빠져버린 셈이다. 그 까닭은 대충 두가지 이유로 요약될 수 있겠다. 하나는 1876년 개항 이후 외국의 모든 침략 자체를 단지 '제국주의 침략'이라는 용어로 치부해버린 단순사고의 결과일 터이고, 나머지 하나는 당시 조선의 침략국들 이를테면 일본(1876년 불평등조약 체결), 미국(1882), 청(1882), 영국(1883), 독일(1883), 러시아(1884), 프랑스(1886), 이태리(1886), 오스트리아(1892), 벨지움(1901), 덴마크(1902)의 상이한 자본주의 발전단계들을 무시하고 모두 제국주의 단계로 동일시한 억지논리의 결과이리라. 그러면 두가지 이유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첫번째 이유는 Schumpeter, Joseph Alois(1883~1950)류의 심정적이고도 초시대적인 제국주의 개념에 뿌리를 둔 것이다. 슈페터는 제국주의를 "국가의 무제한적이고 강제적인 팽창을 추진하는 맹목적인 성향"이라고 정의했으며 이러한 충동적 성향은 "격세유전적으로 돌출"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따라서 제국주의는 고대사회에서나 현대사회에서나 그리고 동양이나 서양을 막론하고 존재한다는 것이다. 곧 제국주의의 초시대적이며 초공간적인 개념이다. 이 개념을 한국사에 적용할 때 고구려의 팽창이나 임진왜란까지도 '고구려의 제국주의 침략',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으로 규정해서 쓰이어야 하는 생소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문제는 **두번째 이유**이다. 이것은 Lenin(1870~1924)류의 경제적인 요인에 제국주의 개념의 뿌리를 내린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다. 개항기 조선에 대한 침략국들의 다양한 경제발전 단계를 간단히 제국주의 단계로 치부해버린 그 근거가 분명히 슈페터가 아니라면 바로 레닌의 논리일 것이라는 추측이다. 레닌의 제국주의는 독점제와 금융자본의 지배가 확립되고 자본수출이 매우 큰 중요성을 획득하여 대규모 국제적인 트러스트 간에 세계분할이 시작되고 자본주의 열강들 간에 지구상의 모든 영토에 대한 분할이 완료된 상태에 놓여있는

자본주의이다. 즉 독점자본주의이다. 그리고 이 독점자본주의는 1870년대에 형성되기 시작해서 20세기 초엽에 확립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논리를 가지고 개항기(1876~1905) 조선의 외세침략을 재단하는 척도로 사용할 때 이 논리의 기능은 상실된다. 왜냐하면 당시 조선을 향해서 침략을 경쟁적으로 선도한 1894년 농민전쟁 이전의 淸과 일본, 그리고 이후부터 침략을 주도한 일본과 러시아에서 독점자본주의 확립은 커녕 그 형성조차도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선침략의 후진대열에 포진하고 있었던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는 독점자본주의의 형성단계에 진입했거나 진입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 국가의 조선에 대한 침략농도는 선도대열국(淸, 일본, 러시아)에 비해 극도로 미미하였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개항기 조선의 외세침략에 대한 레닌이론의 터무니없는 오용의 사례를 발견하게 된다.

현재 한국학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제국주의'의 대표적인 사례 4가지를 보자.

① 실학의 발전이 근대문화의 성장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조선 사회는 개항을 맞았다. 이로부터 제국주의 세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마침내 청·일파 러·일 간의 제국주의 전쟁의 결과로 대한제국은 붕괴되어 일본의 식민지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현재 국정교과서인 『고등학교 국사』, 60쪽)

② 1876년 강화도조약은 한국의 근대적 개항의 여러 특징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 개항은 한국사회의 내재적 발전의 요구에 의하여 그 계기가 주어지지 못하고 제국주의 열강, 특히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적 요구에 의하여 그 계기가 주어졌다. . . . 제국주의시대의 기본적인 특징은 자본 수출에 의하여 상징된다. (韓國史研究會편, 『韓國近代社會와 帝國主義』, 195쪽과 198쪽)

③ 오는 1994년은 우리나라 근대역사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온 '1894년 농민전쟁'은 안으로 봉건적 억압을 청산하고, 밖으로는 제국주의 침략을 물리침으로써 근대사회를 이룩하려는 일대 혁명운동이었다. . . . 본 공동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상품유통경제의 변동을 제국주의의 경제적 침탈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하고, 이를 농민전쟁의 반제국주의 투쟁의 경제적 기초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한국역사연구회 지음, 『1894년 농민전쟁 연구 1』, 7쪽, 18쪽)

④ 排外意識 또는 反帝國主義 차원에서 1894년 농민전쟁의 성격을 규명할 때 우리는 반일의식의 편향성 속으로 침몰되어 배외의식은 곧 반일의식으로 치부해버렸다. (『한국사연구 39』, 101쪽)

① ② ③ ④를 종합해보면, 조선의 제국주의 침략은 1876년 개항과 동시에 시작되었으며 1894년 청일전쟁 역시 제국주의 전쟁이라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1894년 외세침략에 대한 농민의 저항 역시 反帝國主義 "반제" 투쟁이라는 것이다. 물론 틀린 내용이다. 앞에서 말했다시피, 당시 청과 일본은 제국주의 국가가 아니었다는 사실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열심히 외어온 '틀린 내용'을 감박해서 틀렸다고 써넣은 학생이 대학입시에서 낙방하는 이 역설의 희생사례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3. 불평등조약의 총체적 침략성

여기에서 '불평등조약'이란, 朝美修好通商條約이라든가 英淸修好通商條約, 또는 日美和親修約이라 할 때 修好通商(Peace, Friendship And Commerce) 또는 和親(Peace And Friendship)이라는 미명의 허울로 침략의 본질을 은폐하려는 그 조약

(Treaty)을 일컫는다. 또 '총체적 침략성'이란, 불평등조약의 내용을 경제침탈만으로 규정해버리는 단순시각으로부터 벗어나서, 군사폭력을 바탕으로 경제침탈·문화침투가 자행되며 이들 과정에서 약소국의 주권이 일부분 또는 상당부분 침해당하는 그야말로 전방위의 침략을 지칭한다. 따라서 약소국을 식민지나 반식민지로 만드는 여정의 첫단계가 불평등조약의 체결이다.

19세기 불평등조약의 유행은 영국 산업자본의 세계전개에서 시작되었다. 다시말하면, 영국이 자국의 공업제품을 전세계로 수출할 때, 이때 약소국가에서 영국의 제반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 불평등조약이 창출되었다. 영국측에서 볼 때, 이것은 자유무역의 통상조약이었으나 약소국에서 볼 때는 자유무역의 침략조항이었다. 미국, 독일, 프랑스가 영국을 본받아 불평등조약의 체결 강요국으로 등장하였고, 심지어 이들의 불평등조약망에 걸려든 일본과 청까지도 이들을 본받아 - 산업자본의 침략조항을 본받아 - 조선에 강요하기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1876년 강화도 불평등조약을 계기로 동아시아에서 불평등조약망의 세계적인 설치의 일단락을 지은 셈이다.

영. 1846
프. 1854

조약의 침략성은 그 체결과정에서 드러나지만(포함정책), 조약을 구성하는 내용에서 더욱 뚜렷해진다. 약소국가에 적용된 불평등조약의 일반적인 내용물은 다음과 같다. ① 개항장 개설권·조계설치권, ② 영사재판권, ③ 관세협정권, ④ 내지통상권, ⑤ 연안무역권, ⑥ 연안해운권·하천운항권, ⑦ 화폐유통권, ⑧ 군함의 연안순찰권"연안항해권", ⑨ 기독교 포교권, ⑩ 최혜국민대우권(최혜국조관 most-favoured-nation clause) 따위. 군사폭력 조항은 ⑧이며, 문화침투(약소국의 문화파괴) 조항은 ⑨이고, 경제침탈 조항은 ⑩을 제외한 모두이다. ⑩은 말하자면 즐거운 사냥터에 참가할 수 있는 공동회원권이다. 조인된 불평등조약은 군사폭력장치 ⑨를 바탕으로 해서 대부분 경제침탈과 일부 문화침투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 기능의 수행과정에서 또는 폭력·침탈·침투의 조항 자체가 약소국의 주권을 부분적으로나 아니면 상당히 침해하는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따라서 불평등조약은 조문의 문면에 드러난 군사폭력·경제침탈·문화침투와 그 배면에 감추어진 정치간섭까지 아우르고 있다. 그야말로 총체적 침략성이 농축되어 있는 문서이다. 뿐만 아니라 약소국을 식민지화하려는 문서이기도 하다. 이상을 종합하건대, 이 불평등조약의 내용은 자본주의 열강이 약소국을 야만국으로 규정해버리고는 '이 야만국가들'을 그야말로 야만적으로 수탈하고 파괴하였다. 문명국가의 야만적인 침략정책이었다. 일본이 이것을 본받아서 1876년에 조선에 적용하였고, 청은 6년뒤 자국에서의 뼈저린 경험을 한 술 더 떠서 조선에 확대 적용하였으며 영국은 1883년 불평등조약을 완벽하게 정착시켰다. 산업자본의 침투체제가 정비된 것이다. 일본이 ⑩에 의해 이 체제를 균점해갔고 청 역시 못이기는척 균점해갔다.

1894년 농민전쟁은 국내외의 모순이 결합되어 터진 민족운동의 한 형태였다. 불평등조약을 통해서 양 모순을 확대 상승시켜 농민전쟁을 폭발시킨 하나의 뇌관이었다. 따라서 자본주의·제국주의 침략과 민족의 저항을 동시에 조명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또는 제국주의 침략 - 무역·이권 등의 경제침탈 - 유통·생산구조의 재편 - 계급구성의 변동 - 사회·경제구조의 재편 - 민족운동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인과관계의 전체상을 포괄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거시적인 연구의 시야가 필요하다. 물론 농민전쟁도 그 예외가 아니다. 때문에 반외세 차원에서 농민운동의 민족운동을 파악하려 할 때, 불평등조약을 통한 외세침투의 추적이 필연적인 첫 과제이다.

4. 농민전쟁시 反外勢 폐정개혁안

여기서 '弊政改革案'은 全州和約(1894. 6. 10)때의 "12개조 폐정개혁"에서 따온 것이지만, 농민전쟁 당시 여러 지역에서 발표된 요구안들을 총칭한 것이다. 이 폐정개혁안의 내용은 농민들의 한과 기대가 뒤섞인 욕구의 농축된 표출물들이었다. 고로

이 내용의 분석은 농민전쟁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최선의 자료이다. 『韓國通史』에 소개된 6개조 폐정개혁요구안, 『日本公使館記錄』의 9개 요구안, 『大韓季年史』의 14개 요구안, 『日淸戰爭實記』의 14개 요구안, 『續陰晴史』의 24개 요구안, 『東匪討錄』의 23개 요구안, 『東學史』의 12개 요구안을 합하면 모두 102개가 된다. 이 가운데 서로 중복되는 내용을 줄이면 25개의 폐정개혁요구안이 남게 된다. 이것은 흥선대원군의 정계복귀를 희망하는 1개안, 동학교도의 복권을 기대하는 1개안, 반외세를 표방하는 5개안 그리고 반봉건을 표방하는 18개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의 자료는 반외세를 표방하고 있는 5개 폐정개혁요구안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 1) ① 他國潛商之峻價貿米也
- ② 各浦口私貿米嚴禁事
- ③ 大同上納前 各浦口潛商貿米禁斷
- ④ 各浦口貿米商 一併禁斷事
- ⑤ 各浦港潛商貿米 一併禁斷事
- 2) 各國人商賈 在各港口買賣 勿入都城設市 勿出各處任意行商事
- 3) 輪船上納以後 每結加磨鍊米 至於三四斗之多 卽爲革能事
- 4) ① 電報多弊民間 撤能事
- ② 電報局爲弊民間最大 革能事
- 5) ○파 奸通하는 자는 嚴懲할 事(○=倭)

①은 불평등조약의 연안무역권·연안해운권과 직결된 것으로, 일청 양국 밀수상인(潛商·私貿)들이 조선의 각 포구(대부분 미개항장)에서 쌀을 높은 가격(峻價)으로 구입하여 주로 일본에 때로는 청에 유통시키는 것을 통박하는 농민들의 요구였다. 각 지역에서 폐정개혁안이 발표될 때마다 ①~②의 요구가 반드시 끼어 있는 것으로 보아, 농민의 궁핍화를 가속시키는 또 하나의 주요원인임을 담박에 알 수 있다. 일·청 양국 상인에 의한 쌀의 대량매입이 쌀값을 폭등시키고 이어 연쇄적으로 다른 물가를 상승시키는 주범이었기 때문이다. ③이 쌀값 상승 문제를 자세히 알려주고 있다. 즉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의 각 포구로 세미(稅米)운송차 모여드는 大同米까지 양국 상인의 매입대상이 되어서, 쌀값이 폭등하고 매입량의 상당부분이 농민에게 다시 부담되는 악순환의 상황을 압축하여 설명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당시의 쌀은 화폐기능까지 분담하고 있어서 농민들의 경제생활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외국상인과 결탁하여 쌀무역에 종사하는 조선의 미곡상인은 상업자본을 축적해가고 있었다. 이렇게 하여 일본으로 빠져나간 쌀은 일본의 신흥공업지대인 大阪과 神戸의 산업노동자들에게 긴요한 식량이 되었다. 일본의 면방직공업이 선도하는 산업혁명이 1886년 경부터 형성되어감에 따라 조선쌀의 매입량은 더욱 늘어갔다. 이런 의미에서 일본 산업자본의 형성은 조선농민의 저항을 유발시킨 한 요인이었다.

②는 불평등조약의 내지통상권(內地通商權)과 직결된 것으로, 일상·청상·양상이나를 막론하고 각국 상인들은 항구인 개항장에서만 장사할 노릇이지 都城 "서울"에 들어가 상점을 벌리지 말고 전국의 장터에도 멋대로 출몰하여 장사하지 말라는 농민이나 소상공인들의 항변이었다. 수도가 외상에게 개방된 나라는 동아시아 삼국 중 조선 뿐이고 內地(수도를 제외한 전국시장)가 개방되지 않은 나라는 일본 뿐이었다. 조선은 그야말로 '외국상인의 천국'이었다. 1)과 2)가 서로 맞물려 외국상인의 조선침투

는 개항장 - 지방 - 서울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단일유통권을 조성함으로써 조선의 기존 유통구조를 재편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외국상인에 대한 특히 청상·일상에 대한 조선상인의 배격운동이 전국각지에서 지속되어 오다가 1894년 농민전쟁으로 승화되었다. 서양의 공업제품을 주로 중개무역하는 청상과 서양의 공업제품은 물론 자국의 공업제품을 팔러 다니던 일상이 공격목표가 되었다. 다시말하면, 자본주의 공산품과 이 제품의 공급을 거의 독점하면서 막대한 이득을 건우고 있었던 청상·일상이 그 공격목표였다. 결국 자본주의 침략에 대한 저항이라 할 수 있겠다. 좀 더 시야를 넓혀보면, 2)에서 우리는 당대 민중의 너리에 反日本·反中國·反西洋意識의 동시 병존구조가 실상으로 각인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3)은 불평등조약의 연안해운권과 직결된 것으로, 전에는 국내범선이 세미운송을 전담했으나 외국에서 수입했거나 고용한 운선이 그 업무를 맡고부터는 운송잡세조로 매결당 농민이 마련해야 할 부담액이 석되 또는 턱되나 되었다는 농민들의 불평이다. 1886년부터 1894년까지 조선정부는 적어도 8척의 기선 "운선"(朝陽號·海龍號·廣濟號·蒼龍號·濟江號·利運號·顯益號·漢陽號)을 구입하여 貢米 "세곡·세미"와 화물이나 여객을 운송하였으며, 1885년부터 1894년까지 25척의 외국운선을 고용하여 세곡을 운송하였다. 외국운선의 고용기간은 대체로 1년 미만이었고 기선을 빌려준 나라는 주로 일본이었으며, 1885년부터 3년간, 독일이 차관을 제공한 댓가로 운송을 거의 독점하다시피한 일도 있었다. 고용운선과 도입운선이 세미운송을 거의 독점하게 되자, 기존의 전통적인 해운업자(地土船·京江船)가 몰락할 운명에 처하게 되었으며 輪船船價米가 증액되고 輪船雜稅와 乾船價가 신설되어(운선 이전 세액보다 거의 1.5~2.5배 증액) 농민의 경제생활은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종래의 貢米는, 가령 1백씩 상납하여 오던 것이 근래에 이르러 1백반씩 늘게 된 것은 이것이 필경 곡미운반에도 증기선을 사용하고 혹은 여러 종류의 器械를 구입하는 등 冗費(용비)가 많기 때문에 半倍씩 增課를 보게된 것이라 하여 汽船使用 器械購入의 일에는 크게 不服을 呼訴하고 있다. (1894년 「日本公使館記錄」 「全羅道民擾報告」京 第 24號)

철도·전신·기선 따위는 당시 자본주의의 상징이었다. 유색인종과 일부 백인에게 이것들은 경이의 대상이었으나, 이내 증오의 대상으로 전락되고 말았다. 기선의 사용과 기계구입에 대한 농민의 반발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또한 反資本主義侵略과 함께 反封建·反開化의 혼재현상도 위의 자료에서 엿보게 된다.

4)는 電信 또는 전보국이 민간에게 최대의 피해가 되니 혁파해버리라는 농민의 항의였다. 왜 전신과 전보국이 농민에게 "多弊"가 되고 "爲弊最大"가 되었을까. 西路전선(인천 - 서울 - 의주)은 1885년 10월에, 南路전선(서울 - 공주 - 전주 - 장수 - 거창 - 대구 - 부산)은 1888년 6월에, 北路전선(서울 - 춘천 - 원산)은 1891년 6월에, 그리고 淸州지선(공주 - 청주)은 1889년 4월에 준공되었다. 北京으로 연결되는 서로전선만을 중국이 직접 장악했고, 나머지 3개노선은 漢城電報總局(華電局)의 형식적 지배를 받는 朝鮮電報總局이 직접 관할하고 있었다. 전선은 가설과 동시에 민의 노동력을 거의 강제로 동원하였다. 전봇대를 베어 오고 전선줄을 잇는 작업 말고도 가설 후에는 비 바람에 쓰러지고 끊어진 전선줄과 전봇대를 새로 잇거나 세워야 했고 만일의 절단에 대비해서 감시하거나 보호하는 임무가 구역별로 책정되기도 했다. 어디 그 뿐인가. 전선가설 중의 전선경비가 지역단위로 배당되었고 가설 후에도 전선유지비가 電信雜稅化되어 농민을 괴롭히고 있었다. 이러한 노동력의 강제동원과 전선경비나 전선유지비의 강제징수는 4개 노선이 지나가는 전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자행되는 현상이었다. 특히 서로전선의 경우, 淸電局 관리의 횡포가 민의 분노를 더더욱 자극하고 있었다. 청일전쟁이 터져 조선의 각지에 일본의 군용전선이 가설될 때도 친일파 정부는 노동력의 강제동원을 서슴지 않았다. 전 전선 그리고 일본의 군용전선에 대한 절단행위가 계속되었다. 마침내 터진 동학농민전쟁은 전 전신을 마비시키기에 이르렀

다. 바로 여기에서도 우리는 반침략 반봉건의 혼재현상을 목격하게 된다.

5)는 조선농민의 반일의식을 집약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반일의 흐름은 한방울도 새지않고 조선민중의 가슴으로 흘러들고 있었다. 반일의식이 넓고 질게 퍼져 나가고 있다는 사실은 報恩 취회(1893년 4월 25일~ 5월 14일) 당시 “斥倭洋倡義”라는 깃발에서, 白山 기포 당시(1894년 4월 26일) “逐滅倭夷澄 清聖道”라는 기치에서 그리고 全州和約 당시(1894. 6. 12) “倭와 奸通하는 者는 엄징할 것”이라는 요구안에서 확인된다. 이러한 흐름의 일관성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조선에서 쌀을 빼가고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며 일본운선으로 세곡을 수송하고 해저전선이나 군용전선을 가설하는 따위의 과정에서 유지하게 된 것이다. 달리 말하여, 일본자본주의의 침략과정에서 그 일관성이 유지된 것이다. 따라서 조선민중의 일본에 대한 저항은 일본민족주의의 침략에 대한 저항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5. 맺음말

우리는 지금까지 학계에서 쓰여지고 있는 제국주의 개념의 혼란상을 조명해봤고 뒤이어 조선민중에 대한 침탈과 착취가 대부분 당대 자본주의의 서구열강이 상용하는 불평등조약의 틀과 직결되어 있음도 밝혀냈으며, 마지막으로 1894년 농민항쟁 당시 반외세라고 여겨지는 농민들의 폐정개혁안을 분석함으로써 그 성격을 파악해보기도 했다. 요컨대, 반외세 측면에서 1894년 농민전쟁의 성격을 규명할 때 ‘반제국주의’가 아니라 ‘反資本主義侵略’(줄여서 反資侵) 투쟁이라는 것이 이글의 결론이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 ① 당시 일본과 청의 경제발전 수준은 제국주의 단계가 아니었다. 일본은 1886년 경에 산업자본주의가 형성되어 1907년에 확립되었으며 청은 1870년대에 이어 1880년대에도 官督商辦 官商合辦의 형식을 띤 근대기업을 설립함으로써 산업자본주의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 ② 불평등조약의 총체적 침략성이 조선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 ③ 반외세 폐정개혁안이 자본주의의 침략성격과 직결되어 있다.

이글의 필자는 1880년대부터 1894년까지 농민들의 뇌리에 반일본·반중국·반서양 의식의 병존구조가 실상으로 각인되어 있음을 천명해왔다. 그런데 문제는 왜 농민전쟁 당시 반중의식이 왜 반일의식의 뒷면으로 움츠러들었는가하는 점이다. ‘斥倭·斥洋’의 슬로건 사이에 왜 ‘斥華’의 깃발이 빠졌느냐이다. 또 하나는 반서양의식의 실체를 복원하는 문제이다. 정부의 비호를 받은 기독교와 배척을 받는 동학의 대립이 그 문제해결의 한가지 열쇠일 수 있겠다. 척화의 부재를 설명하고 ‘反洋夷’의 실체를 복원하는 문제가 우리들 앞에 다가서고 있다.

執綱所の 成立과 改革의 性格

愼 鏞 廈
(서울대학교)

一. 머리말 : 執綱所の 重要性

동학농민혁명운동(또는 갑오농민전쟁)의 제3단계에서 호남일대에 설치되었던 농민들의 執綱所는 동학농민들이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農民統治를 실행한 농민의 기관이었다는 면에서 매우 특이하고 획기적인 것이었다. 또한 집강소의 농민통치가 실시한 弊政改革의 내용과 성격 여하에 따라서는 동학농민혁명운동(갑오농민전쟁)의 사회적 역사적 성격마저도 좌우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동학농민들의 執綱所는 반드시 심층에서 밝히지 않으면 안될 한국근대사의 매우 중요한 연구과제라고 할 수 있다.

二. 執綱所の 成立

그러면 집강소의 기원은 어디서 나와 성립된 것일까?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제1차 농민전쟁 때의 동학농민군 점령지에서의 「執綱」의 의미이다. 全瑋準, 孫化中, 金開男 등을 지도자로 한 동학농민들은 1894년 3월 20일(일설 3월 21일) 茂長에서 약 4천명의 동학농민군을 편성하여 제1차 농민전쟁에 봉기하였다. 봉기한 동학농민군은 그날 밤부터 이튿날 새벽에 걸쳐 먼저 古阜郡衙를 점령하고 감옥에 있는 고부민란 때의 농민들(전봉준의 동지들)을 석방하고 邑弊民瘼을 교정하는 일을 한 다음, 3월 23일 白山에서 농민군을 확대 개편한 후, 3월 27일 경부터 서울을 최종 목적지로 하여 우선 전라도 수도인 全州를 향하여 大進軍을 시작하였다. 동학농민군은 그후 전투로서는 고부 黃土峴전투와 장성 黃龍村 전투에서 승리했고 고을로서는 泰仁, 扶安, 井邑, 興德, 茂長, 高敞, 金溝, 院坪, 靈光, 咸平, 務安, (長

집강소는 동학농민군이
고부군청에 항시함
이러한 기원은 일본서도
이러한 기원은 일본서도
이러한 기원은 일본서도
이러한 기원은 일본서도
이러한 기원은 일본서도

→ 5인회
「장안회」 리은
「흥안회」 리은
「일신회」 리은

7. 2원

興) 長城 등을 비롯해서 음력 4월 27일 全州에 입성할 때까지 20여개 郡縣을 점령하였다. 그런데 동학농민군은 이 점령한 郡縣들의 郡衙에서 점령 즉시 농민들의 소망에 따라 단기간일지라도 邑弊民瘼을 교정하는 사업을 했으며, 이 사업의 책임자로 동학농민군(총대장 전봉준)은 接主를 차출하여 <執綱>에 임명해서 이 책임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梧下記聞』은 제1차 농민전쟁을 설명한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濔準 등이 이미 熾盛하자 郡縣이 모두 도적(동학농민군... 인용자)에게 속박을 받았는데, 도적들은 또한 每邑에 就治設接하여 이를 大都所라 부르고, 한 사람의 接主를 차출하여 太守의 일을 행하도록 하고 이를 執綱이라고 불렀는데 官의 有無를 논하지 아니하였다. 都所는 또한 大義所라고도 칭하고, 그 道路에 있는 것은 行軍義所라고도 칭하였다.”¹⁾

1) 黃玿, 『梧下記聞』, 第1筆의 pp. 105~106.

즉, 동학농민군은 점령하는 每邑에 統治를 담당하기 위한 接을 설치하고 한 사람의 接主를 뽑아 <太守>(=守令·守宰)의 일을 보게 하면서 이를 <執綱>이라고 불렀으며, 동학농민군의 <執綱>의 임명은 그 고을의 守宰가 도망하고 없거나 또는 남아있거나를 불문하고 그에 관계없이 동학농민군이 점령지에 일방적으로 임명하여 邑弊民瘼을 고치고 <就治>하도록 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때에 『執綱』은 임명되었지만 그의 읍폐민막 교정의 농민통치를 담당하는 기구로서 <執綱所>라는 통일된 명칭은 없었다. 그 대신 執綱이 점령지의 임시 통치를 담당하는 곳을 大都所, 都所, 大義所, 行軍義所 등으로 불렀다.

제1차 농민전쟁 시기의 <執綱>의 점령지에서의 邑弊民瘼교정의 통치 내용은 자료가 없어서 그 상세한 것을 알 수 없다. 그러나 3월 21일 부터 4일간 동학농민군이 古阜를 점령하여 단행한 다음과 같은 읍폐민막의 교정활동에서 그 사례를 알아볼 수 있다.²⁾

2) 吳知泳, 『東學史』(刊行本), p. 111 참조

- ① 貪官汚吏의 처벌 : 관속 중에서 安敷使 및 郡守에게 부하뇌동하고 탐학한 자 수명을 색출하여 처벌.
- ② 軍器庫를 열어 銃槍과 彈藥을 수습해서 동학농민군의 武器를 보충 강화.
- ③ 동학농민군 지원자의 증모와 농민군 병력의 강화.
- ④ 읍내에 있는 靑竹을 베어서 竹槍을 만들어 銃없는 농민을 무장시킴.
- ⑤ 獄門을 열어 고부민란으로 투옥된 농민들과 기타 억울하게 투옥되어 있는 농민들을 석방.
- ⑥ 식량창고를 열어 貧民을 구휼.
- ⑦ 古阜邑의 弊政의 대략의 교정.

제1차 농민전쟁 시기에 동학농민군의 점령지역에서 읍폐민막의 폐정개혁을 담당한 <執綱>에는 반드시 東學의 六任制度의 執綱이 임명된 것은 아니었다. 黃玿은 오히려 <接主> 중에서 <執綱>을 임명하였다고 기록하였다.³⁾ 당시 전봉준의 산하에는 다수의 東學接主들이 將領으로 참가했고, 점령지는 일시에 모두 점령된 것이 아니라 한 郡으로부터 다른 郡으로 차례로 점령되었으며, 邑弊民瘼의 교정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동학농민군 지도부는 六任制度의 接主 산하의 執綱(都執 및 執綱)으로부터 한 지위를 格上시켜서 주로 <接主들> 중에서 <執綱>을 임명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3) 『梧下記聞』, 第1筆의 p. 105 참조

필자는 제1차 농민전쟁 기간에 동학농민군의 점령지역에서 邑弊民瘼의 교정을 위해 전봉준이 接主들 중에서 임명한 <執綱>과 그 집무처인 都所(또는 大義所, 行軍義所)가 <執綱所> 성립의 주된 기원이라고 관찰하고 있다.

다음으로 주목할 것은 全州和約 성립때에 전라관찰사 金鶴鎭이 허용한 面里수준의 執綱이다. 그후 김학진은 郡縣수준의 執綱所를 공인했는데, 이 때에도 그는 동학농민군의 執綱所를 종래의 <面·里執綱>을 「郡·縣」수준으로 격상시키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당시 조선왕조의 농촌사회에서는 面·里執綱이 존재했는데, 이것은 鄉任의 일종으로서 良人上層의 지식있는 富農을 임명하여 面任의 행정에 자문을 합과 동시에

주민 風敎의 紀綱을 세우는데 협조하도록 한 직임이었다. 이러한 성격의 執綱은 面·里에는 두었으나 郡·縣에는 두지 않았었다. 전라관찰사 김학진은 동학농민군과 全州和約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농민군들에게 농민들이 원하는 억울함을 풀어주고 폐정 개혁을 단행할 것을 약속하면서 요구사항을 제출토록 했으며, 동학농민군은 金鶴鎭에게 13개 조항의 폐정개혁 요구사항을 제출하였다.⁴⁾ 동학농민군은 양호순변사 李元會에게도 14개조의 폐정개혁 요구사항을 제출했으며, 이어서 관변측에 추가로 24개조의 폐정개혁 요구사항을 제출하였다.⁵⁾

김학진은 동학농민군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실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것이 반드시 실행된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종래 관변측은 民亂이나 농민전쟁에서의 농민들의 폐정개혁 요구에 대하여 기만적으로 그 실행을 약속해 놓고 일단 농민들이 해산하면 이를 실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폐정개혁을 요구한 농민들을 체포하여 투옥하고 박해하는 것이 일쑤였다. 동학농민군측의 이러한 의구심을 풀어주기 위하여 金鶴鎭이 동학농민군에게 약속한 것이 〈面·里執綱〉에 종래의 부농이 아니라 東學軍을 임명하여 面任에게 자문하고 폐정개혁 실행을 지켜보도록 한 것이었다. 그래서 全州和約은 용이하게 성립될 수 있었다. 김학진이 동학농민군에게 〈面·里執綱〉의 임명을 허용한 사실은 全州和約 성립 후 6월 초3일자로 동학농민군의 〈발호〉에 항의해서 보낸 효유문에 「너희들이 거주하는 面里에 각각 執綱을 설치하였고 너희들의 억울함의 말할만한 것이 있으면 모두 該執綱을 경유하여 監營에 呈訴해서 公決을 기다리라」⁶⁾고 한 곳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동학농민군들은 全州和約 성립후 全州城을 官軍에게 비워주고 자진해산의 형식을 취하여 자기 고을에 돌아가자 武裝을 풀지 않고 그대로 東學農民軍으로 주둔하면서 자기의 출신 고을에서 〈面·里執綱〉과 〈郡·縣執綱〉을 임명하였다. 왜냐하면 당시 지방행정의 핵심적 기본단위는 郡縣이었으므로 동학농민들이 원하는 폐정개혁을 단행하거나 그 단행을 감독하려면 〈面·里執綱〉으로서는 불가능하고 반드시 〈郡·縣執綱〉을 임명해야 비로소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동학농민군은 全州城을 비워주고 자기 고을로 돌아가자 전라관찰사 김학진이 허용한 面里執綱을 임명한 것이 아니라, 제1차 농민전쟁 때의 동학농민군 점령지에서의 邑弊民瘼교정을 위한 〈執綱〉임명의 전통과 방식을 계승해서 郡縣執綱을 임명해 나간 것이었다.

동학농민들의 郡縣執綱은 전라관찰사 김학진으로서는 그가 승인하지 않은 불법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全州和約 직후에는 郡縣執綱이 임명되어 나갔으나 그 정무처는 執綱所라는 통일된 명칭을 갖지 못하고 〈都所〉 등으로 호칭되고 있었던 것으로 관찰된다.

전봉준은 全州和約 직후 음력 5월에 金溝, 金提, 泰仁, 長城, 潭陽, 淳昌, 玉果, 南原, 昌平, 順天, 雲峰... 등 列邑을 순시하였다.⁷⁾ 이 때 전봉준은 동학농민들이 郡縣執綱을 임명하여 폐정개혁을 단행해 나가는 것을 순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金允植은 음력 5월말 경의 호남의 형편을 6월 9일자 일기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湖南의 匪徒들은 아직도 곳곳에 屯聚하여 지나는 곳에 추호도 (백성들) 침범하는 일이 없으며 백성들이 冤訴하는 것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判決해서 도리어 民心을 얻고 있다고 한다.”⁸⁾

『梧下記聞』은 5월분의 기록에서 동학농민들이 각군에 〈執綱〉을 둔 사실을 기록하여 설명하였다. 이 자료에 의하면 전봉준은 그 후 列邑을 순시하다가 南原에 도착하자 6월 15일 경에 金開男과 함께 동학농민들의 南原大會를 개최하였다. 이 대회에서 전봉준은 各邑의 東學包에 명령을 전하여 각읍에 都所(執綱所)를 설치해서 그 親黨을 세워 守衛의 일을 행하도록 명령했으며, 이 때부터 道內의 軍馬와 錢穀이 모두 동학농민군의 소유가 되었고 사람들은 그들이 단순한 〈亂民〉이 아니라 이미 〈逆謀〉가 성립되

4) 鄭喬, “국사편찬위원회편”, 上卷, p. 86 참조

5) 金允植, 『續陰晴史』(“국사편찬위원회편”, 上卷, pp. 322~325 참조

6) 『梧下記聞』, 第2筆의 p. 42 「兩等 所居面里 各置執綱 如有兩等冤鬱之可言者 該 執綱具由訴營 以待公決事」참조

면·里 → 面任 → 守令
 郡縣 → 面任 → 守令

7) 『全濟準供草』 四招問目, 『東學亂記錄』(국사편찬위원회편), 하권, p. 551 및 『梧下記聞』, 第2筆의 p. 40 참조

8) 『續陰晴史』, 상권, p. 318.

7월 15일 ?
 (대방편) 특이하게 얘기하네.
 지리강원도에서 7월 15일에
 얘기하네 6.15. 인
 <7월 15일>에 6월 15일에
 관의인 양리하네 리 지리강원
 형의 하네 하네.
 인공관제리 변어 된양하네.

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이 달 보름 간에 璿準과 開男 등은 南原에서 大會를 열었는데 모인 사람이 數萬人이었다. 璿準은 각 읍 布(包) 중에 술을 내려 邑에 都所를 설치하고 그 親黨을 세워 執綱으로 삼아서 守衛의 일을 행하도록 하였다. 이에 道内の 軍馬와 錢穀이 모두 도적들(동학농민군···인용자)의 소유가 되었으며, 사람들이 비로소 그 逆謀가 이루어졌고 亂民에 그치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⁹⁾

9) 『梧下記聞』, 第2筆의 p. 62.

동학농민들의 南原大會는 執綱所의 성립과 발전에서 획기적 중요성을 가진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는 執綱所가 郡과 面의 동학농민군의 세력 여하에 따라 散發的으로 설치되어 나가다가 이 大會에서 郡 수준의 執綱所를 전라도 53개 郡縣 모두에 빠짐없이 설치할 것이 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執綱所의 활동의 성격이 기존 지방관리의 행정에 대한 감시·감독이 아니라 <道内の 軍馬와 錢穀이 모두 동학농민군의 소유가 되었으며 사람들이 비로소 그 逆謀가 이루어졌고 亂民에 그치지 않음을 알게 된> 그러한 과감하고 혁명적인 弊政改革의 <農民統治>를 全道에 걸쳐 체계적으로 직접 실행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동학농민군 세력이 막강한 郡縣에서는 이미 그러한 혁명적 폐정개혁의 農民統治가 실행되고 있었지만, 南原大會 이후에는 동학농민 세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郡·현까지도 도내 동학농민군 전체의 강력한 지원하에 <執綱所의 農民統治>가 체계적으로 실시되게 된 것이었다.

동학농민들의 南原大會가 있는 6일후인 6월 21일(양력7월 23일)에, 서울에서는 日本軍이 조선왕궁을 포위하여 궁궐을 침범해서 조선군 왕궁수비병을 살해하고 무장해제시킨 후 국왕과 왕비를 감금하고 위협하여 정권을 교체하고, 동시에 청·일전쟁을 도발한 變亂이 있었다. 전라관찰사 金鶴鎭은 南原에 있던 全璿準을 國難을 함께 극복하고 全州를 共守하자고 全州에 초청하여 官民相和之策을 상의하고 各郡의 執綱所 설치를 공식적으로 승인하였다. 이제 執綱所의 農民統治를 전라관찰사까지도 공인하게 된 것이었다.

이 부분에 대하여 『甲午略歷』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6월에 관찰사는 全璿準 등을 監營에 請 邀하였다. 이 때에 守城軍卒들은 각각 銃鎗을 들고 좌우에 정렬하였다. 全봉준은 幟冠을 쓰고 麻衣를 입고 앙연히 들어 왔는데 조금도 기탄이 없었다. 觀察使는 官民相和之策을 相議하고 各郡에 執綱을 설치하는 것을 허가하였다.”¹⁰⁾

10) 鄭頌謨, 『甲午略歷』, 『東學亂記錄』, 상권, p. 65.

또한 『梧下記聞』은 이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그러나 金鶴鎭은 그 宣撫하러 온 것을 지키어 도리어 그들에게 依持 했으며, 서울에 亂이 있음을 듣고 鶴鎭은 軍官 宋司馬로 하여금 편지를 가지고 南原에 들어가서 璿準 등에게 말하여 國難에 同攄하기로 약속하고 (전봉준으로 하여금) 東學道人을 인솔하여 全州를 共守하도록 하였다. 대개 璿準이 밖으로 外國의 侵略의 禍를 걱정함을 나타내고 歸化를 소리내어 말한 고로 鶴鎭이 그를 불러 그 거취를 보려 한 것이다.”¹¹⁾

11) 『梧下記聞』, 第2筆의 p. 62.

이상의 고찰을 간단히 요약하면 ① 동학농민군은 제1차 농민전쟁 때 접령한 邑에서 邑弊民瘼을 교정하는 책임자로서 <執綱>을 임명했었는데 이것이 執綱所의 주된 기원이 되었고, ② 5월 7일 全州和約 때에 목계된 것은 동학농민군이 全州城을 官軍에게 내어주고 자진해산하여 각각 자기의 출신지역에 돌아가는 대신 동학농민군은 <面里執綱所>을 임명하여 관변축이 폐정개혁을 단행하는 것을 監視하기로 한 것이었는데, ③ 5월 8일부터 동학농민군은 귀향하자 무장을 풀고 농민군을 해산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무장한 채 동학농민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부는 <面里執綱>을 임명했지만 대부분은 제1차 농민전쟁 때의 동학농민군의 郡 수준의 執綱 임명의 전례에 따라 <郡縣執綱所>를 설치해 나갔으며, ④ 6월 15일 南原大會에서 동학농민들은 전라도 53개 郡縣 모두에 郡執綱所를 빠짐없이 설치하여 혁명적인 과감한 폐정개혁 정치를 직접

실행하는 農民統治의 실시를 결정하였고, ⑤ 얼마 후에 日本軍의 서울에서의 궁궐침범과 내정간섭의 變亂이 일어나자 6월 말경에 전라관찰사 金鶴鎭은 농민군 총대장 全瑋準 등을 전라감영에 초청하여 官民相和之策을 의논한 결과 전봉준측의 제의에 따라 이미 대부분 설치된 <郡執綱所>를 사후적으로 公認하여 합법화시켜 주고 동학농민군과 힘을 합하여 일본침략군으로부터 全州를 共守하기로 해서, 집강소는 성립되고 공인된 것이었다.¹²⁾

일부에서는 아직도 執綱所의 實在 여부에 회의적 견해를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梧下記聞』에 수록된 <全瑋準의 各邑 執綱所에 보내는 通文>과¹³⁾, 『隨錄』에 게재되어 있는¹⁴⁾ <茂州 執綱所에 하달된 通文>¹⁵⁾에 의해서도 집강소의 實在했음은 논쟁의 여지 없이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

三. 執綱所의 組織

동학농민혁명운동(또는 갑오농민전쟁)시기의 집강소는 다음과 같은 4개의 기관으로 조직되어 있었다.

- (1) 執綱所의 執行機關
- (2) 議事機關
- (3) 執綱所 護衛軍
- (4) 幫助機關

} 助衛軍 否?

집강소의 執行機關은 『甲午略歷』에 의하면, ① 執綱, ② 書記, ③ 省察, ④ 執事, ⑤ 童蒙으로 구성되어 있었다.¹⁶⁾

이 중에서 <執綱>은 執綱所의 총책임자이면서 동시에 執行機關의 책임자였다. 執綱은 주로 東學의 接主 중에서 임명되었다.¹⁷⁾ 그러나 한 郡에는 크고 작은 여러개의 接이 있는 경우도 있었고¹⁸⁾, 그에 따라 接主에도 大接主·首接主·接主의 위계가 있었으며, 接主가 여러명 있는 경우도 있었다.¹⁹⁾ 이러한 경우에는 가장 지위가 높은 大接主·首接主부터 차례로 그 지위에 따라 上位의 接主를 <執綱>으로 임명한 것으로 추정된다.

執綱의 사회적 의미의 役割은 무엇인가? 그것은 <東學農民이 임명한 郡守=太守=守令=邑宰>였다. 『梧下記聞』은 執綱에 「接主 한 사람을 임명하여 太守의 일을 행하게 했으며」²⁰⁾, 「都所(執綱所)를 설치하여 그 親黨을 執綱으로 삼아서 守令의 일을 행하였다」²¹⁾고 기록하였다. 또한 『梧下記聞』은 집강소의 통치에 대해서도 「오늘날 어떠한 邑의 邑事를 물론하고 (동학) 道人이 이를 主宰하고 (정부가 임명한) 官長의 결정을 기다리지 아니했다」²²⁾고 기록하였다. 『甲午略歷』에서도 執綱所가 설치된 곳에서는 「소위 邑宰는 오직 이름만 있고 行政을 할 수 없었으며 심하면 邑宰를 추방하기도 했다」²³⁾고 기록하였다. 즉 執綱이 실질적인 郡守였던 것이다.

<書記>는 집강소 농민통치의 文簿를 작성하고 정리하며, 또한 官吏의 文簿를 檢閱하고, 執綱의 秘書와 같은 역할도 수행하는 직책이었던 것으로 관찰된다.

<省察>은 집강소 농민통치에 있어서 治安과 警備를 담당하고 巡察과 監察을 담당하는 직책이었다. 집강소 농민통치의 紀律과 紀綱을 바로잡는 일도 省察의 역할이었으며, 탐관오리·불량한 양반·황포한 부호·毀道分子·불량배들을 조사하고 압송하는 것도 省察의 역할이었다.²⁴⁾ 省察의 이러한 역할 때문에 성찰은 執綱所 護衛軍과도 직접 연계되어 있었다.²⁵⁾ 알기쉽게 비유해서 말하면 省察은 <執綱所의 農民警察>인 셈이었다. 이 때문에 집강소의 實權은 執綱 다음으로 省察이 갖고 있었으며, 양반관료들은 집강 다음으로 省察을 집강소의 핵심분자로 간주하여 증오하였다.²⁶⁾ 省察은 한 집강소 안에 多數를 두었다.²⁷⁾ 省察의 수석 책임자를 都省察이라고 불렀다.²⁸⁾

<執事>는 집강소의 행정과 公事를 관리하는 行政要員이었다. 집강소 농민통치의 개혁행정 실시, 人民訴狀의 처리 등 직접적인 對民事業은 執事의 일이었다. 東學의 傳道, 동학농민군의 폐정개혁 사업에 대한 선전과 계몽 등도 執事의 직무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한 집강소는 多數의 執事가 있었다.²⁹⁾ 자료들에서 종종 나오는 <接

12) 慎鏞夏, 「甲午農民戰爭時期的 農民執綱所의 設置」, 『韓國學報』 제 41집, 1985 참조

13) 『梧下記聞』, 第2筆의 p.66의 「全瑋準이 下達한 執綱所 通文」참조

14) 盧鏞弼, 「東學農民軍의 執綱所에 대한 일고찰」, 『歷史學報』 제 133집, 1992 참조

15) 『隨錄』, p.61의 「茂朱執綱所에 下達된 通文」 참조

16) 『甲午略歷』, 『東學亂記錄』 상권, p.65 참조

17) 『梧下記聞』, 第1筆의 p.105 참조

18) 『謙山遺稿』 중의 「錦城正義錄 甲編」 참조

19) 『梧下記聞』, 第1筆의 p.104 참조

20) 『梧下記聞』, 第1筆의 p.105.

21) 『梧下記聞』, 第2筆의 p.62.

22) 『梧下記聞』, 第3筆의 p.15.

23) 『甲午略歷』, 『東學亂記錄』 상권, p.65.

24) 『甲午略歷』, 『東學亂記錄』 상권, pp.67~68 참조

25) 『梧下記聞』, 第1筆의 p.105 참조

26) 『宣諭榜文並東徒上書所志牒書』, 『東學亂記錄』, 하권, p.386 참조

27) 『甲午略歷』, 『東學亂記錄』 상권, p.67 참조

28) 『甲午略歷』, 『東學亂記錄』 상권, p.70 참조

29) 『甲午略歷』, 『東學亂記錄』 상권, p.67 참조

司)도 執事의 일종인 것으로 추정된다. 『梧下記聞』의 起包 후의 기록에 나오는 〈公事長〉이나³⁰⁾, 『甲午略歷』에 나오는 〈公事長〉은 바로 이 執事의 책임자를 가리킨 칭호라고 생각된다.³¹⁾

童蒙은 주로 靑少年으로 구성되어, 한 집강소와 다른 집강소, 또는 각 기관 사이의 傳令과 連絡을 담당하고, 집강소 간부의 호위를 담당하며, 때로는 省察의 보조적 역할도 수행하는 직책이었다. 물론 童蒙도 한 집강소에 〈多數〉가 존재하였다.³²⁾

집강소의 議事機關은 『東學史』에서 〈議事員 약간을 두었으며〉³³⁾라고 기록한 곳에서 그 존재를 알 수 있다. 집강소의 농민통치를 執綱이 단독으로 정책결정과 의사결정을 하면 獨裁로 말미암은 착오가 발생할 수 있고 農民의 意思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議事機關으로서 약간의 議事員을 두어 충분한 討論과 檢討를 거친 후에 정책과 의사를 결정하도록 해서 이를 집행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왕조 후기 - 말기에는 〈두레〉의 조직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농민조직이나 농민단체에는 民主的 議決過程이 상당히 발전해 있었는데, 집강소도 이러한 농민의 民主的 전통을 계승하여 그 지방의 實情에 밝은 농민 약간명을 〈議事員〉으로 선임해서 폐정개혁을 위한 정책결정과 의사결정에 큰 도움을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

연전에 姜昌一교수에 의해 발굴되어 소개된 자료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³⁴⁾, 전봉준은 그후 체포되어 일제경찰의 취조를 받을 때에, 서울에 입성하여 일본군을 몰아내고 간악한 관리를 쫓아낸 다음에는 「國事를 들어 한 사람의 勢力家에게 맡기는 것은 크게 弊害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몇 사람의 명사에게 協合해서 合議法에 의해 정치를 담당하게 할 생각이었다」³⁵⁾고 응답하였다. 『東京朝日新聞』은 이것을 「東學首領과 合議政治」라는 제목을 붙여 보도하였다. 전봉준의 이러한 〈合議政治〉의 구상은 執綱所 안에 議事機關을 두고 약간의 議事員을 선임해서 집강소 농민통치의 合議政治를 추구한 곳에서 실행되기 시작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執綱所 護衛軍은 각 郡의 집강소의 동학농민군 武力이었다. 『東學史』에서 「官民 간에 남은 軍器와 馬匹을 거두어 執綱所의 護衛軍을 세우고 萬一을 경계하였다」³⁶⁾고 한 곳에서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동학농민군은 全州和約 후에 각각 자기의 출신 郡에 귀향하자 武裝을 풀지 않고 그대로 농민군체제를 지속하면서 執綱所를 설치한 다음 그 집강소의 武力으로 활동하였다.³⁷⁾ 뿐만 아니라 집강소 설치 후에는 농민군을 증모하고 각 郡의 武器庫를 열어 동학농민군의 무장을 대폭 강화하였다.³⁸⁾ 특히 음력 7월 이후에 일본침략군과의 一戰이 불가피함을 감지하고 제2차 농민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한 이후에는 執綱所 護衛軍으로서의 동학농민군의 병력은 급속히 증가하여 全道에 걸쳐 약 11만 4천 5백명으로 되었다.³⁹⁾ 집강소 시기의 기록들에 나오는 〈騎砲將〉⁴⁰⁾, 〈砲士〉⁴¹⁾ 등은 모두 집강소 호위군에 관련된 직명인 것으로 보인다.

執綱所 護衛軍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할 것은 賤民身分 출신의 동학농민군 특수부대를 창설하여 집강소 호위와 농민통치의 중요한 武力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이다. 『梧下記聞』에 의하면 대접주 「孫化中은 전라우도에서 屠漢·才人·驛夫·治匠·僧徒 등 평일의 가장 賤流로서만 한 接을 별도로 설치했는데 그 사납고 용맹스러움이 누구도 대항할 수 없어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다.」⁴²⁾고 기록하였다. 손화중은 이 천민출신 동학농민군부대를 才人 중심으로 편성하고 그 統領에 高敞의 才人 洪洛官을 임명하여⁴³⁾ 자기 지휘하에 두었는데, 이 천민출신 농민군부대의 용감성과 정예무력 때문에 실제로는 집강소 시기에 전봉준부대와 김개남부대 보다 막강하다고 하였다. 또한 손화중의 이 천민출신 동학농민군부대는 제2차 농민전쟁 때에도 北上하지 않고 湖南에 그대로 주둔하여 執綱所의 農民統治를 계속 호위하는 결정적 무력으로 활동하였다.⁴⁴⁾ 南原에 집강소를 설치하여 전라좌도를 통치했던 대접주 金開男도 역시 賤民身分 출신 동학농민군부대를 편성하였다. 김개남은 도내의 倡優와 才人 1천여명을 뽑아 한개의 특수한 농민군부대를 편성했는데 그들은 死力을 다하여 충성을 바쳤다고 한다.⁴⁵⁾ 집강소의 농민통치에 의하여 身解放을 달성한 천민출신의 동학농민군부대가 가장 강력한 執綱所 護衛軍으로 활동했음을 알 수 있다.

30) 『梧下記聞』, 第1筆의 p. 105 참조

31) 『甲午略歷』, 『東學亂記錄』 상권, p. 73 참조

32) 『甲午略歷』, 『東學亂記錄』 상권, p. 67 참조

33) 『東學史』, p. 126

후지미리(미리)

34) 姜昌一, 「갑오농민전쟁 자료발굴 : 全塚準 會見記 및 取調記錄」, 『사회와 사상』, 창간호, 1988년 9월호 참조

35) 『東京朝日新聞』, 1985년 3월 6일자, 「東學首領と合議政治」.

36) 『東學史』, p. 130.

37) 『梧下記聞』, 第2筆의 p. 40 참조

38) 『梧下記聞』, 第3筆의 pp. 11~14 참조

39) 『東學史』, pp. 134 135 참조

40) 『梧下記聞』, 第1筆의 p. 105 참조

41) 『謙山遺稿』중의 「錦城正義錄 甲編」 참조

42) 『梧下記聞』, 第2筆의 p. 97.

43) 「李圭泰往復書並墓誌銘」, 『東學亂記錄』 하권, p. 467 참조

44) 『梧下記聞』, 第3筆의 p. 35 참조

45) 『梧下記聞』, 第3筆의 p. 23 참조

집강소의 幫助機關은 집강소의 종속된 종래의 官衙의 大小官吏들의 행정조직을 말하는 것이다. 「大小官吏들은 그(집강소···인용자)를 幫助하여 폐정개혁에 착수케 되었으며」⁴⁶⁾라고 한 곳에서 執綱所가 폐정개혁을 주도하여 담당하고 종래의 官衙의 官吏들은 이에 대한 幫助機關으로 전화되어 집강소의 활동에 보조적 기능을 수행한 것을 알 수 있다. 집강소 시기에 吏胥들은 동학농민군에게 완전히 투항하여 상당한 정도로 아부하였다.⁴⁷⁾ 執綱所는 이에 종래의 吏胥들을 東學에 입도 시키어 그들의 심부름꾼으로 부리었다.⁴⁸⁾ 『甲午略歷』은 「吏胥들이 모두 東學黨에 입적하여 생명을 보전했다」⁴⁹⁾고 하였다. 물론 그들이 진심으로 東學을 신봉했다기보다는 대세에 따라 保身策으로 그렇게 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결과는 이에 따라 종래의 官衙는 실질적으로 집강소에 예속된 幫助機關으로서 기능하게 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각 郡의 執綱所는 대개 公廡 즉 官廳 내에 설치되었다.⁵⁰⁾ 이 때문에 그의 조직체계와 함께 執綱所는 더욱 〈農民의 官廳〉처럼 보이었다.

郡執綱所들을 총괄하는 大都所(道執綱所)는 두 곳에 설치되어 있었다. 『梅泉野錄』에 의하면 그 하나는 全瑋準이 全州에 〈大都所〉를 설치하여 全羅右道와 전라도 전체를 지휘하고, 金開男이 南原에 〈大都所〉를 설치하여 全羅左道を 지휘하였다.⁵¹⁾ 한편 『甲午略歷』에서는 「全瑋準은 수천의 무리를 옹하고 金溝·院坪에 據하여 右道에서 호령하고, 金開男은 수만의 무리를 옹하여 南原城에 據하면서 左道를 統轄하였다. 그 나머지 金德明·孫化中·崔景善의 도배들도 각각 一方에 據하였다」⁵²⁾고 기록하였다. 이 기록에 의하면 全瑋準이 金溝·院坪에 大都所를 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것은 집강소 설치의 公認받기 이전의 初期와 제2차 농민전쟁봉기 무렵의 末期의 일이고, 전라관찰사 김학진의 公認을 받은 이후에는 全瑋準은 〈全州〉에 大都所를 두고 全道の 농민통치를 지휘한 것이 틀림없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전라관찰사의 軍司馬로서 현장을 경험한 崔永年의 『東徒問辨』에서도 全瑋準이 전라관찰사 金鶴鎭의 政務를 보던 장소인 宣化堂을 양보받아 여기서 집무하면서 김학진까지도 전봉준을 경유해서 매사를 행하였다고 기록하였다.⁵³⁾ 또한 『梧下記聞』은 全瑋準이 全州에서 全道の 統治를 〈專制〉하고 관찰사 김학진은 전봉준의 〈꼭두각시〉와 같이 되어 있었던 형편을 다음과 같이 기록 하였다.

“瑋準은 이에 鶴鎭을 (연구리에)끼고 이를 기화로 하여 一도를 專制하였다. 학진의 작우는 모두 그(봉준)의 黨與이었다. 비밀리에 도적들(동학농민군···인용자)을 부른 것이 표면상의 명목은 守城이었지만 사실은 圍城이었다. 학진은 傀儡과 같이 되어 사람을 부림과 起居와 일거수 일투족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오직 文書를 奉行할 뿐이었다. 사람들이 그를 道人監司라고 불렀다.”⁵⁴⁾

위정척사와 儒生 黃玆은 全瑋準의 지휘를 받는 이러한 처지의 전라관찰사 김학진을 다음과 같이 규탄하였다.

“鶴鎭이 미치고 닳을 잃지 않았으면 어찌 이런 것이 입에서 나올 수 있겠는가. 道臣의 직책이 얼마나 막중한 것인데 앉아서 全省을 擁하고서도 拱手하여 (전봉준의)命을 받으며 (중략) 도적들(동학농민군···인용자)을 항하여 동정을 애걸해서 (전봉준의)호령에 빙자하여 關文을 봉행함과 같이 하니 부끄러움을 완전히 잃은 것이다.”⁵⁵⁾

즉, 全瑋準을 총지도자로 한 執綱所의 農民統治가 湖南全道에서 실시된 것이었다.

四. 執綱所의 3類型

집강소는 호남일대에 설치된 후 名分상으로는 여하간에 실제적으로는 統治權을 장악하여 農民統治를 실행했는데, 그 統治權 장악의 정도에 따라 집강소를 다음의 3개

46) 『東學史』, p. 126.

47) 『兩湖招討叢錄』, 『東學亂記錄』 상권, p. 205 참조

48) 『東學史』, p. 126 참조

49) 『甲午略歷』, 『東學亂記錄』 상권, p. 65.

50) 『甲午略歷』, 『東學亂記錄』 상권, p. 65 「設執綱所于公廡」云云 참조

51) 黃玆, 『梅泉野錄』(국사편찬위원회 편), p. 158 참조

52) 『甲午略歷』, 『東學亂記錄』 상권, p. 65.

53) 崔永年, 『東徒問辨』, 『東學亂記錄』 상권, p. 160 참조

54) 『梧下記聞』, 第2筆의 p. 63.

55) 『梧下記聞』, 第2筆의 p. 67.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⁵⁶⁾

第1類型은 동학농민혁명운동과 집강소의 농민통치에 쫓기어 군·현의 守令들이 도망하고 任地에는 중앙정부가 임명한 官長이 없어서 <守令空官> 상태의 군·현에 農民執綱所가 설치된 경우이다. 이러한 고을에서는 명실공히 執綱所가 모든 統治를 전담하였다. 예컨대, 南原 등과 같은 고을이 그 전형적 경우이다.

第2類型은 각 군·현의 官長은 任地에 남아 있으나 그것은 단지 이름뿐이고 실제로는 執綱所가 <舊制官長>⁵⁷⁾하여 統治權을 장악하여 행사한 경우이다. 이러한 군·현에서는 종래의 官廳과 吏胥들은 집강소에 종속되어 補助機關으로 전화하고 <執綱>의 지휘를 받으면서 집강소의 농민통치에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였다. 예컨대 全州 등과 같은 고을이 그 전형적 경우이다.

第3類型은 중앙정부가 임명한 군·현의 官長이 지방의 行政을 하고 農民執綱所는 그에 대한 監督, 監視만 한 경우이다. 이러한 고을에서는 地方統治權은 官長과 執綱所(執綱)에 二元化되어 官과 農民 사이에 相和와 協助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였다. 예컨대, 淳昌 등과 같은 고을이 그 전형적 경우이다.

위의 3개유형 중에서 가장 지배적인 유형은 第2類型으로서, <官長은 이름만 있고 실질적으로 執綱이 守令의 일을 한> 유형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56) 慎鍾夏, 「甲午農民戰爭時期의 農民執綱所의 活動」, 『韓國文化』 제 6집, 1985 참조

57) 『先鋒陣呈報牒』, 『東學亂記錄』 하권, p. 266.

→ 守令空官

五. 執綱所의 農民統治와 弊政改革

동학농민군이 호남 일대에 집강소를 설치하고 農民統治를 실시하면서 단행한 폐정 개혁의 중요한 것들을 항목화하여 간단히 들면 다음과 같다.

(1) 貪官汚吏의 징계

동학농민군은 執綱所를 설치하자마자 먼저 탐관오리들을 색출하여 징계하였다.⁵⁸⁾ 동학농민군이 고을 守令들을 힐책한 「嘲罵官長」⁵⁹⁾이나 부정부패하고 탐학한 吏胥들에 대한 징계는 여기서 다 일일이 들 수 없도록 모든 고을의 집강소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주목할 것은 執綱所가 종래 농민들의 힘이 미치지 못했던 守令級 貪官들에 대한 징계를 감행했다는 사실이다. 그 대표적 예로 이전의 轉運使 趙弼永, 沃溝縣監 趙秉澄, 順天府使 李秀弘, 古阜郡守 梁性煥, 全羅左水使 金澈圭 등이 동학농민군에게 체포되어 곤장을 맞는 등 징계당했으며 礪山府使 金元植 등은 피살당하였다.⁶⁰⁾ 집강소의 동학농민군은 不殺人의 원칙에 따라 가능한 한 死刑은 피하고 징계하였다. 이 관대한 원칙중에서도 礪山府使, 南原府使, 長興府使 등이 집강소 설치를 전후하여 동학농민군에 의해 처단되었다. 탐관오리가 징계되었기 때문에 집강소 통치 기간에는 탐관오리의 작폐는 완전히 소멸되었다.

58) 『東學史』, p. 157 참조

59) 『梧下記聞』, 第1筆의 p. 106.

60) 『先鋒陣呈報牒』, 『東學亂記錄』 하권, p. 214 참조

(2) 身分解放運動과 社會身分制度 폐지

집강소는 良人身分層과 奴婢를 비롯한 賤民身分層의 身分解放 및 社會身分制度 폐지운동을 과감하게 전개하였다. 『梧下記聞』은 이 운동의 일 단면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賊黨(동학농민군)은 모두 賤人奴婢이므로 兩班·士族을 가장 증오하였다. 그래서 양반을 나타내는 뽕죽 관을 쓴 자를 만나면 곧 바로 꾸짖으며 말하기를 ‘너도 역시 兩班인가’하고 冠을 벗기어 빼앗아 버리거나 그 관을 자기가 쓰고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兩班을 목주었다.

무릇 집안의 奴婢로서 도적들(동학농민군)을 따르는 자는 물론이요, 비록 도적들을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두 지극히 賤한 자가 主人을 위해 강제하여 奴婢文券을 불사르고 從良(良人됨)을 강제로 승인케 하거나 또는 그 주인을 결박하여 주리를 틀

고 곤장과 매를 치기도 하였다. 이에 奴婢를 가진 자들은 바람에 따라 奴婢文券을 불살라서 그 禍를 덜었다. (노비로서)살가는 자가 혹시 (노비문권을) 불사르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에도 그러나 氣焰이 널리 맹렬하게 타고르고 있어서 主人이 더욱 이를 두려워 하였다.

혹은 奴와 士族의 主人이 모두 함께 도적을 따르는 경우에는 서로 (평등하게) 接長이라 칭하면서 그들의 법을 따랐다. 屠漢(백정)·才人 등속의 무리도 역시 平民·士族과 같이 평등하게 禮를 했으므로, 사람들이 더욱 치를 덜었다.⁶¹⁾

61) 『梧下記聞』, 第2筆의 p. 97.

이 기록은 집강소의 농민통치 시작과 함께 奴婢와 屠漢(白丁)·才人(倡優) 등 賤民身分層이 앞장서서 아래로부터 격렬하게 身分解放運動을 전개하면서 사실상 社會身分制度를 폐지해 나갔음을 극명하게 알려주고 있다. 위정척사파 유생 黃玟이 「奴隸로서 그 主人을 주리를 뜯 자가 있다」⁶²⁾고 통분해 한 것은 노비들의 격렬한 신분해방운동을 가리켜 말한 것이었다.

62) 『梧下記聞』, 第2筆의 p. 67.

집강소의 농민통치가 감행한 신분해방운동의 내용은 ① 불량한 兩班들에 대한 응징과 兩班身分制度의 부인, ② 奴婢文書의 소각과 奴婢解放, ③ 七班(7종) 賤人の 해방, ④ 地閫을 타파한 人材 등용, ⑤ 青春寡婦의 改嫁의 허용⁶³⁾ 등이 그 주된 것이었다.

63) 『梧下記聞』, 第2筆의 p. 96 참조

후에 官軍이 동학농민군의 10죄 중의 여섯번째 죄목에 「平等을 가칭하여 名分(身分을 의미···인용자)을 부수었음」⁶⁴⁾을 든 것이나, 또는 「兩班과 부자를 모조리 짓밟았으며 종문서를 불질러 綱常을 무너뜨렸으며」⁶⁵⁾라고 힐문한 것은 모두 집강소의 농민통치의 신분해방운동과 社會身分制度 폐지의 단행에 가리킨 것이었다.⁶⁶⁾

64) 『兩湖右先鋒日記』, 『東學亂記錄』 상권, p. 272.

65) 『東學史』, p. 157.

66) 鄭珍相, 「農民執綱所를 통해 본 甲午農民戰爭의 社會的 志向」, 한국 사회사연구 회논문집 제27집, 『한국 전통사회와 신분구조』(문학과 지성사), 1991, 참조.

(3) 횡포한 富豪의 응징과 討財

집강소의 농민통치는 종래 농민들을 수취해 오던 횡포한 富豪를 응징하고 <討財>(재산몰수)를 부분적으로 실시하여 농민군의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黃玟은 討財를 <劫富民>⁶⁷⁾이라고 표현했는데, 집강소는 횡포한 부호를 응징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부호들에 대하여 (재화의 일부의 헌납을)보편적으로 부과>⁶⁸⁾ 하였다.

67) 『梧下記聞』, 第1筆의 p. 106.

68) 『梧下記聞』, 第2筆의 p. 40.

(4) 三政의 改革과 無名雜稅의 철폐

집강소의 농민통치는 田政·軍政·還政의 三政을 개혁하였다.

집강소는 우선 먼저 농민의 官衙에 대한 고리채로 되어 있는 <還穀>을 무효화하고 <還穀制度>를 영구히 폐지하였다.⁶⁹⁾ 또한 『東學史』 草稿本에는 <軍案>을 불태워 버린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⁷⁰⁾ 이것은 軍布稅의 폐지 또는 개혁을 의미하는 것이다. 長城의 동학농민군의 죄목에는 <公納을 涸竭>⁷¹⁾한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은 田稅와 軍布稅 등 國公課를 削減하여 정부의 부과액대로 납부하지 말도록 한 것이었다.

69) 『東學史』, p. 127 참조.

70) 『草稿本東學史』, 제3책, p. 43 참조.

71) 『先鋒陣呈報牒』, 『東學亂記錄』 하권, p. 245.

호남의 집강소의 농민통치를 본받아 강원도에서 동학농민군이 단행하기 시작한 폐정개혁을 보면, 그후 동학농민군은 江陵을 점령하자마자 9월 5일 東門에 「三政의 폐막을 矯革하고 輔國安民한다」⁷²⁾는 방문을 붙였다. 동학농민군은 寧越·平昌·旌善을 점령했을 때에도 「三政을 마음대로 정했으며(冒定政三政)」⁷³⁾ 강릉의 「府中에 4-5일 留住하는 동안에도 軍布稅와 還穀을 바로 잡아서 三政을 임의로 削減」⁷⁴⁾ 하였다. 이것은 동학농민군의 강원도에서의 활동이었지만, 그 활동은 호남의 집강소를 본받은 것이므로 三政의 개혁은 집강소 농민통치에서는 최우선 개혁정책의 하나였음을 알 수 있다. 집강소의 농민통치가 三政의 개혁과 동시에 無名雜稅를 모두 혁파했음은 물론이다.⁷⁵⁾

72) 『臨瀛討匪小錄』, 甲午 9월초 5일조, p. 7.

73) 『東匪討論』, 『韓國學報』 제3집, p. 265.

74) 『東匪討論』, 『韓國學報』 제3집, p. 265.

75) 『東學史』, p. 126 참조.

또한 집강소의 농민통치는 租稅徵收權도 행사하여 그들의 개혁된 제도와 삭감된 세율에 따라 田稅·軍布稅도 일부 징수했던 것으로 보인다. 官軍이 그후 총령관 金德明을 체포하여 그의 이전의 죄상을 보고한 곳에 「이 자는 院坪店에 都所를 크게 설치하고 公穀과 公錢을 사사로이(동학농민군이)징수했다」⁷⁶⁾는 기록이 있다. 여기서 公穀

76) 『巡撫先鋒陣牒錄』, 『東學亂記錄』 상권, p. 669.

과 公錢의 징수는 田稅와 軍布稅의 징수를 가리킴이 그 문맥에서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집강소의 농민통치가 三政을 개혁하고 無名雜稅를 모두 철폐한 것은 농민들의 오래된 숙원을 반영하여 가혹한 中世의 봉건적 수취와 부담을 철폐하고 농민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보다 합리적이고 가벼운 근대적 公課 체제를 수립하게 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5) 高利債의 무효화

집강소의 농민통치는 환곡을 무효화하고 환곡제도를 영구히 폐지함과 동시에 이왕의 모든 私的 高利債도 모두 무효화하였다.⁷⁷⁾ 집강소의 이 대개혁으로 地主와 富豪들의 負債農이 되어 가혹한 高利債로 착취당하던 가난한 농민들이 모두 부채에서 해방되었다. 음력 7월초에 全瑋準이 각 읍 執綱所에 보낸 通文에서 「私債는 시비를 물론하고 절대로 시행치 못하게 하며 이 지시를 어기는 자는 마땅히 笞에 보고하고 처벌하라」⁷⁸⁾고 엄명한 곳에서 高利債의 무효화와 高利貸付의 엄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할 수 있다.

77) 『東學史』, p. 127 참조.

78) 『梧下記聞』, 第2筆의 p. 66.

(6) 米穀의 日本에의 流出 방지

집강소의 농민통치는 해안지방에서 米穀을 무역을 통해서든지 아니든지간에 日本으로 流出시키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⁷⁹⁾, 해안의 선박들을 검색하여 日本으로 실어가는 미곡들은 압류하였다.⁸⁰⁾ 집강소의 이러한 활동은 米穀이 각종의 통로로 日本으로 流出되어 국내의 米價를 앙등시킴으로서 貧民들의 民生이 어려워짐을 경협하고, 이것을 일본의 일종의 經濟侵略으로 간주하여 이를 방어하고자 한 것이었다.

79) 『先鋒陣各邑了發關及甘結』, 『東學亂記錄』 하권, p. 350 참조.

80) 『宣諭榜文並東徒上書所志牘書』, 『東學亂記錄』, 하권, pp. 384~386 참조.

(7) 地主制度의 개혁·폐지 시도

집강소의 농민통치는 中世의 봉건적 地主制度의 개혁 또는 폐지에 의한 土地改革을 추구하였다.⁸¹⁾ 이에 관련된 執綱所의 폐정개혁 요강은 『東學史』의 간행본과 초고본에 수록되어 있는 「土地는 平均으로 分作케 할 사」⁸²⁾와 「농군의 두레法은 장려할 사」⁸³⁾의 두 개의 조항이다.

또한 全瑋準은 그후 체포되어 일제측의 심문을 받을 때에 봉기의 목적을 묻는 심문에 「오직 나의 중국의 목적은 첫째로 閔族을 타도하고 一黨의 奸臣을 없애며, 또한 轉運使를 폐하고 田制·山林制를 改正하며 小吏의 私利를 짓는 자를 엄하게 처분함을 원했을 뿐이다」⁸⁴⁾고 응답하였다. 여기서 전봉준이 말한 「田制·山林制의 改正」은 번역하면 곧 「土地改革」을 가리킨 것이며, 전봉준과 執綱所가 土地改革을 추구했음은 위의 자료들에서 명백히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執綱所와 전봉준은 어떠한 내용의 土地改革을 추구하려고 했는가? 이 문제에 해답을 줄 가능성을 가진 자료의 하나가 다음과 같은 『康津邑誌』의 「名僧草衣傳」의 기록이다.

“茶山이 流配로부터 고향에 돌아가기 직전에 『經世遺表』를 밀실에서 저작하여, 그의 문하생인 李晴과 그리고 친한 승려인 草衣에게 맡겨서 비밀리에 보관하여 전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 全文은 도중에 유실되고 그 일부는 大院君에게 박해당한 南尙敦·南種三父子 및 洪鳳周 일파에게 전해졌다. 그 일부는 그후 康津의 尹世顯·金炳泰·姜雲伯 등과 海南의 朱挺浩·金道一 등을 통하여 甲午年에 起兵한 全綠豆(전봉준)···인용자) 金介男 일파의 수중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용하였다. 전쟁 후 丁茶山の 秘訣이 綠豆一派의 匪賊을 선동했다고 하여, 丁茶山の 流配地 부근의 良家와 高聲寺·白蓮寺·大屯寺 등을 수색한 일까지 있다.”⁸⁵⁾

이 자료에 의하면, 茶山 丁若鏞의 『經世遺表』가 全瑋準·金開男 등 동학농민군 지도자의 수중에 들어가서 이용되고 그들을 선동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丁茶山の 『經

81) 慎鍾夏, 「甲午農民戰爭과 두레와 執綱所의 폐정개혁」, 한국사회사 연구회는문집 제8집, 『한국사회의 신분계급과 사회변동』(문학파지성사), 1987 참조.

82) 『東學史』, p. 127 및 『草稿本東學史』, 제3책, p. 43.

83) 『草稿本東學史』, 제3책, p. 44.

84) 『東京朝日新聞』, 1895년 3월 5일자, 「東學黨大巨魁と其口供」.

85) 朴宗根, 「李朝後期の實學思想 - 茶山丁若鏞の社會改革論」(하), 『思想』 No. 567, 1971, p. 1284에서 재인용.

『經世遺表』에서 제시된 토지개혁안은 <井田制>土地改革案인 것이다. 全瑋準 등이 丁茶山의 井田制 土地改革에 큰 영향을 받아 이를 수정한 토지개혁을 추구했다면, 이것은 執綱所의 폐정개혁 조항의 내용과 그 내용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다. 丁茶山이 『經世遺表』에서 제시한 井田制 土地改革案은 농지를 반드시 지형상으로 井字田形으로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8區의 私田과 1區의 公田을 만들어서 8家の 私田 경작자가 1區의 公田을 공동경작하여 그 公田의 수확물로 公稅를 납부하고 私田의 수확물은 각각 8家の 경작농민의 소득으로 하면 이것이 바로 井田制의 實을 거두는 것이라고 하였다.⁸⁶⁾

執綱所가 『經世遺表』의 井田制 토지개혁안을 응용하여 私田 8區마다 公田 1區를 두고 私田은 1區를 1家에게 分配하면, 폐정개혁 요강인 「土地는 平均으로 分作케 할 사」가 완벽하게 실현된다. 왜냐하면 井田制의 9區의 各區면적은 완전히 均等하여, 따라서 私田 9區의 各區를 각각 1區씩 경작하는 농민은 「土地를 완전히 均作」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公稅를 위한 나머지 1區의 公田은 어떻게 하는가? 執綱所의 폐정개혁 요강의 「농군의 두레법은 장려할 사」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어, 농민들이 <두레>의 방법으로 공동경작을 하면 되는 것이다. 井田制에 있어서는 농토의 9분의 8은 私田이지만, 9분의 1은 公田으로 언제나 존재하므로, 公田경작을 위해서는 <두레>는 매우 적절하고 효율적인 필수제도의 인가이다. 따라서 「농군의 두레법은 장려할 사」의 요강이 실행되어, 公田 1區를 완전히 <두레法>으로 경작하고, 私田 8區에 대해서도 모내기·김매기 등의 작업은 <두레>로 협동경작하는 것을 장려할 필요가 절실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私田 8區의 私田이 완전히 경작농민의 私田인가, 또는 이것이 地主의 私田이고, 경작농민은 均等한 小作만하는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된다. 井田制의 원리는 본래 私的 不在地主의 介在를 인정하지 않고 國家(公)와 農民(私)사이의 직접적 토지분배의 방법이었다. 執綱所가 농민통치의 기간에 地主를 박해한 것을 보면, 金剛소의 井田制 토지개혁에서 私田 8區를 地主의 私田으로 간주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며, 정전제의 본래의 원리대로 私田 8區는 耕作農民의 私田 8區인 것이 틀림없는 것으로 보게 된다. 즉 執綱所의 井田制 土地改革은 中世의 封建的 地主制度를 폐지하고, 耕作農民들에게 私田 8區를 1區씩 均等하게 分配해 주어 自作農으로 均作케 해서 그 생산물은 모두 경작농민의 소득으로 하며, 「농군의 두레법을 장려」하여 公田 1區는 <두레>의 방법으로 경작케 해서 그 소출을 公稅로 납부케 하고 그 이외에는 농민이 어떠한 雜稅나 부담도 지지 않도록 하는 토지개혁정책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때 <두레>의 방법이 私田 8區의 협동노동에도 활용될 것임은 물론이었다.

토지개혁의 실시는 적어도 1~2년의 집권기간이 필요한 사업인데, 執綱所의 農民統治기간은 수개월에 불과했으므로 執綱所의 井田制에 기초한 土地改革은 추구만 되었지 실천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갑오농민전쟁 기간에 동학농민군의 地主制度와 地主에 대한 적대행동은 도처에서 보이고 있다. 예컨대 公州의 地主인 南先達은 동학농민들에게 賭租(소작료)를 뺏기어 그 세가 낭패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⁸⁷⁾ 長城의 동학농민군 수령들의 죄상의 하나에는 「다른 사람의 賭租를 억탈한 것(勒奪他人賭租)」⁸⁸⁾이 중시되어 관군에게 처벌당하였다. 古阜의 동학농민군 수령 李化辰은 그 고을 동학접주의 저지로 성공은 못했지만 海際面 地主의 賭租를 수색하여 몰수하려고 출동했었다.⁸⁹⁾ 동학농민군이 호남 지방에서 賭租 70石을 압수하여 明禮宮의 마름집에 보관시켰다는 기록도 있다.⁹⁰⁾ 강릉에서는 동학농민군이 부호의 錢財를 토색했을 뿐 아니라 「田畝文書를 빼앗고자 했다(欲奪田畝文書)」⁹¹⁾고 기록되어 있다.

執綱所의 농민통치는 井田制의 원리를 자기 시대에 알맞게 수정하여 발전시킨 井田制 土地改革政策 실시를 추구했던 것이다.

86) 『興猶堂全書』 政法集 『經世遺表』 天官吏曹, 제1 참조.

87) 『雜記(報抄)』, 『東學亂記錄』 하권, p.297 참조.

88) 『巡撫先鋒陣牒錄』, 『東學亂記錄』 상권, p.650.

89) 『巡撫先鋒陣牒錄』, 『東學亂記錄』 상권, p.628.

90) 『先鋒陣各邑了發關及甘結』, 『東學亂記錄』 하권, p.364 및 『宣諭榜文並東徒上書所志牒書』, 『東學亂記錄』 하권, p.412 참조.

91) 『東匪討論』, 『韓國學報』 제3집, p.265.

(8) 人民訴狀의 처리

집강소의 농민통치는 백성들이 제출한 「訴狀」을 백성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정당하게 처리하여 그동안 농민들이 官과 兩班과 土豪들에게 억울하게 당했던 〈宿怨〉〈抑怨〉을 모두 집강소의 農民權力에 의하여 풀어주고 해결해 주었다.

『東學史』에서 집강소의 활동을 기술하는 중에 「일변으로 人民의 訴狀을 처리하며」⁹²라고 기록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또 金允植이 「湖南의 匪徒들은···백성들이 冤訴하는 것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판결해서 도리어 民心을 얻고 있다고 한다」⁹³고 기록한 것도 이것을 가리킨 것이다. 위정척사와 유생 鄭碩謨가 「賤民이 함께 모두 跳梁하여 비단 討財만 할 뿐 아니라 宿怨을 갚으려 기도해서 호남 일대가 혼돈의 세계가 되었다」⁹⁴고 기록한 것은 집강소의 人民訴狀의 처리가 농민들의 〈宿怨〉을 풀어주는 방향에서 실행되었음을 알려주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92) 『東學史』, p. 130.

93) 『續陰晴史』, 상권, p. 318.

94) 『甲午略歷』, 『東學亂記錄』 상권, p. 65.

(9) 官吏의 文簿의 檢閱

집강소의 농민통치는 관리들이 과거에 작성한 文簿와 집강소 설치 후 집강소의 幫助機關으로 일하는 官吏들이 작성한 文簿를 낱낱이 〈檢閱〉하여 그 잘못을 바로잡고 농민통치를 엄정하게 하였다. 『東學史』에서 「일변으로 官吏의 文簿를 檢閱하며」⁹⁵라고 한 것은 이를 가리킨 것이다. 집강소의 동학농민군은 과거의 관리들의 文簿도 검열했고⁹⁶ 또 스스로 동학농민군의 文簿도 작성하였다. 官軍측은 후에 이를 압수해서 보고 「出納에 踏印成冊한 것의 자세함이 官府의 文簿와 같았다」⁹⁷고 보고하였다.

95) 『東學史』, p. 130.

96) 『先鋒陣各邑發關及甘結』, 『동학란기록』 하권, pp. 349~350 참조

97) 『巡撫先鋒陣牘錄』, 『東學亂記錄』 상권, p. 625.

(10) 東學의 傳道와 農民軍의 強化

집강소의 농민통치는 〈東學〉을 농민들 사이에 적극적으로 傳道하고 농민병사들을 모집하여 집강소의 호위군이라는 명분으로 東學農民軍을 대폭 강화하였다. 『東學史』에서 「일변으로 官民間에 남은 軍器와 馬匹을 거두어 執綱所의 護衛軍을 세우고 만일을 경계하였다. 이때에 전라도에는 青年小兒까지라도 거의다 도에 들어 접을 組織하게 되었다」⁹⁸라고 한 것은 이를 가리킨 것이었다.

『梧下記聞』에 의하면, 執綱所 시기에 동학간부들은 농민들을 적극적으로 동학에 入道시켰는데, 집강소 설치 이전의 동학도인을 〈舊道〉라고 하고, 執綱所 설치 이후에 새로 입도한 사람들을 〈新道〉라고 불렀으며, 俗人으로서 동학을 비방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이를 위압하여 억지로 동학에 입도시켜서 비방하지 못하게 했는데 이를 〈勒道〉라고 불렀다.⁹⁹ 집강소는 이 〈舊道〉와 〈新道〉들을 〈接〉으로 조직하여 東學農民軍을 편성하였다.¹⁰⁰

98) 『東學史』, p. 130

99) 『梧下記聞』, 第1筆의 p. 106 참조

100) 『梧下記聞』, 第1筆의 p. 140 및 『東學史』, p. 130 참조

이렇게 해서 전봉준이 제2차 농민전쟁 봉기를 선언한 9월 초순 경에는 호남의 27개 큰 집강소의 동학농민군 숫자는 11만 4천 5백명에 달하게 되었다.¹⁰¹ 이것은 全州和約때의 동학농민군 병력 7천명에 비하면 16배 이상이나 증가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호남의 작은 집강소들의 동학농민군을 모두 계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의 집강소의 동학농민군의 총병력은 이보다 약간 더 많았다고 볼 수 있다.

101) 『東學史』, pp. 134~135 참조

(11) 동학농민군의 武器와 馬匹의 공급

집강소의 농민통치는 대폭 증강된 동학농민군을 무장시키기 위하여 官民間에 남아 있는 무기와 마필을 철저히 색출하여 징발해서 이를 동학농민군의 무기와 마필로 사용하였다. 이것을 당시에 동학농민군은 〈收砲索馬〉¹⁰²라고 불렀다.

여기서 관의 무기라 함은 각 郡縣의 무기고에 비치되어 있는 무기들과 營의 將卒들이 가졌던 무기들을 압수하여 동학농민군 무장에 사용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¹⁰³ 또 여기서 민의 무기라함은 私砲手들을 비롯해서 민간인이 가지고 있던 銃砲·槍劍 등 각종 무기를 말하는 것이다. 예컨대 전봉준은 威鳳山城에 있는 정부의 군기와 화약을

102) 『梧下記聞』, 第2筆의 P. 66

103) 『巡撫先鋒陣牘錄』, 『東學亂記錄』 상권, p. 680 : 『先鋒陣呈報牒』, 『東學亂記錄』 하권, p. 138, p. 208, pp. 260~266 : 『朴鳳陽經歷書』, 『東學亂記錄』 하권, p. 519 및 『梧下記聞』, 第3筆의 p. 11 참조

실어다가 자기의 동학농민군 부대의 武裝과 武力을 강화하였다.¹⁰⁴⁾ 또한 집강소의 동학농민군은 탄약을 공급하기 위하여 官民間에 비축되어 있는 화약을 색출하여 징발했을 뿐만 아니라 각처에서 화약을 제조하였다.¹⁰⁵⁾ 執綱所의 농민통치는 후기에 오면서 일본침략군과의 一戰이 불가피함을 감지하고 무장의 강화를 매우 서둘렀음을 알 수 있다.

(12) 軍需錢과 軍需米의 비축

집강소의 농민통치는 증강된 동학농민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軍需錢과 軍需米의 조달에 노력하였다. 집강소의 軍需錢과 軍需米의 조달방법은 ① 官穀과 官錢을 징발하여 사용하는 방법¹⁰⁶⁾, ② 적대세력인 부호와 양반으로부터 <討財>¹⁰⁷⁾하여 軍需錢과 軍需米를 강제로 징수하는 방법¹⁰⁸⁾, ③ 일정한 규정을 만들어 민간인으로부터 軍需錢과 軍需米를 할당해서 징수하는 방법¹⁰⁹⁾ 등이 사용되었다.

집강소의 동학농민군은 일본군과의 一戰이 감지되자 조달된 軍需錢과 軍需米를 집강소 지배하의 은밀한 곳에다 「備蓄」하였다.¹¹⁰⁾ 예컨대 金開男은 구례의 화업사에 군수미를 비롯한 군수물자를 은밀하게 비축하여 그 從侄이 되는 접주에게 관장케 하였다.¹¹¹⁾

집강소의 농민통치는 일본침략군과의 一戰이 불가피하게 다가옴을 예견하고 제2차 농민전쟁 봉기의 준비도 폐정개혁과 함께 감행했던 것이다.

六. 맺음말 : 執綱所 農民統治의 개혁의 성격

지금까지의 고찰에서 밝혀지는 바와 같이, 동학혁명운동 중의 執綱所는 기존의 법률과 制度의 틀 내에서 기존의 지방관청이 관리의 부정을 없애고 깨끗한 행정을 하도록 監督하는 監視機關·監督機關이 아니었다. 執綱所는 동학농민이 <權力>을 장악하여 기존의 법률과 制度를 무시하고 동학농민들이 원하는 改革을 단행한 <農民의 權力機關>이었고 <農民의 統治機關>이었으며, <農民革命의 地方權力의 一形態>였다. 즉, 執綱所의 활동은 본질적으로 <行政(administration)>만이 아니라 <統治(rule)>였으며, 동학농민에 의한 <農民統治(rule of peasants over the country)>였다.

또한 집강소가 설치한 농민통치의 개혁은 中世의 舊體制(ancient regime)의 부정 부패한 측면만을 矯正하려고 한 개혁이 아니라, 중세적 구체제의 골간이 되는 사회 제도들인 兩班身分制度·奴婢制度, 中世의 封建的 地主制度, 田政·軍政·還政의 封建的인 三政의 收取制度 등을 비롯해서 각종 중세적 봉건적 制度들을 廢止하고 농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제도들을 새로이 만드는 개혁이었다. 즉, 집강소의 농민통치의 개혁은 前近代의 舊體制를 폐지하고 농민들이 원하는 近代의 新體制와 新制度와 新秩序를 만들기 시작한 革命的 改革이었다. 집강소의 개혁은 農民들이 추구한 <近代의 改革>의 첫 모형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농민들은 東學農民革命運動(또는 甲午農民戰爭)을 일으키어 서울을 향해 진군하다가 일본군과 청군이 침략 개입하여 나라가 결단날 위험에 처하자 진군을 중단하고 이미 점령한 지역에 <執綱所>라는 <農民革命의 統治機關> <農民革命의 地方政權>을 수립하여 中世의 具體制를 폐지하고 近代의 新體制의 수립을 시작하는 農民民主主義의 農민통치를 실시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만일 外勢의 간섭이 없어서 동학농민군이 패전하지 않고 서울에 입성했다면 동학농민군이 실질적으로 中央政府의 權力을 장악하고 전국에 걸쳐 執綱所型的 「近代의 改革」의 모형이 더욱 발전하면서 실시되었을 것임은 용이하게 추정할 수 있는 일이다.

또한 執綱所의 농민통치가 중세적 구체제를 폐지하고 農民型的 近代의 新體制의 수립을 추구했다는 사실은 형태적 개념으로서의 「甲午農民戰爭」이 역사적 사회적 성격

104) 『梧下記聞』, 第3筆의 p. 14 참조.

105) 『巡撫使呈報牒』, 『東學亂記錄』 하권, p. 41 및 『梧下記聞』, 第3筆의 pp. 11 ~ 13 참조.

106) 『兩湖右先鋒日記』, 『東學亂記錄』 상권, p. 272 참조.

107) 『甲午略歷』, 『東學亂記錄』 상권, p. 65.

108) 『梧下記聞』, 第1筆의 pp. 106 ~ 107; 第2筆의 p. 71 및 p. 107; 第3筆의 p. 24 참조.

109) 『先鋒陣呈報牒』, 『東學亂記錄』 하권, p. 245 및 『梧下記聞』, 第3筆의 pp. 13 ~ 15 참조.

110) 『先鋒陣各邑了發關及甘結』, 『東學亂記錄』 하권, p. 342 참조.

111) 『梧下記聞』, 第3筆의 p. 25 참조.

에서는 「東學農民革命運動」임을 증명해주는 사실이기도 한 것이다.

執綱所는 비록 일부 지방에서의 일일지라도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農民이 統治權力을 장악하고 누천년 묵어온 中世的 具體制를 폐지하면서 농민들이 원하는 近代의 新體制의 수립을 추구한 「農民革命의 統治機關」이었다. 執綱所와 그 農民統治의 改革은 한국역사에서 近代社會로부터 近代社會로 변혁하는 길을 넓게 열어준 커다란 역사적 의의를 가진 것이었다고 할 것이다.

신 - 신 체제 수립 촉구

(인본제 실시) (실작을 위한 여포제) (농민계급제 실시)
정치구상은?

< 건국헌법 >은

- ① 건국헌법(헌법) 약속 재확인, ② 농민권력의 회복 촉구.
- ③ 집권층 개혁 인정, ④ 근대화개혁 시행 약속

이이화 : 농민권력 추구하는 헌법이 아니다. 이를 용어가 정치구상만
인용해서 쓰지마라.

정치구상 (이이화)

유일성, 양명학이 근대성을 정치구상에 근거를 둔다면,

현실성, 건국헌법의 중요성

- 1. 헌법이 전제적 집권이냐 하는 국가적 위난에 대한 대의 때문에
부분을 포기할 때는 의미있지 않다.
- 2. 근대적정치의 실현 가능성 있다. (근대이후의 이란시를 변하지 않음.)
근대적정치를 실현하려는 양명학이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무시하면
근대정치의 실현 가능성은 ~~완전히~~ ^{철저히} 사라진 것이다.
집권이 부응하는 부분은 இரு하는 것이다.

폐정개혁과 갑오개혁 - 그 연관성의 규명

a. 양자의 사실관계

a. 개혁개혁의 성격문제. (사실관계.)

양자간의 차이가 있는데, 폐정개혁은 농민군에 의한 개혁이다.

이때의 주체는 개혁개혁은 농민, 이때를 개혁개혁의 개혁

그러나 개혁개혁을 이차의 개혁으로 구분해서 이해해야 한다.

李 離 和
(역사문제연구소)

1. 앞말
2. 농민군의 폐정개혁
3. 개화정권의 개혁안
4. 두 계열의 개혁추진

1. 앞말

농민들의 폐정개혁과 개화정부의 갑오개혁은 그 상호연관성 문제가 연구자들 사이에 논의되어 왔으나 정작 이를 제대로 논증하는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폐정개혁은 밑으로부터의 개혁이었으나 그 반봉건성이 분명하지 못하다는 論究가 있었고 갑오개혁은 위로부터의 개혁이었으나 그 외인론과 타율성이 지적되기도 했다.

이 발표에서는 그 개혁의 주도층 성분과 추진과정 그리고 개혁의 조목과 지향점을 분석하여 이 문제에 접근하고 결론의 도출을 시도해 보려 한다.

2. 농민군의 폐정개혁

농민군의 목표와 요구는 사발통문과 고부봉기 단계에서부터 나타나서 집강소 기간까지 이어진다. 이를 일단 3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① 단계

여기에는 사발통문의 봉기목표에서 전주화약 이전까지 해당된다. 사발통문에서는 고부와 전주·서울로의 진격을 목표로 내걸었고 고부봉기에서는 고부라는 일정지역의 조목을 들고 있으나 그 사회경제적 지향이 전국적 현상과 같은 문제들이었다. 그 후 무장에서 발표한 포고문과 백산에서 발표한 4개 명의와 격문 그리고 법성포 吏鄕에게 보낸 통문 등에서 그들의 지향점과 폐정요구가 드러나고 있다.

여기에서 축멸왜이(逐滅倭夷)와 진멸권귀(盡滅權貴)라는 1차적인 행동목표가 드러난다. 다시 말해 농민군들은 외세로는 러시아의 남진을 막고 일본의 침투를 몰아낸다는 것이며 내용으로는 민씨정권을 타도하고 홍선대원군을 추대 집정케 하라는 것이다. 이어 민중과 小吏들은 양반과 부호, 수령과 방백을 타도의 대상으로 삼아 봉기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폐정개혁 조항으로 10개조를 제시하였는데 국가적 수취의 폐단과 수령의 부정, 負商의 독점을 시정하여 농민 소상인을 보호하는 내용이었다.

특히 '他國潛商峻價貿米也'의 조항은 외국 상인이나 이와 결탁한 객주 등이 불법적으로 고가로 쌀을 유출하는 폐막을 지적한 것이다. 이 경제관계 폐막은 다음 단계에서 더 구체화되나 이때부터 그 기본 지향점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정정정
(농민군의 토권, 국유인물, 私物의 權限이 없다.)
이러한 이유.

② 단계

4월 19일 홍계훈에게 보낸 정문과 5월초 전주화약 당시의 폐정조목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곧 처음으로 왕명을 받은 초토사에게 전달한 개혁요구 조항이라 볼 수 있다(전주화약은 홍계훈이 목살하고 조정에 보고치 않은 것 같다).

정문의 8개항은 조정과 국가수취와 관리의 부정에 해당되는 내용이나 각사 교례배(校隸輩)의 토색이 포함되어 있다. 이도 넓은 범위로는 관리의 부정에 속한다.

전주에서 농민군들의 소원을 임금께 상주해 달라는 27개 조목은 14개조목 만이 전해진다. 그중 일반적인 경제문제외의 보부상의 작폐, 대동미 상납권에 포구 잡상의 무미(質米)를 금단한 것, 관장으로 해당 경내에 장지를 마련치 말고 논을 사지 말 것, 포구의 어염세를 혁파할 것 등이 들어있다. 농민은 물론 소상인의 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나타나지 않은 13개조항은 반일적 또는 정치적 요구가 들어 있을 개연성이 크다(鄭昌烈은 다른 폐정조목과 결부시켜 복원해 보고 있다).

다시 말해 일본인의 불법적 상행위 또는 홍선대원군의 웅립 등 반외세 반민씨문제의 구체안이 제시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③ 단계

5월 중순 이후 집강소기간에 순변사 이원희에게 보낸 原情의 조목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는 5월 11일, 5월 17일, 5월 20일 등 3차례에 걸쳐 제시된다.

첫번째에 13개 조목이 제시되는데 일반적인 문제 이외 전보국의 철폐, 각 宮房 輪回結의 혁파가 새로이 들어가 있다. 전보국의 설치는 강제노역 등으로 민간에 폐단이 많은 것 때문이요 궁방 윤회결은 국가수취는 아니나 宮房土 이외에 結稅를 받는 폐단을 막으려는 것이다.

두번째에는 24개 조목이 제시되어 있는데 私債의 강제징수, 토호의 발호, 東學人의 원통을 씻어달라는 것 등이 추가되어 있다. 좀더 현실적인 문제에 접근한 내용이다.

세번째에는 13개 조목이 제시되어 있는데 외국 상인의 都城設市 등 임의행상을 금지하라는 것과 끝의 "奸臣弄權 國事日非 懲治其責官事"와 "國太公 干預國政 則 民心有庶機之望事"가 주목된다. 곧 反閔氏 親大院君의 정치적 요구사항이 거듭 천명되어 있는 것이다.

끝으로 東學史에 나타나는 화약 조건 12개항은 이들 전체를 묶어 표현한 것으로 보

인다(혹은 갑오개혁 조항을 엄두에 둔 자의적인 기술일 수도 있다).

일단 이들 폐정요구 사항을 분석해보면 그들의 사회경제적 지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外商 潛商의 質米근절이 강조되어 있다. 그리고 소농과 소상의 보호와 都賈商人, 보부상인의 독점적 이익과 미상과의 결탁을 배격하고 있다.

3. 개화정권의 개혁안

민씨정부는 5월 11일 校正聽을 설치하고 이어 신설잡세 등을 철폐하는 조치를 취했으나 미온적이고 제한적인 내용이었다. 6월 16일 혁폐조건 12개 항을 시행케 했다. 대부분 농민군 요구사항 중 일부 조항 이외에는 거의 수용하고 있다.

大鳥圭介는 6월 21일 경복궁 쿠데타 직전 官制개혁과 인재등용, 재정정리 富源개발, 법률정돈, 재판법개정, 민란진정, 兵備설치, 교육제도 확립 등 다섯 항을 고종에게 건의했다.

구데타 이후 閔氏를 축출하고 興宣大院君에게 허울뿐인 군사권을 주면서 25일에 金弘集내각을 출범시켰고 軍國機務處를 신설하였는데 내각은 개화파중심의 연립적 성격을 띠었으나 군국기무처의 회의원 18명을 朴定陽, 金允植, 金嘉鎮, 金鶴羽, 兪吉濬 등 친일개화파 중진 또는 청년들로 구성되었다.

군국기무처에서는 議案이라는 이름으로 이른바 개혁책을 발표하였는데 첫째로는 官制개혁으로 개화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었고 둘째로는 ① 開國紀年을 쓰는 것, ② 法과 조약을 개정하고 全權公使 각국 파견, ③ 문벌과 반상 등급을 격파하고 귀천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선용할 것, ④ 文武尊卑를 없애고 품계만을 따를 것, ⑤ 연좌제를 폐할 것, ⑥ 남녀 조혼을 금할 것, ⑦ 과부채가를 귀천없이 자유에 맡길 것, ⑧ 公私奴婢를 혁파하고 人口의 판매를 금할 것, ⑨ 平民이라도 利國便民의 의견을 군국기무처에 내면 회의에 붙일 것, ⑩ 衛署의 조예는 적당히 가감할 것, ⑪ 衣制를 고칠 것 등 內政改革이었다.

그후 군국기무처는 약 6개월간 2백여건의 개혁안을 통과시켰는데, ① 조선의 자주독립, ② 봉건적 신분해방, ③ 과거폐지와 인재등용, ④ 관제의 개혁, ⑤ 조세의 金納과 재정의 一元化, ⑥ 신식화폐의 실시와 銀本位制, ⑦ 외국통상의 확보, ⑧ 신교 육실시와 소년 서국유학, ⑨ 정부경인권 철도부설, ⑩ 양국 對淸 功守맹약, ⑪ 고문 파견 등을 결정하였다. 이것은 때로 내각과 연계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는 조선을 淸과 단절하는 自主獨立, 사회신분과 국가제도의 개혁 등이 포함되어 농민군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농민군 요구의 근간은 사회신분 이외는 校正聽에서도 수용한 바이며 가장 중요한 농민적 토지소유 개혁이 빠져있다. 그외 이들 개혁은 일본의 경제침탈 또는 대한침략의 기반을 다지는 조항과 개혁들이 대부분이다.

4. 두 계열의 개혁추진

동학농민군의 초기 봉기단계에서는 開化派가 농민군에게 지원을 보냈고 본격적 봉기단계에서 친일開化정부가 수립되고 閔氏가 타도되자, 농민군은 개화정부를 적으로 돌렸고 閔씨들도 농민군에 동조하는 양상을 띠어갔다. 농민군이 고종에 대한 王權에의 도전을 접어두고 흥선대원군을 옹립하려는 모습을 보이자, 개화정부는 농민군을 일본과 연합하여 진멸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일본은 大鳥圭介부임 당시 경제침탈을 목표로 삼았고 괴뢰정부를 수립하고 이를 조정하면서 농민군의 요구는 일부 수용하면서 군사지휘권의 접수, 對淸공수동맹의 체

결, 그리고 새로 井上馨이 부임하여 親政체제를 구축하고 흥선대원군을 완전히 제거 하면서 군국기무처도 해체하여 2단계 전략을 수행하였다.

당시 일반 민중들은 개화정부의 인사를 倭大臣이라고 불렀다. 開化정부가 괴뢰로 일본의 사주 아래 개혁을 추진하고 보니 자주적 자율적 개혁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 金弘集은 淸日戰爭을 조선의 자주독립과 동양평화를 위한 전쟁이라고 규정하였다.

군국기무처는 일종의 일본의 정책을 수행키 위한 잠정 기구였으며 김홍집내각은 그 하수인이었다. 그러므로 토지제도의 개혁 등과 일본의 침탈정책을 방지하는 정책을 펴지 못했다.

申箕善은 이에 대해 “들으니 日人들이 우리에게 자주를 권하고 개화를 가르친다고 하는데 자주가 어찌 좋은 일이 아니겠으며 개화가 진실로 미담이기는 하나 예부터 지금까지 인심이 흩어지고 法紀가 능멸되고 國脈이 끊어지고서 자주 개화할 수 있겠는가? 자주를 잘하는 자는 먼저 자주의 형세를 세우고서 그 이름에만 급급하지 않으며 개화를 잘하는 자는 먼저 개화의 實에 힘쓰고서 그 자취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

농민군은 나타난 것만 보면 사회신분제의 구체적 개혁방안, 봉건왕조에 대한 체제 부정, 경제에 있어 토지소유문제의 제시가 미흡하나 그 본질은 小農·小商의 보호와 외세의 침탈을 거부하는 것이었다. 개화정부는 가장 골간이 되는 문제를 도외시키고 외세와 결탁했으니 그 자율성을 인정할 수 없고 농민적 개혁을 수용치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 연관성은 부분적 수용 이외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농민혁명' 이후 동학농민의 민족운동

李 榮 昊
(파학기술원)

1. 문제의 제기
2. '동학교단'의 동향
3. '동학농민'의 민족운동
4. '동학농민운동'의 역사적 의의

1. 문제의 제기

1894년의 '동학농민혁명'은 반봉건, 반외세의 근대민족운동으로서 높이 평가되어 왔다. 그것은 19세기초 이래 근대민족국가를 수립하려는 아래로부터의 농민들의 요구가 종합적으로 분출된 결과임과 동시에,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버린 근대사의 결과를 놓고 보면 민족해방운동의 출발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이런 점에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고찰은 19세기초 이래 1894년에 이르기까지의 농민운동, '동학농민혁명', 그리고 그 이후 민족해방운동으로의 합류과정으로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는 최근에 이르러 다소 해소되고 있기는 하지만 주로 '동학농민혁명' 자체에 집중된 점이 없지 않았다. 특히 '농민혁명' 이후 동학농민을 비롯한 민중의 움직임에 대한 고찰이 부

족하였다. 그 결과 '동학농민혁명'이 반봉건, 반외세의 근대민족운동으로서 높이 평가되고 있으면서도 그 이후 대한제국시기의 민족운동이나 식민지시기의 민족해방운동과 연결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고 생각된다.

이 글은 '동학농민혁명' 이후 일제에 의하여 한국이 합병되고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기까지 전개된 민족운동에 관하여 검토하는 것을 과제로 삼는다. 南北接의 분열이 가속화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동학농민혁명' 이후 동학의 동향을 北接의 '東學敎團'과 南接의 '東學農民'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되, 주로 '동학농민'의 민족운동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2. '동학교단'의 동향

1) '농민혁명' 이후 동학교단의 동향

'농민혁명' 이후 東學敎團은 주로 교단의 조직과 교세의 만회를 위하여 활동하였다. 崔時亨을 정점으로 한 상부 지도부의 재건이 추진되었고, 농민봉기가 일어났던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지역에서는 파괴된 包接조직에 대한 재건작업도 추진되었다. 그러나 최시형은 교단조직의 재건으로 인하여 정부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여 조직의 복구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최시형은 동학교단의 보전과 신앙의 발전을 위하여 동학교도로 하여금 정치사회적 활동을 자제하도록 하였다.

동학교단 및 지방조직의 재건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던 최시형이 1898년 체포된 이후 동학의 도통은 孫秉熙에게 넘겨졌다. 동학의 3대 교주가 된 손병희는 동학의 교리와 조직 그리고 포교에 적극적이었다. 그동안 포교가 미약하였던 평안도를 중심으로 함경도, 황해도 등 북부지방에 대한 포교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1900년을 전후하여 수많은 동학교도들이 전국 각지에서 체포 처형되었기 때문에 동학교단은 위기에 봉착하였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고자 손병희는 1901년 3월 외유의 길을 떠났다. 손병희는 일본에서 이상헌이라는 가명으로 서구문명과 일본 문명을 접하게 되고, 개화와 박영효, 권동진, 오세창 등과 교류하였다. 이를 통하여 동학의 진로문제에 고심하고 있던 손병희는 개화와 친일의 방향을 선택하게 되었다.

2) 러일전쟁 이후 동학교단의 재편성

개화와 친일의 방향을 정한 손병희는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광무정권에 대해 내정개혁을 촉구하고, 러일전쟁에서 일본군을 지원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손병희의 구상은 일본이 승리한 뒤 일본의 지원하에 국내의 정권을 장악하여 정치의 혁신을 꾀하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손병희는 교단조직과는 별도의 정치조직으로서 1904년 9월 하순 동학교도들의 進歩會를 각 지방에 결성하고, 이를 1904년 12월 2일 일진회에 편입시킴으로써 적극적으로 친일의 길에 나서게 되었다.

1906년 1월 28일 귀국한 손병희는 통감부의 지원을 받아 내정개혁을 단행하여 개화를 추진하는 작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지만, 통감부의 의도는 이와 달랐다. 이에 손병희는 귀국직전 일진회와 결별하여 창립한 天道敎와는 별도로, 1907년 11월 창립된 大韓協會를 통하여 일진회를 비판하면서 자강운동을 전개하였다. 대한협회의 자강운동은 사실상 통감부 치하에서 정권에 참여하거나 자치권을 장악하는 방향을 취하고 있었다.

일제가 한국을 병합한 이후에는 그에 앞장 섰던 일진회조차도 해산되었다. 정치적 지도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손병희 역시 총독부의 통치에서 배제되었다. 그러한 상황의 연장선상에서 손병희는 기독교, 불교계의 인사와 함께 1919년 3.1운동을 지도하게 되는데, 그것은 자치 또는 독립을 청원하는 차원이었다. 스스로 정치적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치질서의 재편성을 원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방향이 3.1 운동 이후 민족개량주의운동으로 이어졌다.

3. '동학농민'의 민족운동

1) '동학당'의 민족운동

'농민혁명'에 참가한 남접계열의 남은 동학농민들은 전봉준, 김개남, 손화중 등의 지도부를 상실하고 해산되었지만, 그들이 품고 있었던 반봉건, 반외세의 지향은 그 이후에도 여러가지 형태로 표출되었다. 이들의 활동과 지향은 북접교단의 그것과는 상이한 것으로서 북접교단에 의하여 수용되지 못하였다. 명분상으로는 동학과 관련을 갖지만 동학의 사상적 영향을 벗어나 독자적인 이념과 지향을 지니면서 동학조직을 이용하여 활동하고 있던 이들 남접계열의 동학농민을 북접교단 산하의 동학교도와 구별하여 '東學黨'으로 묶어 보았다.

'농민혁명'의 이념을 계승한 동학당의 활동은 북접교단이 조직의 재건과 포교에 한계를 느끼고 포기한 남부지방에서 나타났다. 최시형이 사망하고 손병희가 교단을 장악하면서 남접세력은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최시형이 사망한 후 강원도에 거하는 龜巖, 禮巖, 松巖의 三巖이 第一主張하고, 李關東이 또한 주장하여 각인의 임명장을 다시 만들어 주었다"라는 김준홍의 주장에서 볼때 북접교단의 3암 이외에 이관동이 교단과 대등하게 독자적인 세력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관동은 강원도인인데 최시형이 죽은 뒤 임피의 김준홍과 연결을 가지면서 호남 지방으로 이주하여 동학의 재건을 계획하였다. 이관동은 김준홍을 "更設東學之新接主"로 임명하였고, 김준홍은 휘하에 여산 고문선 부대 30여명, 강경 유산춘 부대 40여명을 거느렸다. 고문선은 전주의 대접주로서 1894년의 제2차 농민전쟁에 참여한 후 여산에 은거하였다가 김준홍의 동학당 재건활동과 연결되었다. 이관동의 동학당은 1900년 4월 8일을 기하여 전주에서 외국인 배척운동을 전개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관동의 동학당이 소백산맥 서쪽 전라도 지방에서 활동하였다면, 소백산맥 동쪽의 경상도 지방에서는 徐定萬, 鄭海龍의 동학당이 활동하였다. 이들은 1900년 3월초 속리산에 들어가 기도 및 제천행사를 개최하고 곧 봉기하려다 체포되었는데, 그들은 속리산 및 덕유산의 동쪽에 김산, 상주, 개령, 지례, 거창, 상주 등지에 거주하는 동학농민들이었다. 이들이 속리산에서 계획한 것은 일본에 대하여 민비살해의 책임을 묻고, 최시형의 斥倭洋 정신을 내세워 반외세운동, 반일운동을 전개하려는 것이었다.

이와같이 소백산맥의 동서쪽 전라도와 경상도 지방에서는 북접교단이 서북부 지방으로 포교의 중심을 이동한 사이에, 동학당이 반외세 봉기를 계획하고 그 구체적인 실천에 착수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러한 동학당 활동의 배후에는 1900년 여름 충청도에서 체포된 남접세력의 정신적인 지도자 徐璋玉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영학당의 민족운동

동학당이 동학의 이름하에 북접교단과는 독자적으로 사회변혁운동을 추진한 남접의 남은 세력이라고 한다면, 英學黨은 남접세력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동학의 명분을 포기하고 영학당의 이름하에 사회변혁운동을 추진한 세력을 말한다. 영학당은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던 전라도 지방에서 그 이념을 계승하여 민족운동을 전개한 점에서 주목된다.

'동학농민혁명' 이후에도 동학의 남은 세력들은 '농민혁명'의 이념을 계승하여 변혁운동을 전개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동학농민들은 우선 북접교단과 접촉하여 봉

기를 위한 계획을 세웠다. 그것은 전라도지방의 孫秉奎, 洪桂寬, 崔益瑞 등이 최시형에게 設包를 요청한 것에서 확인된다. 1896년 8월 이들은 상주로 최시형을 찾아가 설포를 청원하였다. 그러나 최시형은 “지금의 설포가 잿불을 다시 살리는 것과 다름 없으니 한갓 무익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어지럽히기 쉽다”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였다.

복점교단에 의하여 설포가 거부되자 최익서 등의 동학농민들은 英學黨을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영학당은 당시 치외법권적 특권을 누리던 서양 기독교 계통의 종교를 표면적으로 이용하면서 동학의 남은 남접세력을 중심으로 사회변혁을 목표로 주로 전라도 지방에서 조직된 운동조직이었다.

영학당은 1898년 11월 전라도 흥덕에서 군수의 봉건적인 수탈에 저항하여 농민항쟁을 주도하였고, 1899년 4월에는 고부, 흥덕, 무장, 고창 등지에서 무력봉기를 꾀하였다.

흥덕의 농민항쟁은 주동자의 체포로 끝났지만 농민들의 저항의식은 그대로 잠복되었다. 그것은 1899년 봄 이 지역 일대의 均田문제를 중심으로 한 농민의 저항을 촉발시켰고, 그리고 영학당에 의한 무력봉기로 이어졌다. 균전문제는 1891년 전라북도 전주, 옥구, 김제, 금구, 임피, 부안, 태인 등 7개읍의 황무지를 明禮宮이 개간하는 과정에서 농민들과의 사이에 소유권분쟁을 야기하고 賭租 및 結稅의 수취를 둘러싸고 갈등을 일으킨 문제였다. 균전문제는 1893년에는 전주항쟁을 야기하였고, 그것이 동학농민봉기의 촉발제기였던 고부농민항쟁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균전문제는 ‘농민혁명’을 거치고서도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었고, 1899년 봄 다시 폭발하였다. 1893년 균전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전주항쟁과 그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동학농민이 관계된 고부농민항쟁을 계기로 농민봉기의 확산을 재촉하였던 것처럼, 1899년의 영학당운동도 영학당이 관계한 흥덕농민항쟁과, 균전혁파를 요구하는 균전농민들의 항쟁을 이어받아 이 지역에 그 운동을 확산시키게 되었다.

영학당이 봉기를 통하여 추구하는 목적은 ‘동학농민혁명’에서 이루지 못한 뜻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즉 고창 등지를 공격하여 무기를 확보한 뒤 마침 발생한 영암민관 세력과 합세하여 광주를 공격하고 그리고 전주감영을 함락하여 세력을 확대한 뒤 경성을 공격하려는 것이었다. 영학당은 진군의 과정에 무안, 목포를 공격하여 개항장의 외국인 침투를 징벌할 계획도 세워두었다.

영학당은 먼저 고부군을 습격하여 군기를 탈취하는 한편 죄수들을 석방하고, 각 지역에 방문을 게시하여 輔國安民의 봉기취지를 선전하였다. 고부에서 무기를 탈취한 영학당은 흥덕을 공격하여 다시 무기를 확보하고, 그뒤 고창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관군의 수비를 깨뜨리지 못하고 패하였다.

영학당 봉기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1894년의 동학농민봉기를 모방하고 있다는 점이다. 봉기가 일어난 지역이나 진군의 과정이 유사하고, 새로운 사회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서울의 점령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고, 동학조직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군단위의 농민항쟁 및 균전농민의 저항을 반의세 무력봉기로 승화시키고 있는 점 등에서 영학당은 ‘농민혁명’의 좌절을 이기고 그 뜻을 실현해 보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었다.

3) 활빈당 및 의병의 활동과 동학

동학당, 영학당 등 남접의 정신과 이념을 계승하여 민족운동을 전개한 동학농민세력은 1900년을 전후하여 광무정권의 대대적인 탄압을 받아 다수 체포당하게 된다. 복점교단의 동학교도들도 다수 체포되었고 교주가 해외로 도피하는 실정이었으며, 동학의 이름으로 민족운동을 전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들 세력은 사회변혁운동을 다른 방식으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00년경부터는 活貧黨의 활동이 본격화되었다. 활빈당은 충청도 내포지역, 낙동강 동쪽의 경상도지역, 소백산맥을 중심으로 전라도의 동부지역 및 경상도 낙동강 서쪽

지역에서 활동하는 세 부류가 큰 세력이었다. 그 가운데 동학당의 활동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세력은 소백산맥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다. 소백산맥의 동서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점이 동학당의 활동지역과 일치하고 있다. 동학당이 봉기를 준비하기 위하여 속리산이나 덕유산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들 산간지역이 바로 활빈당의 근거지였다. 동학의 이름으로 더이상 사회변혁운동을 전개하기 어려워진 동학당은 자연히 활빈당과 연결될 수밖에 없었다.

1900년 이후에는 동학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세력은 매우 드물게 되었다. 그러나 1904년 이후 발생하기 시작한 義兵戰爭은 동학당이나 영학당이 표방한 반외세운동과 동일선상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동학당이나 영학당에서 해산되어 농촌에 잠복한 세력이나 그와 유사한 의식과 이념을 지닌 세력과의 결합을 가능케 하였다. 활빈당이나 화적들도 의병으로 합류하고 있었다. 의병에 참가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과거 동학농민봉기에 참여한 경력자가 포함되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이미 동학의 이름으로 활동할 수 있는 세력은 북접교단의 동학교도들뿐이었다. 남접의 남은 세력들은 1900년 서장옥이 체포된 이래 더 이상 동학의 명분을 가지고 있을 수 없었다.

이와같이 1894년의 농민봉기에 참가하였던 동학농민 가운데 일부 전업적인 활동가는 동학당 또는 영학당을 거쳐 활빈당 또는 의병으로 합류하여 그들이 목표로 하였던 반외세 민족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농민들은 다시 농촌을 비롯한 열악한 생산현장에 편입되어 잠복되었다. 그리고 그들 농민들은 동학의 명분을 숨기거나 버리고 살았다.

반면 친일과 개화의 방향을 선택한 일진회 동학교도들은, 사회변혁운동에 참여했다가 다시 농촌사회로 돌아온 일반농민들과 대립하고 있었다. 일진회 농민과 일반농민들은 반봉건에는 이해를 일치하였다. 특히 수령과 이서들의 조세수탈에 대하여 반대하였다. 그러나 봉건모순에 반대하는 계급적 입장에는 차이가 있었다. 일진회 농민들은 빈농층 등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것이 아니라 新鄕層, 즉 매판화되어 가는 富民層의 입장에서 있었다. 더구나 반외세의 문제에 대하여는 일진회 농민과 일반농민은 완전히 분리되었다.

동학의 북접교단과 그 산하에 조직되어 있던 진보회, 일진회의 동학교도들은 친일적 조직에 편입되었고, 일진회와 천도교의 분립에 따라 동학교도들은 대부분 천도교의 지방조직으로 편입되었지만, 일진회의 하부조직에도 남아 있었다. 일찌기 '동학농민혁명'과 대한제국시기의 민족운동에 가담하였던 동학의 남접세력은 이제 동학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새로운 민족운동조직에 흡수되어 있었다.

4. '동학농민운동'의 역사적 의의

1904년 11월 11일 일본측에 의하여 파악된 진보회 및 일진회의 임원구성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진보회 및 일진회의 임원구성

단위 : 인원수(%)

	前官吏	進士	士人	農民	商人	合計
進步會	22(2.5)	4(0.5)	403(45.6)	316(35.8)	138(15.6)	883(100)
一進會	21(42.8)	2(4.1)	26(53.1)			49(100)

* 출처 : 『駐韓日本公使館記録』의 『陸海軍往復附一進會』.

진보회의 임원은 각 군별 회장, 부회장, 평의원을 합한 것으로서 진보회 전국회원 117,735명의 0.7%에 불과한 상층임원을 말하는 것인데, 양반출신으로 추정되는 자가 49%였다. 일진회 임원은 전체회원 3,070명 가운데 1.6%를 차지하는데 전체적으로 양반출신으로 추정되는 자가 대부분이다. 진보회와 일진회에 비하여 동학농민세력은 훨씬 하층의 기반을 지니고 있었다. 황해도의 동학당은 대부분 사금채집광부이거나 가난한 농민이라고 지적되었고, 소백산맥 동학당대장 서정만은 글도 쓸줄 모르는 인물이었다.

북접교단은 대체로 경제적으로 상승하는 층을 흡수 포용하고 있는데 비하여, 남접의 남은 세력들이 조직한 동학당이나 영학당에서는 빈농층을 비롯한 하층계급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이러한 양 계열의 계급적 기반의 차이는 이들이 택하고 있는 운동의 노선 및 방향과도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북접교단의 노선이 개화와 친일의 방향에서 계몽운동, 독립청원운동, 자치운동 등 민족개량주의 노선을 취하고 있다면, 남접의 동학농민들은 동학당, 영학당을 통한 반외세 민족운동을 전개하다가 의병전쟁으로 합류하고 민족해방운동의 민족적 기반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동학당이나 영학당운동은 반봉건의 가치를 내걸면서도 반외세의 측면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었다. 그것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좌절 이후 제국주의의 침략이 급속히 진행됨으로써 민족적 위기가 강화되고 있었던 사정을 반영하는 것이다. '농민혁명' 이후의 동학농민운동은 반외세 민족운동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고, 그것은 일제하 민족해방운동의 시초였다.

①. 본래. 기은 지역 ~~전~~ 전안대역(新寧故城)

敬天教 → 靑林教, 평은 핏의 형제로 活動.
 2. 遊樂方式로 練武의 類似한 方法을 擇取하였음.
 2. 러니 天國故의 關係로 因은 듯.

②. 南.北接은 結合한 形인 北接의 境備으로 故國의 上層의 下層을 結合하면 南北의 通氣가 交通的으로 自然의 氣流인 듯이 自然의 氣流을 示한 듯.
 1. 남북의 일반의는 무리한 극장. — 실증적 근거 불충분
 2. 민중의 氣流의 自然의. 북접이 아닌 이면 반대로 民保會이

③. 신남지(新南地) 농민운동의 개조(改造). 1904년 일신총(日新總) (신남지(新南地))
 총 120인 농 민은 17만. 신남지(新南地) 이므로 自然의 氣流이
 동남의 氣流은 南北의 氣流으로 이를 리면. (신남지(新南地))

< 정리 >

1. 영국의 2차 산업 혁명의 흥기. (동학, 기묘, 1894. 혁명, 농민전쟁, 혁명운동, ... 등.)
2. 2차의 발생. 1870. (보통, 보편적, 동학의 의미.)

1. 2차사주.

특정. 이를 근대사학의 관점에서 보거나 설명할 수 있다.

- 이론적 배경의 갈. — 농민전쟁, 보편적의사 (지향)
- 가정적 배경의 대립, 대립 — 농민운동 → 혁명적 운동이 아닌 특색 (민족, 민중, 기층)
- (1). 보편적사 지향적 = 농민전쟁 이이 보편. 보편적사 (농민, 기층, 사회, 시골 지향) → 관공적 세력의 향향 지향 (유명, 이의향)
- 농민 — (보편적사, 보편적의사)

(2). 근대사 = 지향 목적.

- 사적적 지향 = 부정적사 + 지향 목적.
- 근대사학의 보편적사 = 지향의 문제.
- 지향 목적 = 농민전쟁, 농민적 혁명.
- 농민적 길에 의한 근대사학. (보편적, 보편적의, 보편적의사.)

(3). 보편적 근대사.

- ①. 이론적 배경의 갈과 농민적 논리
 - 농민운동은 평등주의, 보편적의사인 경제적 자유주의
 - 이론적 배경의 보편적의사의 갈과는 대중 농민적 논리
- ②. 이론적 배경, 사적적.
 - F.R. = 봉건적 이이로 보편적의사 농민운동 특색.

김재기

1. 머리말.
- ① 제국주의 개념의 전환: ^{2차}반제국주의, 반외세.
 - ② 불평등교역 개념: 반외세이론의 세력. 상충, - 반외세이론의 ^{반외세}반외세론, ^{반외세}반외세론의 전환, ^{반외세}반외세론의 전환, ^{반외세}반외세론의 전환.
 - ③ 반외세의 전개과정. 독립투쟁.

결론, 반외세 → 반제국주의의 전환 → 반외세. 반제국주의의 전환

2. 제국주의 개념.

- ① Schumpeter ^{etc.} - 제국주의가 제국주의 개념.
- ② Lenin -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의 필연적 단계이다. (정. 이. X)

3. 불평등교역의 전환.

- ① 제국의 무역에 의한 독립투쟁.
- ② 개념의 확장성. 아미노산.

4. 전개과정 (반외세론)

반외세론의 전개과정, 상충 - 경쟁, 일사, 시장

5. 결론.

반제국주의의 전환

I 반평면

(4)

지식

1. 동인적응, 적응적응.

- o 동인적응의 지기. = 물리적 환경이나 사회적 환경에 적응하는 것.
- o 적응적응 과정은 동인적응의 과정의 결과로 본다.

이론의 관점.

(1) ①. FR.과 동인적응의 차이이다. 특히 적응의 결과이다.

- ①. 적응의 과정. 적응의 과정
- ②. 동인적응. 적응적응
- ③. 적응 동인적응의 과정의 차이
- ④. 적응의 결과(이).

동인적응: 적응적응.

이론 (2). 반평면 - 적응적응의 적응적응.

적응적응

반평면의 적응적응

반평면의 적응적응. 적응적응. (동인적응의 적응적응.)

반평면의 적응적응 (P. 10-11).

반평면의 적응적응 ↔ 반평면의 적응적응의 적응적응 결과.

o 동인적응의 적응적응의 적응적응의 적응적응 - 반평면.

반평면

반평면의 적응적응의 적응적응 = 반평면의 적응적응

(2) ①. 반평면 = 반평면의 적응적응.

②. 반평면의 적응적응 - 반평면의 적응적응.

반평면의 적응적응

p. 12. ③. 동인적응의 적응적응의 적응적응의 적응적응. (6-9-9의 적응적응의 적응적응.)

반평면의 적응적응.

반평면의 적응적응의 적응적응의 적응적응.

